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72호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8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54호 시립체육시설 위탁기관 모집 공고 ..... 1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5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동우개발(주)] ..... 19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6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주식회사 새늘종합건설] ..... 196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4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197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8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9호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0호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1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2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3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4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6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0호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1호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9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2호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0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3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22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94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9. 30.

### 인 천 광 역 시 장

####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가. 용유배수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34-9 일원
  - 나. 무의배수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90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도공급설비 (용유배수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34-9일원	25,568	감)244	25,324	2019. 6. 3. (인고 제127호)	면적감소 0.95%
변경	2	수도공급설비 (무의배수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90 일원	5,458	감)62	5,396	2018. 5.28.. (인고 제118호)	면적감소 1.13%

○ 수도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도공급설비 (용유배수지)	·면적: 25,568㎡ → 25,324㎡ (감: 244㎡)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
2	수도공급설비 (무의배수지)	·면적: 5,458㎡ → 5,396㎡ (감: 62㎡)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II.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유배수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34-9 일원
- 무의배수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90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용유·무의배수지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용유배수지	무의배수지
면적	25,324㎡	5,396㎡
규모	시설용량 V=16,000㎥ 건축면적 39.44㎡, 연면적 185.25㎡	시설용량 V=1,500㎥ 건축면적 30.94㎡, 연면적 106.2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용유배수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57,201	25,324						
1	중구 을왕동	627-2	전	2,453	1,275	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여의도 ***** **-*	*****	-	***	
2		627-22	임	6,804	5,858	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 **, **동 **호(*****)	***	-	***	
						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	-	-	-	
3		627-28	도	75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	-	
4		627-30	도	2,663	29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	-	
5		산34-9	임	228,824	10,453	국(국방부)	국방부	-	-	-	
						인천직할시 교육청	인천직할시교육청	-	-	-	
						인천도시 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	-	
6		산35-4	임	3,486	904	정**	서울 성동구 중곡동 **-*	-	-	-	
						정**	부산시 남구 용호동 **-*	-	-	-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나길 **-(대방동)	*****	-	****	
7	산35-6	임	2,314	1,487	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동 **호(*****)	-	-	-		
					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동 **호(*****)	*****	-	***		
8	산35-8	임	1,730	388	김**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 **	-	-	-		
9	산35-9	임	918	132	정**	서울 성동구 중곡동 **-*	-	-	-		
					정**	부산시 남구 용호동 **-*	-	-	-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나길 **-(대방동)	*****	-	***		
10	산35-18	임	992	270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길 **, **호(망우동, ****)	-	-	-		
					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호(서현동, ****)	-	-	-		
					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동 **호(청계동, ** ** *****)	-	-	-		
11	산35-27	임	992	12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층(역삼동,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신35-33	임	496	96	김**	경기도 오산시 쉼리사로 **번길 **, ***호(궐동, ***)	***** *, *****	-	***, ***	
						장**	경기도 오산시 쉼리사로 **번길 *, ***호(궐동, ***)	***** *	-	***	
13		신35-34	임	496	137	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길 **-(신길동)	***** *	-	***	
14		신35-35	임	661	661	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번길 **, ***동 ****호 (봉명동, *****)	-	-	-	
15		신35-36	임	661	661	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동 ****호(용암동, *****)	-	-	-	
						김**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번길 *-*, ***동 ***호(봉곡동, *****)	-	-	-	
						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길 **(노량진동)	-	-	-	
						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길**, ***호(화곡동, ***)	-	-	-	
16	중구 을왕동	신35-37	임	562	427	염**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 (산수동)	-	-	-	
						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 ***호(불광동, *****)	-	-	-	
						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일로**길 **, ***동 ***호 (매호동, *****)	-	-	-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층(역삼동, ****)	-	-	-	
17		신35-38	임	760	655	손**	전라북도 군산시 동지곡길 **, ***동 ***호(지곡동, *****)	-	-	-	
						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동 ***호 (비산동, *****)	-	-	-	
						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번길 **, ***동 ***호(석수동, *****)	-	-	-	
						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 ***동 ***호(하계동, ****)	-	-	-	
						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길 **-* , ***호(고척동, ****)	-	-	-	
18		신35-39	임	2,314	1,605	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동 ****호(*****)				

## - 무의배수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m <sup>2</sup> )	편입 면적(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05,177	5,396						
1	중구 무의동	산90	임	100,428	4,141	산림청	산림청	-	-	-	
2		산90-2	임	1,661	3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	-	
3		산90-4	임	721	4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	-	
4		283-1	전	892	792	산림청	산림청	-	-	-	
5		283-14	전	1,475	38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6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2호(18.11.22.)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3호(19.1.31.)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I.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면적 변경

- 지정 : 2-4단계 3,276,175.0㎡, 3단계 4,003,256.0㎡

- 변경 : 2-4단계 602,557.1㎡, 3단계 6,676,873.9㎡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2-4단계 지적측량 결과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반영

- 사업지구 경계부 녹지계획 변경 등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시행기간 조정
- 지정: 2003년 8월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구 분	시행기간 (변경없음)	면적(m <sup>2</sup> )		증감 (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012년 까지	6,014,159.5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9,282,633.6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5,396,610.4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443,992.1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3,276,175.0	602,557.1	감) 2,673,617.9	변경
3단계	2020년 까지	4,003,256.0	6,676,873.9	증) 2,673,617.9	변경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인구수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m <sup>2</sup> )
계	기정	4,311,747.0	100.0		53,553	135,201		
	변경	4,310,441.1	100.0		53,553	135,201		
단독주택		1,414,345.8	32.8		3,359	8,568	61	
일반형		870,967.7	20.2		2,498	6,369	73	360
블럭형		477,379.2	11.1		723	1,847	39	500
휴양형		65,998.9	1.5		138	352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60,667.4	64.0	(100.0)	45,179	113,844	412	
	변경	2,759,361.5	64.0	(100.0)	45,179	113,844	412	
저층	기정	262,462.3	6.1	(9.5)	1,212	3,092	118	
	변경	262,430.2	6.1	(9.5)	1,212	3,092	118	
중층	기정	710,118.5	16.4	(25.7)	9,976	25,439	358	
	변경	709,614.6	16.4	(25.7)	9,976	25,439	358	
고층	기정	1,788,086.6	41.5	(64.8)	33,991	85,313	477	
	변경	1,787,316.7	41.5	(64.8)	33,991	85,313	477	
주상복합		136,733.8	3.2		3,015	7,689	562	
유보지		-	-		2,000	5,100		

## ○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계	기정	4,311,747.0	100.0	53,553	135,201	
	변경	4,310,441.1	100.0	53,553	135,201	
단독주택		1,414,345.8	32.8	3,359	8,568	
공동주택	기정	2,760,667.4	64.0	45,179	113,844	
	변경	2,759,361.5	64.0	45,179	113,844	
주상복합		136,733.8	3.2	3,015	7,689	
유보지		-	-	2,000	5,100	

주) 전시 및 산업시설 유보지내에 2,000세대 계획

## ▷ 공동주택(저층)

구분	면적(m <sup>2</sup> )	용적률	평균규모(m <sup>2</sup> )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262,462.3			1,212	3,092	
	변경	262,430.2			1,212	3,092	
A21	기정	56,102.0	8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200 110	287	732
	변경	56,078.9	8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200 110	287	732
A22	기정	56,954.0	8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200 110	287	732
	변경	56,945.0	8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200 110	287	732
A48	기정	57,345.0	80%	85m <sup>2</sup> 초과	400	116	296
A53	기정	21,095.6	100%	60~85m <sup>2</sup>	100	211	538
A54	기정	49,870.3	80%	85m <sup>2</sup> 초과	400	100	255
A64	기정	21,095.4	100%	60~85m <sup>2</sup>	100	211	539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 ▷ 공동주택(중층)

구분	면적(m <sup>2</sup> )	용적률	평균규모(m <sup>2</sup> )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710,118.5			9,976	25,439	
	변경	709,614.6			9,976	25,439	
A10	기정	43,962.0	150%	60~85m <sup>2</sup>	110	604	1,540
A11	기정	17,680.0	150%	85m <sup>2</sup> 초과	159	167	426
	변경	17,656.8	150%	85m <sup>2</sup> 초과	159	167	426
A13	기정	60,493.3	150%	60~85m <sup>2</sup>	110	832	2,122
A14	기정	23,290.2	150%	60~85m <sup>2</sup>	110	320	816
A23	기정	41,017.5	150%	60~85m <sup>2</sup>	110	564	1,438
A24	기정	46,628.9	150%	60~85m <sup>2</sup>	110	641	1,635
A29	기정	41,481.1	150%	60m <sup>2</sup> 이하	80	784	1,999 국민임대
A31	기정	30,710.1	150%	60~85m <sup>2</sup>	110	422	1,076
A33	기정	33,467.0	150%	85m <sup>2</sup> 초과	145	400	1,020
				60~85m <sup>2</sup>	110		

구 분		면 적(m <sup>2</sup> )	용적률	평균규모(m <sup>2</sup> )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35	기정	54,686.3	150%	60~85m <sup>2</sup>	110	752	1,918	
	변경	54,205.6	150%	60~85m <sup>2</sup>	110	752	1,918	
A37	기정	37,696.8	150%	60~85m <sup>2</sup>	110	514	1,311	
A40	기정	63,272.6	150%	60~85m <sup>2</sup>	110	870	2,219	
A41	기정	32,987.5	150%	60~85m <sup>2</sup>	110	453	1,155	
A51	기정	28,040.0	120%	60~85m <sup>2</sup>	110	308	785	
A57	기정	20,389.5	150%	60~85m <sup>2</sup>	110	280	714	
A58	기정	31,106.0	150%	60~85m <sup>2</sup>	93	504	1,285	
A62	기정	58,335.6	150%	60~85m <sup>2</sup>	110	802	2,045	
A63	기정	21,986.1	150%	60~85m <sup>2</sup>	110	302	770	
A67	기정	22,888.0	120%	60m <sup>2</sup> 이하	60	457	1,165	국민임대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 ▷ 공동주택(고층)

구 분		면 적(m <sup>2</sup> )	용적률	평균규모(m <sup>2</sup> )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1,788,086.6				33,991	85,313	
	변경	1,787,316.7				33,991	85,313	
A1	기정	24,249.0	190%	60~85m <sup>2</sup>	110	422	1,076	
	변경	24,048.0	190%	60~85m <sup>2</sup>	110	422	1,076	
A2	기정	23,581.0	190%	60m <sup>2</sup> 이하	45	990	1,584	행복주택
A3	기정	25,774.3	190%	60m <sup>2</sup> 이하	80	617	1,573	공공임대
A4	기정	19,528.1	190%	60~85m <sup>2</sup>	110	340	867	
A5	기정	32,160.0	190%	60m <sup>2</sup> 이하	80	770	1,964	국민임대
	변경	31,660.0	190%	60m <sup>2</sup> 이하	80	770	1,964	국민임대
A6	기정	21,575.9	190%	60~85m <sup>2</sup>	110	376	959	
A7	기정	53,393.3	190%	60~85m <sup>2</sup>	111	909	2,318	
A8	기정	66,799.0	19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126 110	1,153	2,940	
	변경	66,765.3	19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126 110	1,153	2,940	
A9	기정	44,597.0	19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126 100	847	2,160	
	변경	44,568.1	190%	85m <sup>2</sup> 초과 60~85m <sup>2</sup>	126 100	847	2,160	
A12	기정	75,681.9	200%	60~85m <sup>2</sup>	105	1,445	3,685	
A15	기정	35,104.0	180%	85m <sup>2</sup> 초과	138	569	1,451	환지
				60~85m <sup>2</sup>	93			
				60m <sup>2</sup> 이하	78			

구분		면적(m <sup>2</sup> )	용적률	평균규모(m <sup>2</sup> )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16	기정	90,808.0	180%	85㎡초과 60~85㎡	126 110	1,185	3,022	
A18	기정	32,044.0	160%	60㎡이하	80	612	1,561	외국인분양
	변경	32,047.9	160%	60㎡이하	80	612	1,561	외국인분양
A19	기정	27,779.0	180%	60~85㎡	110	444	1,132	외국인분양
	변경	27,771.1	180%	60~85㎡	110	444	1,132	외국인분양
A20	기정	37,775.0	160%	85㎡초과	140	412	1,051	외국인분양
	변경	37,772.7	160%	85㎡초과	140	412	1,051	외국인분양
A25	기정	72,300.5	190%	60~85㎡	110	1,260	3,213	
A26	기정	42,347.0	190%	60~85㎡ 60㎡이하	110 80	731	1,864	
A27	기정	90,174.2	178%	60~85㎡	100	1,604	4,091	
A28	기정	89,548.0	200%	85㎡초과 60~85㎡	145 110	1,426	3,636	
A30	기정	66,614.0	217%	60~85㎡	110	1,327	3,384	
A32	기정	36,106.2	223%	60㎡이하	80	1,018	2,596	
A34	기정	29,506.0	220%	60~85㎡	110	596	1,520	
A36	기정	53,175.3	200%	60㎡이하	80	1,343	3,425	
A38	기정	68,540.2	200%	60㎡이하	80	1,731	4,414	
A39	기정	54,141.0	240%	85㎡초과	126	1,034	2,637	
A42	기정	50,701.2	200%	60~85㎡	110	930	2,372	
A43	기정	31,218.3	230%	60~85㎡	110	658	1,678	
A44	기정	74,389.7	250%	85㎡초과	140	1,341	3,420	
A45	기정	72,518.5	250%	60~85㎡	110	1,663	4,241	
A46	기정	84,025.3	200%	60~85㎡	110	1,540	3,927	
A47	기정	32,335.9	181%	60~85㎡	110	537	1,369	
A49	기정	13,469.6	182%	60㎡이하	47	450	720	행복주택
A50	기정	18,489.3	182%	60~85㎡	100	339	864	
A56	기정	35,921.1	180%	85㎡초과	174	583	1,487	환지
				60~85㎡	93			
A59	기정	25,406.4	182%	60㎡이하	80	580	1,479	
A60	기정	41,624.9	182%	60~85㎡	110	694	1,770	
A61	기정	34,540.6	190%	60~85㎡	110	602	1,535	외국인임대
A65	기정	25,033.4	180%	60~85㎡	110	344	877	
A66	기정	35,110.5	180%	85㎡초과	131	569	1,451	환지
				60~85㎡	93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 임대 및 외국인 분양주택 【변경】

▷ 공급/ 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전 체		규 모 별						비고
				60㎡이하		60㎡~85㎡		85㎡초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기정	291,492.6	100.0	191,398.0	65.7	62,319.6	21.4	37,775.0	12.9	
	변경	290,986.3	100.0	190,901.9	65.6	62,311.7	21.4	37,772.7	13.0	
외국인 분양	기정	97,598.0	33.3	32,044.0	10.9	27,779.0	9.5	37,775.0	12.9	
	변경	97,591.7	33.5	32,047.9	11.0	27,771.1	9.5	37,772.7	13.0	
임대	기정	193,894.6	66.5	159,354.0	54.7	34,540.6	11.9	-	-	
	변경	193,394.6	66.5	158,854.0	54.6	34,540.6	11.9	-	-	
국민	기정	159,354.0	54.6	159,354.0	54.6	-	-	-	-	공공임대, 행복주택 포함
	변경	158,854.0	54.6	158,854.0	54.6	-	-	-	-	
외국인	기정	34,540.6	11.9	-	-	34,540.6	11.9	-	-	

▷ 국민임대 및 외국인 임대·분양주택 계획

구	분	면적(㎡)	면적구성비(%)	세대수	인구(명)	비고
합	기정	291,492.6	100.0	6,138	14,284	
	변경	290,986.3	100.0	6,138	14,284	
외국인 분양	기정	97,598.0	33.3	1,468	3,744	
	변경	97,591.7	33.5	1,468	3,744	
임대	기정	193,894.6	66.5	4,670	10,540	
	변경	193,394.6	66.5	4,670	10,540	
국민	기정	159,354.0	54.6	4,068	9,005	공공임대, 행복주택 포함
	변경	158,854.0	54.6	4,068	9,005	
외국인	기정	34,540.6	11.9	602	1,535	

## 7. 토지이용계획 【변경】

##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고
합 계		19,300,049.1	19,300,049.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175,013.2	4,173,707.3	감) 1,305.9	21.6	
	공동 주택	2,760,667.4	2,759,361.5	감) 1,305.9	14.3	
	단독 주택	1,414,345.8	1,414,345.8		7.3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113,926.2		0.6	
주상복합용지		136,733.8	136,733.8		0.7	
상업시설용지		479,614.9	479,614.9		2.5	
산업물류시설용지		493,208.3	493,207.0	감) 1.3	2.6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08,084.1	108,084.1		0.6	
	업무시설용지	97,535.6	97,535.6		0.5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10,548.5		0.1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350,700.0	350,700.0		1.8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65.0	215,365.0		1.1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0.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0,910,681.6	10,911,988.8	증) 1,307.2	56.5	
	도로	3,212,482.8	3,213,827.5	증) 1,344.7	16.7	
	주차장	132,141.5	132,141.5		0.7	
	공원	4,344,603.7	4,344,597.2	감) 6.5	22.5	
	녹지	1,543,812.0	1,543,853.8	증) 41.8	8.0	
	공공공지	42,147.5	42,131.2	감) 16.3	0.2	
	문화시설	67,580.2	67,580.2		0.3	
	사회복지시설	10,040.2	10,040.2		0.0	
	체육시설용지	88,210.0	88,210.0		0.5	
	광장	537,732.5	537,737.4	증) 4.9	2.8	
	학교	403,587.2	403,528.7	감) 58.5	2.1	
	변전소	6,519.7	6,519.7		0.0	
	복합터미널	23,513.8	23,513.8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0	12,565.1	감) 2.9	0.1	
	종교용지	22,053.1	22,053.1		0.1	
	생활폐기물저장시설 중앙집하장	10,499.9	10,499.9		0.1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58,485.3		0.3	
	공공청사	214,934.8	214,934.8		1.1	
	교육지원시설	14,911.3	14,911.3		0.1	
	주유소	22,259.2	22,259.2		0.1	
	배수지	12,705.1	12,705.1		0.1	
	통신시설용지	1,361.1	1,361.1		0.0	
	오수중계펌프장	2,340.9	2,340.9		0.0	
	종합의료시설	110,139.0	110,139.0		0.6	
	정압기	96.0	96.0		0.0	
	가압장	2,544.9	2,544.9		0.0	
	시장용지	1,548.8	1,548.8		0.0	
	창고시설용지	1,001.4	1,001.4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1,941.7		0.0	
	군사시설용지	8,402.0	8,402.0		0.0	
	송유시설용지	518.0	518.0		0.0	
	유보지	2,532,087.0	2,532,087.0		13.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주택건설용지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m <sup>2</sup> )
계	기정	4,311,747.0	100.0		53,553	135,201		
	변경	4,310,441.1	100.0		53,553	135,201		
단독주택		1,414,345.8	32.8		3,359	8,568	61	
일반형		870,967.7	20.2		2,498	6,369	73	360
블럭형		477,379.2	11.1		723	1,847	39	500
휴양형		65,998.9	1.5		138	352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60,667.4	64.0	(100.0)	45,179	113,844	412	
	변경	2,759,361.5	64.0	(100.0)	45,179	113,844	412	
저층	기정	262,462.3	6.1	(9.5)	1,212	3,092	118	
	변경	262,430.2	6.1	(9.5)	1,212	3,092	118	
중층	기정	710,118.5	16.4	(25.7)	9,976	25,439	358	
	변경	709,614.6	16.4	(25.7)	9,976	25,439	358	
고층	기정	1,788,086.6	41.5	(64.8)	33,991	85,313	477	
	변경	1,787,316.7	41.5	(64.8)	33,991	85,313	477	
주상복합		136,733.8	3.2		3,015	7,689	562	
유보지		-	-	-	2,000	5,100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m <sup>2</sup> )	비고
산업(물류)시설	기정	24개소	493,208.3
	변경	24개소	493,207.0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m <sup>2</sup> )	비고
여객자동차차고지	기정	1개소	12,568.0
	변경	1개소	12,565.1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유보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8. 교통처리계획 【변경】

- 광역접근체계 【변경 없음】
- 신호교차로 및 가감속차로 【변경 없음】
- 가로망계획 【변경 없음】
-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계획 【변경 없음】
- 유보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도로계획 【변경】

구분	주요 내용	
	기정	변경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m<sup>2</sup>)</li> <li>○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m<sup>2</sup>)</li> <li>○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m<sup>2</sup>)</li> <li>○ 가각 및 기타 : 50,323.2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m<sup>2</sup>)</li> <li>○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m<sup>2</sup>)</li> <li>○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m<sup>2</sup>)</li> <li>○ 가각 및 기타 : 51,667.9m<sup>2</sup></li> </ul>

##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 학교시설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m <sup>2</sup> )	비고
학교시설	기정	24개소	403,587.2	
	변경	24개소	403,528.7	

-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 의료시설 【변경 없음】
- 공공청사 【변경 없음】
- 문화시설 【변경 없음】
- 도서관 【변경 없음】
- 경로당 【변경 없음】
- 주유소 【변경 없음】
- 종교시설 【변경 없음】
- 검문소 【변경 없음】
- 구립종합운동장 【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 【변경 없음】
- 봉안당(메모리얼파크) 【변경 없음】
- 통신시설용지 【변경 없음】
- 교육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12.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 상수도계획 【변경 없음】

○ 우·오수계획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m <sup>2</sup> )	비고
오수중계펌프장 및 빗물펌프장	기정	8	2,340.9 (2,538.4)	
	변경	8	2,340.9 (2,538.4)	단계 변경

주 : ( )안은 시설 전체면적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m <sup>2</sup> )	비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기정	4	10,499.9	
	변경	4	10,499.9	단계 변경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획 【변경 없음】

○ 도로관리차량보관소 【변경 없음】

○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 【변경 없음】

○ 송유시설 부지 【변경 없음】

○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 내용	
	기정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공원 : 37개소(3,975,071.0m<sup>2</sup>)</li> <li>○ 체육공원 : 2개소(120,576.8m<sup>2</sup>)</li> <li>○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72.6m<sup>2</sup>)</li> <li>○ 소공원 : 25개소(46,683.3m<sup>2</sup>)</li> <li>○ 묘지공원 : 1개소(100,000.0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공원 : 37개소(3,975,071.0m<sup>2</sup>)</li> <li>○ 체육공원 : 2개소(120,576.8m<sup>2</sup>)</li> <li>○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m<sup>2</sup>)</li> <li>○ 소공원 : 25개소(46,682.3m<sup>2</sup>)</li> <li>○ 묘지공원 : 1개소(100,000.0m<sup>2</sup>)</li> </ul>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충녹지 : 65개소(889,118.7m<sup>2</sup>)</li> <li>○ 경관녹지 : 7개소(427,583.2m<sup>2</sup>)</li> <li>○ 연결녹지 : 30개소(227,110.1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충녹지 : 66개소(889,208.5m<sup>2</sup>)</li> <li>○ 경관녹지 : 7개소(427,534.2m<sup>2</sup>)</li> <li>○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m<sup>2</sup>)</li> </ul>

## ○ 기타 기반시설 【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광장	○ 교통광장 : 5개소(416,563.0㎡)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 교통광장 : 5개소(416,567.9㎡)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공공공지	○ 공공공지 : 18개소(42,147.5㎡)	○ 공공공지 : 18개소(42,131.2㎡)

13. 도시경관계획 【변경 없음】

14.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 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 【변경 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 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21. 방재계획 【변경 없음】

22.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변경】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서 【변경】 : 붙임1

## II.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지정 : 2-4단계 3,276,175.0㎡, 3단계 4,003,256.0㎡

- 변경 : 2-4단계 602,557.1㎡, 3단계 6,676,873.9㎡

####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2-4단계 지적측량 결과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반영

- 사업지구 경계부 녹지계획 변경 등

#### ○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및 건축허가 의제 처리

#### ○ 지구단위계획 지침 조정

- 태양광 발전설비, 공동주택 세대수 관련 지침 명확화

#### ○ 시행자 대표 변경

- 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박상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 황효진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변창흠, 인천도시공사 사장 : 박인서

###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구 분	시행기간 (변경없음)	면적(㎡)		증감 (㎡)	비고
		지정	변경		
1단계	2012년 까지	6,014,159.5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9,282,633.6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5,396,610.4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443,992.1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3,276,175.0	602,557.1	감) 2,673,617.9	변경
3단계	2020년 까지	4,003,256.0	6,676,873.9	증) 2,673,617.9	변경

####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라.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마.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바.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사.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아.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 **【변경】** -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자.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차.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카.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타. 유보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파.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 4. 법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구 분	시행기간 (변경없음)	면적(m <sup>2</sup> )		증감 (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012년 까지	6,014,159.5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9,282,633.6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5,396,610.4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443,992.1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3,276,175.0	602,557.1	감) 2,673,617.9	변경
3단계	2020년 까지	4,003,256.0	6,676,873.9	증) 2,673,617.9	변경

####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붙임2

#### 6.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 붙임3

##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박상우
			변경	변창흠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2	기정	황호진
			변경	박인서

## 8. 위치도·실시계획평면도 (S=1/10,000) 【변경 없음】

##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변경 없음】

##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없음】

##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처분대상토지		구분	면적(m <sup>2</sup> )	처분착수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기정	변경						
합계			19,300,049.1	-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기정	4,175,013.2	-	-	-	-
		변경	4,287,633.5				
	단독주택 용지	소계	1,414,345.8	2007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형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블럭형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휴양형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분		면적(m <sup>2</sup>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기정	2,760,667.4		-	-	-	-									
		변경	2,759,361.5														
	공동주택 용지	60m <sup>2</sup> 이하							2007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국가·지자체·LH 지방공사 등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인천지역소재업체	추첨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입대, 국민임대주택용지 :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근린생활시설 용지			113,926.2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산업시설용지		기정	493,208.3		2008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변경	493,207.0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724,432.8			-	-	-	-									
	상업시설용지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유통업무시설 용지			2007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상복합용지			136,733.8	2007	실수요자	주거부분: 감정가격 상업부분: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																	
관광휴게및숙박시설			215,36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문화및업무시설			135,33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기정	10,910,681.6		-	-	-	-									
		변경	10,911,988.8														
	계	기정	403,587.2														
		변경	403,528.7														
	학교 시설	유치원							200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초등학교	기정	100,308.0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변경	100,283.5					
										중학교	60,263.7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합시추첨)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고등학교					147,822.4		2009										
외국인학교	기정	85,622.0		2009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변경	85,588.0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분	면적(m <sup>2</sup> )						
공공 시설 용지	종교시설용지	22,053.1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전소	6,519.7		2007	한국전력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차장용지	132,141.5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공공청사	214,934.8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사회복지시설	10,040.2		200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체육시설용지	88,210.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2,259.2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또는 평균낙찰가
	종합의료시설	110,139.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문화시설	67,580.2		2008	※ 외국인투자자(의료법인) :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또는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공공기관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터미널	23,513.8		2008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여객자동차 차고지	기정	12,568.0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변경	12,565.1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시장용지	1,548.8		2009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창고시설용지	1,001.4		2009	공공기관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통신시설용지	1,361.1		2011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정압기	96.0		2008	도시가스 설치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송유시설용지	518.0		2012	기존시설 이용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원	기정	4,344,603.7	준 공 시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변경	4,344,597.2					
녹지	기정	1,543,812.0					
	변경	1,543,853.8					
공공공지	기정	42,147.5					
	변경	42,131.2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분	면적(m <sup>2</sup> )					
공공 시설 용지	광장	기정	537,732.5	준공시	관리기관	무상양여
		변경	537,737.4			
	배수지	12,705.1				
	오수중계펌프장	2,340.9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생활폐기물자동 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지하차도관리 사무소	1,941.7				
	군사시설용지	8,402.0				
	도로	기정	3,212,482.8			
		변경	3,213,827.5			
	가압장	2,544.9				
교육지원시설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유보지	2,532,087.0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1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변경 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 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변경 없음】**

18.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해당 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해당 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 **【변경 없음】**

## &lt;붙임 1&gt;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서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구분		주소	대표자성명	비 고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창흠	
기정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황효진	
변경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박인서	

## 4. 사업시행방법 【변경 없음】

## 5.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m <sup>2</sup> )		증감(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507,709.2	507,709.2		100.0	
산업시설용지	323,827.3	323,827.3		63.8	
상업시설용지	4,319.0	4,319.0		0.8	
공공시설용지	176,137.9	176,137.9		34.7	
교통광장	10,829.0	10,833.9	증) 4.9	2.1	
공원	7,673.2	7,673.2		1.5	
녹지	36,933.2	36,884.2	감) 49.0	7.3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0	12,565.1	감) 2.9	2.5	
오수중계펌프장	17.0	17.0		0.0	
빗물펌프장	500.5	500.5		0.1	
공공공지	237.0	237.0		0.0	
보행자도로	5,366.0	5,366.0		1.1	
도로	102,014.0	102,061.0	증) 47.0	20.1	
기타시설용지	3,425.0	3,425.0		0.7	
주유소	3,425.0	3,425.0		0.7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 1) 교통시설계획 【변경】

구분	주요 내용	
	기정	변경
도로	○ 일반도로 : 21개노선(96,447.0㎡) ○ 보행자전용도로 : 4개노선(5,366.0㎡) ○ 가각 및 기타 : 5,567.0㎡	○ 일반도로 : 21개노선(96,447.0㎡) ○ 보행자전용도로 : 4개노선(5,366.0㎡) ○ 가각 및 기타 : 5,614.0㎡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차고지 : 12,568.0㎡	○ 여객자동차차고지 : 12,565.1㎡

## 2) 공간시설 【변경】

## ① 광장 【변경】

구분	주요 내용	
	기정	변경
광장	○ 교통광장 : 10,829.0㎡	○ 교통광장 : 10,833.9㎡

## ② 공원 【변경 없음】

## ③ 녹지 【변경】

구분	주요 내용	
	기정	변경
녹지	○ 완충녹지 : 4,041.2㎡ ○ 경관녹지 : 32,892.0㎡	○ 완충녹지 : 4,041.2㎡ ○ 경관녹지 : 32,843.0㎡

## ④ 공공공지계획 【변경 없음】

## 3) 기타시설계획 【변경 없음】

## 4)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 없음】

## 7.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없음】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

###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구분	주요 내용	
	기 정	변 경
시행 기간	2003. 8. 11 ~ 2019. 12. 31.	2003. 8. 11 ~ 2020. 12. 31.

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해당 없음】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없음】

라. 입수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 없음】

마.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해당 없음】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lt;붙임 2&gt;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①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755	164,214.7	3,212,482.8	202	56,397.0	957,954.3	242	46,354.7	675,030.0	311	61,463.0	1,529,175.3	
	변경	755	164,214.7	3,213,827.5	202	56,397.0	957,954.3	242	46,354.7	675,030.0	311	61,463.0	1,529,175.3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기정	1	2,315.0	34,400.0	-	-	-	-	-	1	2,315.0	34,400.0	
	광로	기정	1	2,315.0	34,400.0	-	-	-	-	-	1	2,315.0	34,400.0	
일반도로	소계	기정	446	142,713.0	2,942,057.0	146	49,461.0	869,820.9	214	43,731.0	635,348.2	86	49,521.0	1,436,887.9
	광로	기정	7	21,677.0	896,162.0	-	-	-	-	-	7	21,677.0	896,162.0	
	대로	기정	40	26,701.0	724,721.4	5	1,546.0	66,618.8	11	7,756.0	242,294.6	24	17,399.0	415,808.0
	중로	기정	126	51,270.0	926,158.4	53	29,090.0	615,953.1	39	12,467.0	189,246.6	34	9,713.0	120,958.7
	소로	기정	273	43,065.0	395,015.2	88	18,825.0	187,249.0	164	23,508.0	203,807.0	21	732.0	3,959.2
특수도로	소계	기정	308	19,186.7	185,702.6	56	6,936.0	88,133.4	28	2,623.7	39,681.8	224	9,627.0	57,887.4
	대로	기정	2	312.0	9,360.0	-	-	-	2	312	9,360.0	-	-	-
	중로	기정	33	3,772.0	68,194.3	15	2,172.0	41,096.0	14	1,269.0	22,362.8	4	331.0	4,735.50
	소로	기정	273	15,102.7	108,148.3	41	4,764.0	47,037.4	12	1,042.7	7,959.0	220	9,296.0	53,151.90
가각 및 기타	기정	-	-	50,323.2										
	변경	-	-	51,667.9										

② 광로 【변경】  
○ 일반도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501	32~226	주간선 도 로	2,315 (14,430)	배후지원단지 JCT	송도국제도시 북서측	자동차 전용 도로		인고97-175호 (97.7.25)	2-4단계
변경	광로	3	501	32~226	주간선 도 로	2,315 (14,430)	배후지원단지 JCT	송도국제도시 북서측	자동차 전용 도로		인고97-175호 (97.7.25)	3단계
기정	광로	3	504	40~55.9	주간선 도 로	7,741 (16,967)	광장505	소1-501 용유도남측	일반 도로		인고00-117호 (00.7.3)	2-2단계 (6,058m) 2-4단계 (268m) 3단계 (1,415m)
변경	광로	3	504	40~55.9	주간선 도 로	7,741 (16,967)	광장505	소1-501 용유도남측	일반 도로		인고00-117호 (00.7.3)	2-2단계 (6,058m) 3단계 (1,683m)
기정	광로	3	505	40	주간선 도 로	933 (1,037)	광장505	광로3-505	일반 도로		인고20-200호 (02.9.12)	2-2단계
기정	광로	3	505-1	40	주간선 도 로	8,728	광로3-505-1	광로3-503	일반 도로		인고13-038호 (13.2.4)	1단계
기정	광로	3	506	40	보조 간선 도 로	550	광로3-505-1	광로3-506-1	일반 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광로	3	506-1	40	보조 간선 도 로	187	광로3-506	광로3-501	일반 도로		인고13-038호 (13.2.4)	2-4단계
변경	광로	3	506-1	40	보조 간선 도 로	187	광로3-506	광로3-501	일반 도로		인고13-038호 (13.2.4)	3단계
기정	광로	3	506-2	40	보조 간선 도 로	2,159	광로3-501	광로3-504	일반 도로		인고13-038호 (13.2.4)	3단계
기정	광로	3	507	40~46	주간선 도 로	1,346	광로3-505-1	광로3-504	일반 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③ 대로 【변경】  
○ 일반도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01	18~35	주간선 도 로	396 (11,261)	대로2-501-1	대로2-513	일반도로		인고97-43호 (02.9.12)	1단계
기정	대로	1	501-1	18~35	주간선 도 로	47	경관녹지1	대로2-501	일반도로		인고97-43호 (02.9.12)	2-4단계
변경	대로	1	501-1	18~35	주간선 도 로	47	경관녹지1	대로2-501	일반도로		인고97-43호 (02.9.12)	3단계
기정	대로	1	502	35	주간선 도 로	153 (5,914)	광로3-504	운북동897-15	일반도로		인고00-117호 (00.7.3)	1단계
기정	대로	1	504	36.5	집산도로	475	광로3-505-1	대로3-52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05	36.5	집산도로	475	광로3-505-1	대로3-52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대로	2	506	30~33	보조 간선도로	1,407 (1,526)	광로3-506	대로2-50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2	507	30~33	보조 간선도로	901	광로3-505-1	대로2-507-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2	507-1	30~33	보조 간선도로	304	대로2-507	광로3-506	일반도로		인고13-038호 (13.2.4)	1단계
기정	대로	2	508	30~33.5	집산도로	864	대로3-520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변경	대로	2	508	30~33.5	집산도로	864	대로3-520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선형변경
기정	대로	2	509	30~33.5	집산도로	860	대로3-521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2	510	30~33	국지도로	565	대로2-511	대로2-51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2	511	30~33	집산도로	1,503	광로3-505-1	광로3-50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2	512	30	집산도로	434	광로3-505-1	중로1-56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대로	2	513	31	집산도로	95	대로1-501	대로3-506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1단계
기정	대로	2	516	31	보조 간선도로	382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2	517	30	보조 간선도로	441	광로3-505-1	광로3-50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대로	3	506	25	보조 간선도로	1,882	광로3-505-1	대로2-51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09	25	집산도로	3,717	광로3-506-2	광로3-506-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0	25	국지도로	648	광로3-506-2	대로3-50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2	25	집산도로	648	광로3-506-2	대로3-50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3	25	집산도로	642	대로2-507	대로3-513-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158m), 2-4단계 (484m)
변경	대로	3	513	25	집산도로	642	대로2-507	대로3-513-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158m), 3단계 (484m)
기정	대로	3	513-1	25	집산도로	206	대로3-513	대로3-51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4	25	집산도로	1,769	광로3-506-2	광로3-506-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5	25~28	집산도로	779	광로3-505-1	중로1-54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16	27~28	집산도로	546	광로3-505-1	대로3-516-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3	516-1	27~28	집산도로	311	대로3-516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17	25	보조 간선도로	231	광로3-504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3	518	25	보조 간선도로	513	광로3-504	광로3-50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3	519	25	집산도로	792	광로3-505-1	대로2-508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20	25~28	집산도로	736	광로3-505-1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1	25~28	집산도로	1,723	광로3-507	광로3-505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2	25	보조 간선도로	375	대로1-501	중로3-552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대로	3	523	25	집산도로	300	광로3-505	중로1-592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3단계
기정	대로	3	525	25	보조 간선도로	80	대로1-501	중로2-51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대로	3	525	25	보조 간선도로	80	대로1-501	중로2-51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대로	3	526	26	국지도로	385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7	26	국지도로	170	대로2-516	대로3-52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8	26	국지도로	170	대로2-516	대로3-52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9	26	국지도로	128	대로2-516	중로1-52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30	26	국지도로	128	대로2-516	중로1-52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31	26	국지도로	520	중로1-564	일반광장15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④ 보행자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13	30	특수도로	130	연결녹지16	중로3-52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2	515	30	특수도로	182	대로2-507	교통광장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3단계
변경	대로	2	515	30	특수도로	182	대로2-507	교통광장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⑤ 중로 【변경】

○ 일반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10	22	보조 간선도로	276	중로1-544-1	운남지구 남측경계	일반도로		인고02-200호 (2002.9.12)	2-2단계
기정	중로	1	512	22	집산도로	516	중로1-544	중로1-512-1	일반도로		인고98-143호 (2002.7.3)	1단계
기정	중로	1	512-1	22	집산도로	20 (777)	중로1-512	중로1-517	일반도로		인고13-038호 (13.2.4)	2-2단계
기정	중로	1	513	22	집산도로	12 (177)	중로1-512-1	광로3-505-1	일반도로		인고98-143호 (1998.7.3)	1단계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도로	588	대로3-506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도로	427	광로3-505-1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2-4단계
변경	중로	1	517	20	집산도로	427	광로3-505-1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2-4단계,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517-1	20	집산도로	732	중로1-517	공공청사3	일반도로		인고13-038호 (13.2.4)	1단계
기정	중로	1	518	20	국지도로	212	광로3-505-1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19	20	국지도로	431	대로2-517	대로3-51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중로	1	524	23	국지도로	421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25	20	국지도로	454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변경	중로	1	525	20	국지도로	454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526	20	집산도로	564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변경	중로	1	526	20	집산도로	564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527	20	국지도로	1,032	대로3-509	대로3-50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28	20	국지도로	120	대로3-509	중로1-52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29	20	국지도로	120	대로3-509	중로1-53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31	20	국지도로	791	대로3-509	대로3-510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32	20	국지도로	1,161	대로3-509	대로3-510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33	20~23	국지도로	430	대로3-510	대로3-51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34	20~23	국지도로	429	대로3-510	대로3-51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35	20	국지도로	656	대로3-512	대로3-50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36	20	국지도로	538	대로3-509	중로1-53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37	20	국지도로	509	대로3-512	대로3-50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41	20	국지도로	418	광로3-505-1	대로3-515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4단계
변경	중로	1	541	20	국지도로	418	광로3-505-1	대로3-515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4단계,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542	20~23	국지도로	392	광로3-505-1	중로1-54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43	20	국지도로	1,860	광로3-505-1	중로1-54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44	20~23	집산도로	669	광로3-505-1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44-1	20~23	집산도로	1,493	중로1-544	동축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45	20~23	국지도로	927	중로1-544-1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46	20	국지도로	665	대로3-515	대로3-51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47	23	국지도로	631	대로3-515	대로3-51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48	20	국지도로	446	대로3-516	대로3-518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51	20	국지도로	310	중로1-590	대로3-520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52	20	국지도로	310	중로1-591	대로3-52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53	20	국지도로	327	대로2-510	대로2-51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54	23	국지도로	220	대로2-511	대로2-510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55	20	국지도로	327	대로2-511	대로2-510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56	23	국지도로	220	대로2-511	대로2-510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57	20	국지도로	926	대로3-521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58	20~23	집산도로	1,815	대로2-509	대로3-52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59	20	집산도로	526	대로3-521	중로1-558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60	20~25	집산도로	434	대로3-521	중로1-56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60-1	20	집산도로	574	중로1-561	대로3-52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61	20	집산도로	448	광로3-505-1	대로3-52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62	20	국지도로	874	대로2-511	대로2-51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64	20	집산도로	1,117	대로2-511	대로2-51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65	20	국지도로	59	대로2-517	중로1-56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65-1	20	국지도로	411	중로1-565	중로1-565-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65-2	20	국지도로	300	중로1-565-1	중로1-565-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65-3	20	국지도로	472	중로1-565-2	대로3-518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66	20~23	집산도로	194	광로3-505-1	중로1-56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90	20	국지도로	206	대로1-504	중로2-53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중로	1	591	20	국지도로	206	대로1-505	중로2-53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중로	1	592	20	집산도로	874	제2호어린이 공원	중로2-54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3단계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도로	767	대로1-501	중로2-52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4단계
변경	중로	2	511	15	집산도로	767	대로1-501	중로2-52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도로	402	중로1-516	중로2-512-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12-1	15	집산도로	424	중로2-512	소로1-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13	15	집산도로	106	중로2-520	중로2-51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4	15	집산도로	257	대로3-506	중로2-51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4단계
변경	중로	2	514	15	집산도로	257	대로3-506	중로2-51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2	514-1	15	집산도로	325	중로2-51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1469전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15	15	집산도로	76	중로2-514-1	대로3-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15-1	15	집산도로	433	대로3-506	중로2-51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4단계
변경	중로	2	515-1	15	집산도로	433	대로3-506	중로2-51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2	516	15	집산도로	630	대로3-506	산업·물류용지 운북동643-8답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4단계
변경	중로	2	516	15	집산도로	630	대로3-506	산업·물류용지 운북동643-8답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2	517	15	집산도로	78	중로2-520	단독주택용지 운서동1397답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중로	2	518	15	집산도로	512	대로3-506	중로1-51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19	15	집산도로	281	대로2-506	중로2-51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20	15	집산도로	474	대로2-506	중로2-520-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20-1	15	집산도로	914	중로2-520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21	15	집산도로	131	중로2-511	경관녹지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4단계
변경	중로	2	521	15	집산도로	131	중로2-511	경관녹지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3단계
기정	중로	2	522	15	국지도로	306	중로1-533	중로1-53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2	523	15	국지도로	219	대로2-512	중로3-529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2단계
기정	중로	2	524	15	국지도로	347	중로1-524	중로1-524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2단계
기정	중로	2	525	15	국지도로	109	중로1-546	중로1-54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26	15	국지도로	247	대로3-515	중로1-54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27	15	국지도로	109	중로1-546	중로1-54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28	15	국지도로	242	대로3-516	중로1-54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33	15	집산도로	316	중로1-590	중로1-5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34	15	집산도로	661	중로1-590	중로1-5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36	15	집산도로	661	중로1-591	중로1-55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37	15	집산도로	316	중로1-591	중로1-55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39	15	국지도로	542	광로3-505-1	광로3-50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41	15	국지도로	32 (143)	대로3-509	대로1-34 대로2-50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2	542	15	집산도로	728	대로2-507	대로2-50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43	15	집산도로	240	중로2-542	중로2-54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중로	2	544	15	집산도로	240	중로2-542	중로2-54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중로	2	545	15	집산도로	424	중로1-512	중로1-54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중로	2	572	15	집산도로	127	대로3-531	소로2-19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2012.12.28)	2-2단계
기정	중로	2	548	15	집산도로	37	중로3-534	대로3-53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중로	2	549	15	집산도로	196	중로2-545	제9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1단계
기정	중로	2	551	15	국지도로	10	소로1-100	유보지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4단계
변경	중로	2	551	15	국지도로	10	소로1-100	유보지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3단계
기정	중로	2	552	15	국지도로	9	소로1-100	유보지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4단계
변경	중로	2	552	15	국지도로	9	소로1-100	유보지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3단계
기정	중로	2	553	15	국지도로	771	소로2-192	대로3-52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3단계
기정	중로	2	554	15	국지도로	37	대로3-531	중로3-529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2단계
기정	중로	3	513	12~15	국지도로	143	대로3-506	중로2-51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14	12	집산도로	1,013	대로3-506	대로3-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15	12	국지도로	26	대로3-506	소로1-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16	12	국지도로	96	광로3-505-1	중로3-51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17	12~15	국지도로	259	대로3-526	대로3-52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18	12	국지도로	135	중로1-524	대로3-52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19	12	국지도로	136	중로1-524	대로3-530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20	12	국지도로	41 (115)	대로3-509	대로1-3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도로	386	중로2-522	중로2-52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3	522	12	국지도로	33	중로1-543	제506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23	12	국지도로	24	중로1-565	소로2-116-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중로	3	524	12	국지도로	796	중로1-557	중로1-558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25	12	국지도로	126	대로3-521	중로3-52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26	12	국지도로	414	대로3-521	중로1-55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29	12	국지도로	350	소로2-192	소로2-19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33	12	국지도로	183	대로3-531	중로3-53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34	12	국지도로	431	중로3-533	대로3-53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35	12	국지도로	473	중로1-565-3	중로1-565-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36	12	국지도로	460	중로1-565-3	중로1-565-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37	12	국지도로	386	중로1-565	중로1-56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38	12	국지도로	1,238	광로3-505-1	광로3-50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40	12	국지도로	20	중로3-542	소로2-186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중로	3	541	12	국지도로	20	중로3-542	소로2-188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중로	3	542	12	국지도로	368	대로2-517	대로3-51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중로	3	543	12	집산도로	197	중로1-512	중로1-54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중로	3	545	12	국지도로	125	대로3-531	중로3-53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중로	3	546	12	국지도로	78	대로3-531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중로	3	548	12	국지도로	25	중로1-561	소로1-72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중로	3	552	12*23	국지도로	440	북측지구계	교통광장600	일반도로		지고06-53호 (2006.12.5)	2-4단계
변경	중로	3	552	12*23	국지도로	440	북측지구계	교통광장600	일반도로		지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3	554	12	국지도로	107	중로1-592	중로2-553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중로	3	555	12	국지도로	443	중로1-592	중로1-59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중로	3	556	12	국지도로	90	중로1-592	중로2-553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중로	3	557	12	국지도로	500	중로1-592	중로1-59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 보행자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69	20	특수도로	49	대로3-526	중로3-51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70	20	특수도로	148	광로3-505-1	광장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71	20	특수도로	139	대로2-506	광장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72	20	특수도로	153	대로2-506	중로2-52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73	20	특수도로	119	대로2-516	중로1-52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74	20	특수도로	49	중로2-520-1	광장6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4단계
변경	중로	1	574	20	특수도로	49	중로2-520-1	광장6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79	20	특수도로	201	광로3-504	대로3-51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80	20	특수도로	361	광로3-501	대로3-51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중로	1	581	20	특수도로	394	광로3-501	제6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82	20	특수도로	233	대로2-507	광로3-505-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1	584	20	특수도로	102	대로1-504	중로1-55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85	20	특수도로	37	광로3-507	중로2-53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86	20	특수도로	37	광로3-507	중로2-53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87	20	특수도로	102	대로1-505	중로1-55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1	589	20	특수도로	48	소로2-192	광장1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40	15	특수도로	62	중로2-519	완충녹지3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49	15	특수도로	63	소로1-21	소로1-2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50	15	특수도로	35	대로1-504	중로2-53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51	15	특수도로	37	광로3-507	중로2-53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52	15	특수도로	60	광로3-505-1	중로2-53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53	15	특수도로	37	광로3-507	중로2-53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54	15	특수도로	35	대로1-505	중로2-53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55	15	특수도로	60	광로3-505	중로2-53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2	557	15	특수도로	162	대로2-510	중로1-55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58	15	특수도로	81	대로2-510	중로(특)2-55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59	15	특수도로	197	대로2-511	중로1-55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60	15	특수도로	162	대로2-510	중로1-55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61	15	특수도로	81	대로2-510	중로(특)2-56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2	562	15	특수도로	197	대로2-511	중로1-55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중로	3	539	12	특수도로	52	광로3-505-1	중로3-51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40	12	특수도로	97	대로3-530	대로3-52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41	12	특수도로	46	대로2-506	중로3-51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중로	3	542	12	특수도로	136	중로1-563	중로3-53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 ⑦ 소로 【변경】

## ○ 일반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	대로3-506	중로2-51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	대로3-506	중로2-51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70	대로3-506	중로2-514-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5	중로2-516	중로2-515-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5	중로2-516	중로2-515-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931	중로2-512-1	단독주택지 운서동산539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436m), 2-4단계 (495m)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931	중로2-512-1	단독주택지 운서동산539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436m), 3단계 (495m)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327	중로2-512-1	소로2-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493	중로3-514	소로1-5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54	소로1-6	소로1-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78	소로1-6	소로1-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87	소로1-6	중로3-51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483	중로2-518	소로1-1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81	중로2-518	소로1-1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80	소로1-13	소로1-1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776	중로1-517-1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48	중로1-517-1	소로1-1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616	중로1-517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15	10	국지도로	616	중로1-517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91	소로1-17	소로1-1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204	중로3-543	중로3-54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5	중로1-543	소로2-5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86	중로1-543	소로1-2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297	중로1-542	중로1-54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297	중로1-542	중로1-54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86	중로1-543	소로1-2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44	중로1-543	중로1-54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185	중로1-543	중로1-54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226	대로3-515	중로1-54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313	중로1-545	중로1-54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8	10	국지도로	99	중로1-545	소로1-2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123	소로1-28	소로1-2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303	중로1-545	중로1-54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100	중로1-545	소로1-3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2	10	국지도로	206	중로1-545	대로3-516-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3	10	국지도로	19	대로3-516-1	소로2-8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4	10	국지도로	173	중로2-526	중로2-52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5	10	국지도로	212	중로2-526	중로2-52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161	중로1-546	중로2-52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37	10	국지도로	215	중로2-528	중로2-52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38	10	국지도로	162	중로2-528	중로2-52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39	10	국지도로	39	중로1-510	소로2-12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40	10	국지도로	126	소로1-31	소로1-3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41	10	국지도로	177	중로3-537	중로3-53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42	10	국지도로	167	중로3-538	중로3-53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43	10	국지도로	58	중로1-557	중로3-52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44	10	국지도로	122	중로1-557	중로3-52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45	10	국지도로	292	중로3-525	중로3-52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46	10	국지도로	329	소로1-27	소로1-2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6 (45)	중로2-516	소로2-16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6 (45)	중로2-516	소로2-16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48	10	국지도로	35 (77)	중로2-515-1	소로2-16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48	10	국지도로	35 (77)	중로2-515-1	소로2-16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49	10	국지도로	84	소로1-53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0	10	국지도로	204	소로1-6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1	10	국지도로	205	소로1-6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2	10	국지도로	205	소로1-6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3	10	국지도로	509	소로1-7	소로1-5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4	10	국지도로	205	소로1-6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로	205	소로1-6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646	소로1-57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7	10	국지도로	206	소로1-56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90	소로1-57	소로1-56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59	10	국지도로	202	소로1-56	중로3-51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0	10	국지도로	254	대로3-515	중로1-545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1	10	국지도로	177	대로3-516-1	중로1-545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2	10	국지도로	151	중로2-519	중로2-51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3	10	국지도로	178	중로2-519	중로2-51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4	10	국지도로	128	중로2-520	중로2-520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5	10	국지도로	318	중로2-520	중로2-520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6	10	국지도로	53	소로1-65	소로1-65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7	10	국지도로	158	중로2-519	중로2-51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8	10	국지도로	168	중로2-519	중로2-51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69	10	국지도로	147	중로2-517	중로2-520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70	10	국지도로	115	소로1-69	소로1-6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71	10	국지도로	313	소로1-30	소로1-30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72	10	국지도로	147	중로1-560	중로3-548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1	73	10	국지도로	104	소로1-72	소로1-72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388	중로2-512	중로2-51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1	75	10	국지도로	347	중로2-512	소로1-74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1	76	10	국지도로	309	소로1-74	소로1-75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7	10	국지도로	55	중로2-512	소로1-75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1	78	10	국지도로	373	소로1-10	소로1-1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1	79	10	국지도로	97	중로2-518	소로1-10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1	80	10	국지도로	87	중로2-518	소로1-10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1	81	10	국지도로	12	광로3-505-1	폐기물처리시설1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2단계
기정	소로	1	82	10	국지도로	27	중로2-539	폐기물처리시설2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2단계
기정	소로	1	83	10	국지도로	7	광로3-505-1	폐기물처리시설3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2단계
기정	소로	1	84	10	국지도로	7	교통광장505	폐기물처리시설4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3단계
기정	소로	1	88	10	국지도로	195	대로3-531	중로3-534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1단계
기정	소로	1	89	10	국지도로	163	대로3-531	대로3-53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1단계
기정	소로	1	90	10	국지도로	179	대로2-512	중로1-59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3단계
기정	소로	1	91	10	국지도로	192	중로1-592	중로2-523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3단계
기정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844	광장2	근린공원50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740m), 2-3단계 (104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02	소로1-5	소로1-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5	소로1-5	소로1-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10	소로1-5	소로2-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73	소로1-5	소로1-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2	소로1-4	단독주택지 운서동664-2답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48	중로2-512-1	소로1-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9	소로1-71	소로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74	소로1-71	소로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36	소로1-44	소로2-13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38	중로3-524	소로2-136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88	중로3-524	소로2-136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88	소로1-46	소로1-4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122	소로1-13	소로(특)3-4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94	소로1-13	소로(특)3-4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74	소로1-13	소로(특)3-4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54	소로1-13	소로(특)3-4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34	소로1-14	소로(특)3-5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37	소로1-13	소로(특)3-5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475	중로2-545	중로2-54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48	소로2-36	소로(특)3-5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44	소로2-36	소로(특)3-6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87	소로2-36	소로2-4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0	8	국지도로	227	소로2-36	소로2-3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1	8	국지도로	39	소로2-40	소로(특)3-6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41	소로2-40	소로(특)3-6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123	중로2-545	중로3-54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71	소로2-45	소로2-4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253	소로2-43	소로2-4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44	소로2-45	소로(특)3-6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82	소로2-45	소로2-4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8	8	국지도로	272	중로2-545	중로3-54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30	소로2-48	소로(특)3-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38	소로2-48	소로(특)3-6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1	8	국지도로	74	소로2-48	소로(특)3-6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3	8	국지도로	34	소로2-54	단독주택지 운남동1147업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4	8	국지도로	565	중로1-543	단독주택지 운남동1113-4업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5	8	국지도로	117	소로2-56	소로2-5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6	8	국지도로	191	소로2-54	로2-5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7	8	국지도로	297	소로1-20	소로1-1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8	8	국지도로	47	소로2-57	소로(특)3-9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297	소로1-20	소로1-1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0	8	국지도로	155	소로1-19	소로2-5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1	8	국지도로	76	중로3-522	완충녹지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2	8	국지도로	100	중로3-522	소로(특)3-11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3	8	국지도로	155	소로1-22	소로2-6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4	8	국지도로	297	소로1-21	소로1-2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5	8	국지도로	297	소로1-21	소로1-2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6	8	국지도로	82	소로2-65	소로(특)3-11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7	8	국지도로	190	소로2-68	소로2-7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8	8	국지도로	531	중로1-543	소로1-2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69	8	국지도로	122	소로2-67	소로2-17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0	8	국지도로	200	중로1-543	소로2-6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1	8	국지도로	48	소로2-73	소로2-7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2	8	국지도로	96	소로1-24	소로2-7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3	8	국지도로	154	소로2-68	소로2-7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4	8	국지도로	35	소로2-75	단독주택지 운남동1242-2엽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5	8	국지도로	393	소로1-24	소로2-6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6	8	국지도로	871	소로1-60	소로1-6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7	8	국지도로	48	소로2-76	소로(특)3-7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8	8	국지도로	333	소로2-76	소로2-7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79	8	국지도로	53	소로2-78	소로(특)3-21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80	8	국지도로	49	소로2-76	소로(특)3-21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81	8	국지도로	50	소로2-76	소로(특)3-7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82	8	국지도로	67	소로1-32	소로(특)3-8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83	8	국지도로	55	소로2-85	소로(특)3-20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84	8	국지도로	60	소로2-85	소로(특)3-20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85	8	국지도로	497	소로1-32	소로1-3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6	8	국지도로	95	소로1-46	소로1-46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87	8	국지도로	61	소로2-85	소로(특)3-20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88	8	국지도로	60	중로2-539	소로2-8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89	8	국지도로	695	중로2-539	소로2-8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90	8	국지도로	60	중로2-539	소로2-8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91	8	국지도로	394	중로3-535	소로(특)3-14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2	8	국지도로	24	중로3-535	소로2-9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3	8	국지도로	34	중로3-535	소로2-9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4	8	국지도로	230	중로3-535	중로3-53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5	8	국지도로	66	중로3-535	소로(특)3-14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6	8	국지도로	84	중로3-535	소로(특)3-14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7	8	국지도로	54	중로3-535	소로(특)3-14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8	8	국지도로	55	소로2-99	소로(특)3-15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99	8	국지도로	392	중로3-536	소로(특)3-16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0	8	국지도로	77	소로2-99	소로(특)3-15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1	8	국지도로	53	중로3-536	소로2-9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2	8	국지도로	230	중로3-536	중로3-53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3	8	국지도로	46	소로2-102	소로(특)3-16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4	8	국지도로	53	중로3-536	소로(특)3-16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5	8	국지도로	45	중로3-536	소로(특)3-14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6	8	국지도로	50	소로2-108	소로(특)3-16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7	8	국지도로	93	중로3-536	소로(특)3-16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8	8	국지도로	262	중로3-536	소로2-10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09	8	국지도로	40	소로2-108	소로(특)3-16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10	8	국지도로	284	중로1-565-2	소로(특)3-15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11	8	국지도로	35	소로2-110	단독주택지 운남동170-26번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12	8	국지도로	48	소로2-110	소로(특)3-15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13	8	국지도로	145	중로1-565-2	소로2-11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14	8	국지도로	161	소로2-110	단독주택지 공유수면매립지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5	8	국지도로	137	중로1-565-2	중로1-565-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16	8	국지도로	61	중로1-565-1	소로2-116-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16-1	8	국지도로	620	소로2-116	중로3-523	일반도로		인고13-038호 (13.2.4)	2-2단계
기정	소로	2	117	8	국지도로	71	소로2-185	중로2-11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19	8	국지도로	155	중로1-565-1	중로1-565-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0	8	국지도로	111	소로2-116-1	소로2-18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21	8	국지도로	208	중로3-537	소로2-12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2	8	국지도로	203	중로3-537	중로3-53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3	8	국지도로	72	중로2-122	중로2-12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4	8	국지도로	100	소로2-181	중로3-53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5	8	국지도로	100	소로2-181	중로3-53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6	8	국지도로	59	소로2-182	소로2-18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7	8	국지도로	90	소로2-182	소로2-18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8	8	국지도로	894	광로3-505-1	가압장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29	8	국지도로	407	소로1-39	소로1-3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30	8	국지도로	128	중로3-524	소로1-4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1	8	국지도로	130	중로3-526	소로1-4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2	8	국지도로	158	소로1-44	소로2-13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3	8	국지도로	291	중로3-526	소로1-4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4	8	국지도로	52	소로2-135	소로2-13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5	8	국지도로	133	소로2-136	중로3-52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6	8	국지도로	483	중로3-525	소로1-43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7	8	국지도로	63	중로3-525	소로2-16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8	8	국지도로	175	중로3-525	중로3-52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39	8	국지도로	22	중로3-524	소로2-138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60	8	국지도로	55	소로2-85	소로(특)3-209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61	8	국지도로	325	중로1-54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2	162	8	국지도로	22 (386)	소로1-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2	163	8	국지도로	150	중로2-521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163	8	국지도로	150	중로2-521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164	8	국지도로	51	소로2-165	완충녹지7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65	8	국지도로	484	중로3-538	소로2-16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66	8	국지도로	124	중로3-538	소로2-16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67	8	국지도로	25	중로3-538	소로2-165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168	8	국지도로	38	중로3-534	창고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69	8	국지도로	139	중로1-544	경관녹지3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4단계
변경	소로	2	169	8	국지도로	139	중로1-544	경관녹지3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3단계
기정	소로	2	170	8	국지도로	55	소로2-85	소로(특)3-9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71	8	국지도로	56	소로2-85	소로(특)3-9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72	8	국지도로	56	소로2-78	소로(특)3-78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73	8	국지도로	34	소로2-67	단독주택지 운남동1129-3유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74	8	국지도로	71	소로2-67	소로2-70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75	8	국지도로	39	소로1-22	소로(특)3-115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77	8	국지도로	74	소로1-19	소로(특)3-9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79	8	국지도로	37	소로2-102	단독주택지 공유수면매립지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80	8	국지도로	271	소로2-116-1	소로2-116-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2	181	8	국지도로	128	중로3-538	중로3-538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82	8	국지도로	100	중로3-538	단독주택지 중산동 산330임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83	8	국지도로	232	중로3-538	BH3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84	8	국지도로	22	소로2-99	단독주택지 공유수면매립지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85	8	국지도로	88	소로2-189	중로1-565-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2	186	8	국지도로	220	소로2-187	소로2-187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2	187	8	국지도로	270	단독주택지 중산동1612-4답	단독주택지 중산동600-1전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2	188	8	국지도로	184	소로2-187	소로2-187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2	189	8	국지도로	168	소로2-116-1	소로2-19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2	190	8	국지도로	108	소로2-185	소로2-19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2	191	8	국지도로	122	소로2-116-1	중로1-565-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92	8	국지도로	221	중로2-572	중로2-57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소로	2	195	8	국지도로	53	소로2-36	소로(특)3-207	일반도로		인고13-038호 (13.2.4)	1단계
기정	소로	2	198	8	국지도로	201	중로1-592	중로3-554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199	8	국지도로	20	중로3-555	근린공원14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0	8	국지도로	84	중로1-592	중로3-555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87	중로1-592	중로3-555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2	8	국지도로	79	중로1-592	소로2-20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3	8	국지도로	53	중로1-592	근린공원2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4	8	국지도로	203	중로3-557	소로2-20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5	8	국지도로	310	소로2-203	소로2-209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6	8	국지도로	25	중로1-592	소로2-205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116	중로1-592	중로3-55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20	중로1-592	근린공원14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53	중로1-592	근린공원2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04	광로3-505-1	배수지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	소로(특)3-16	소로1-5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1	소로(특)3-1	소로1-59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	소로(특)3-18	소로1-56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5	소로(특)3-20	소로1-56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2	소로1-74	소로(특)3-29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소로1-74	소로(특)3-3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9	소로1-10	소로(특)3-223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4	소로1-10	소로(특)3-3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8	소로1-62	소로(특)3-38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8	소로1-62	소로(특)3-227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8	소로1-67	소로(특)3-228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10	소로1-67	소로(특)3-229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10	중로2-517	소로(특)3-230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2	소로1-65	소로(특)3-23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9	소로2-133	소로(특)3-172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9	소로2-136	소로(특)3-179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1	5	국지도로	50 (54)	신불IC	하수종말처리장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2-129호 (2012.5.15)	3단계
기정	소로	3	22	7	국지도로	13	하수종말처리장1	광로3-504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2012.12.28)	3단계
기정	소로	3	23	4	국지도로	173	중로2-511	산업시설용지1-5 운북동656-1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4단계
변경	소로	3	23	4	국지도로	173	중로2-511	산업시설용지1-5 운북동656-11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3단계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0	대로3-521	중학교4	일반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2단계

※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 ○ 보행자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8	10	특수도로	125	중로2-516	중로2-515-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58	10	특수도로	125	중로2-516	중로2-515-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59	10	특수도로	275	대로3-506	중로2-515-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59	10	특수도로	275	대로3-506	중로2-515-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60	10	특수도로	24	대로3-506	소로1-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61	10	특수도로	43	중로2-514-1	제3호 소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10-268호 (2011.1.5)	1단계
기정	소로	1	62	10	특수도로	100	중로1-524	중로2-524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2단계
기정	소로	1	63	10	특수도로	27	소로1-13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65	10	특수도로	53	광로3-506-1	중로2-54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66	10	특수도로	120	광장12	중로(특)1-58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67	10	특수도로	114	광장13	중로(특)1-58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68	10	특수도로	80	대로(특)2-515	중로2-54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69	10	특수도로	368	광로3-504	대로3-51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70	10	특수도로	111	중로1-534	대로(특)2-51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71	10	특수도로	135	중로1-533	대로(특)2-51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74	10	특수도로	135	광로3-504	중로1-54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74	10	특수도로	135	광로3-504	중로1-54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75	10	특수도로	126	제6호 소공원	제2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1	75	10	특수도로	126	제6호 소공원	제2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76	10	특수도로	246	대로3-516-1	제11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77	10	특수도로	31	중로1-510	소로2-12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78	10	특수도로	63	소로1-39	경관녹지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79	10	특수도로	27	광로3-505-1	소로1-4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0	10	특수도로	52	광로3-505-1	소로(특)1-8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1	10	특수도로	139	중로3-538	중로3-53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2	10	특수도로	39	중로3-538	제1호 수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3	10	특수도로	99	소로(특)1-81	제19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4	10	특수도로	126	중로3-538	제1호 수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5	10	특수도로	139	중로1-558	제17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6	10	특수도로	63	대로3-521	제29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87	10	특수도로	209	대로3-519	제29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1	88	10	특수도로	141	대로3-521	제3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89	10	특수도로	203	광로3-505	제3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90	10	특수도로	182	중로2-523	중로2-19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1	91	10	특수도로	87	대로3-531	소로(특)1-9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1	92	10	특수도로	70	대로3-531	소로(특)1-9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93	10	특수도로	298	중로1-564	중로(특)3-54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94	10	특수도로	75	중로3-534	중로(특)3-54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1	95	10	특수도로	55	제7호 어린이공원	중로3-514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1	99	10	특수도로	47	중로2-524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2단계
기정	소로	1	100	10	특수도로	66	대로2-507	제12호 일반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1	101	10	특수도로	64	대로2-507	제13호 일반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1	104	10	특수도로	153	대로2-512	소로(국)2-207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3단계
기정	소로	1	105	10	특수도로	26	대로2-512	소로(국)2-197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3단계
기정	소로	1	106	10	특수도로	112	중로1-560	제3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2단계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114	중로1-565	중로3-53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15	중로3-514	소로1-7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208	소로1-7	소로1-52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153	소로1-54	소로1-59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153	소로1-54	소로1-59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90	중로2-520	제1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7	8	특수도로	16	소로2-119	제25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8	8	특수도로	145	소로(특)3-13	소로1-52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2	18	8	특수도로	20	공공공지	소로2-205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9	8	특수도로	20	공공공지	소로2-204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0	8	특수도로	20	공공공지	소로2-205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2	21	8	특수도로	88.7	소로2-116-1	광로3-504	보행자 전용도로		-	2-2단계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0	중로1-545	소로1-46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156	산업시설용지2-7 운북동656-11	제4호 소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3	2	6	특수도로	156	산업시설용지2-7 운북동656-11	제4호 소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171	중로2-512-1	제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58	대로3-506	소로(특)3-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174	연결녹지1	제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31	중로2-512	소로1-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6	대로3-506	소로1-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	4	특수도로	81	소로(특)2-3	중로3-51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97	소로1-6	소로1-5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26	대로3-506	소로1-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25	대로3-506	소로1-5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22	소로3-2	소로1-5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25	대로3-506	소로1-5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9	소로3-4	중로3-51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9	4	특수도로	45	제12호 소공원	중로3-51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0	4	특수도로	18	대로3-506	소로3-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1	6	특수도로	79	중로1-544-1	경관녹지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4단계
변경	소로	3	21	6	특수도로	79	중로1-544-1	경관녹지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소로	3	22	6	특수도로	50	중로2-519	제35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3	6	특수도로	57	중로2-520	제35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4	6	특수도로	71	제54호 완충녹지	제25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3	제25호 연결녹지	소로2-19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17	소로2-180	제25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54	제54호 완충녹지	소로2-12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8	6	특수도로	17	소로2-180	소로2-11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8	중로3-513	소로3-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0	4	특수도로	20	중로3-513	소로1-7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1	6	특수도로	51	대로3-506	제4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2	6	특수도로	10	제20호 소공원	소로3-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3	4	특수도로	20	중로1-516	소로1-7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4	4	특수도로	15	중로1-516	소로1-1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5	6	특수도로	50	대로3-506	소로1-1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6	6	특수도로	91	대로3-506	중로2-51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7	6	특수도로	8	중로2-518	소로3-1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8	4	특수도로	8	제35호 완충녹지	소로3-1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39	6	특수도로	66	중로2-519	중로(특)1-57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0	6	특수도로	51	소로1-66	중로2-52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26	대로2-506	소로1-6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16	소로1-65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3	6	특수도로	17	소로1-65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4	4	특수도로	13	소로2-30	제1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5	4	특수도로	13	소로2-31	연결녹지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6	6	특수도로	115	연결녹지2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7	6	특수도로	51	중로1-517	연결녹지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8	4	특수도로	13	소로2-32	연결녹지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49	4	특수도로	13	소로2-33	제1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0	6	특수도로	19	소로1-13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1	4	특수도로	13	소로2-34	소로(특)3-5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2	6	특수도로	58	중로1-517	제1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3	4	특수도로	13	소로2-35	소로(특)3-5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4	6	특수도로	58	소로1-13	제1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5	6	특수도로	20	중로1-512	소로2-3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6	6	특수도로	20	소로2-36	제9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7	6	특수도로	15	소로2-36	제9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8	6	특수도로	20	중로2-549	소로2-3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59	4	특수도로	15	소로2-37	제1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0	4	특수도로	15	소로2-42	제1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1	4	특수도로	16	소로2-38	제1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2	4	특수도로	16	소로2-41	제1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3	4	특수도로	17	소로2-39	제1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4	6	특수도로	21	중로2-545	소로2-4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5	6	특수도로	20	중로2-545	소로2-4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6	4	특수도로	15	소로2-44	제14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7	4	특수도로	15	소로2-51	제14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8	4	특수도로	15	소로2-46	제14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69	4	특수도로	10	소로2-50	제14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0	4	특수도로	11	소로2-47	제14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1	4	특수도로	10	소로2-49	제14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2	6	특수도로	20	중로1-544	소로2-4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3	6	특수도로	21	중로1-512	소로1-1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4	6	특수도로	28	중로1-544	소로1-1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5	6	특수도로	21	중로1-544	소로1-1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6	6	특수도로	55	대로3-515	소로2-7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7	4	특수도로	14	소로2-77	제2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8	4	특수도로	21	소로2-81	소로2-17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79	6	특수도로	55	중로1-544-1	소로2-7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0	6	특수도로	20	중로1-545	소로2-7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1	6	특수도로	19	소로2-76	소로1-2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2	4	특수도로	14	중로1-545	소로2-7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3	6	특수도로	102	중로1-545	소로1-2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4	6	특수도로	102	중로1-545	소로1-3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5	6	특수도로	88	중로1-544-1	소로1-3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6	6	특수도로	20	중로1-545	소로2-8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7	4	특수도로	14	중로1-545	소로2-8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8	4	특수도로	15	중로1-544	소로2-8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89	4	특수도로	17	소로2-180	제25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9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3	90	6	특수도로	23	대로3-516-1	소로2-8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91	4	특수도로	11	소로2-171	소로2-17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92	6	특수도로	37	중로1-543	소로2-5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94	6	특수도로	210	중로1-542	소로1-1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95	6	특수도로	70	중로1-543	소로1-2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96	6	특수도로	99	광로3-505-1	중로1-54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97	4	특수도로	15	대로3-515	소로2-7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98	4	특수도로	12	소로2-180	제25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99	4	특수도로	28	중로1-543	소로1-2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00	6	특수도로	210	중로1-542	소로1-1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01	6	특수도로	72	중로1-543	소로1-2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02	4	특수도로	40	제17호소공원	제25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03	6	특수도로	145	대로2-517	제26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04	6	특수도로	63	중로1-542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05	6	특수도로	14	중로1-542	소로2-5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06	6	특수도로	15	중로1-542	소로2-6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07	6	특수도로	35	광로3-505-1	소로2-18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08	6	특수도로	95	중로1-542	중로(특)2-54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09	6	특수도로	67	제26호 연결녹지	제18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10	4	특수도로	18	소로2-62	제506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12	6	특수도로	210	중로1-542	소로1-2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13	6	특수도로	70	중로1-543	소로1-2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14	6	특수도로	35	광로3-505	소로2-18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15	4	특수도로	28	중로1-543	소로1-2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16	6	특수도로	210	중로1-542	소로1-2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7	6	특수도로	77	중로1-543	소로1-2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18	6	특수도로	98	중로1-543	연결녹지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19	6	특수도로	30	대로3-519	소로2-18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20	4	특수도로	14	소로2-70	연결녹지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1	6	특수도로	16	중로2-520	소로1-6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2	4	특수도로	14	소로2-75	연결녹지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3	6	특수도로	209	중로1-543	연결녹지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4	4	특수도로	14	중로1-543	소로2-6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5	6	특수도로	22	중로1-547	소로1-3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6	4	특수도로	24	대로3-506	소로1-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7	6	특수도로	66	소로1-27	소로2-8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8	6	특수도로	35	광로3-505-1	중로2-52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29	6	특수도로	20	중로1-544-1	소로1-4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30	6	특수도로	30	소로1-35	연결녹지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31	6	특수도로	35	광로3-505-1	소로1-3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32	6	특수도로	30	소로1-37	연결녹지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33	6	특수도로	32	광로3-505-1	소로1-3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34	6	특수도로	66	소로1-30	소로2-1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35	6	특수도로	47	중로2-528	제10호 소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36	6	특수도로	34	중로1-547	소로1-3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37	6	특수도로	27	대로3-516	소로1-3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38	6	특수도로	22	중로1-547	소로1-3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39	6	특수도로	28	대로3-518	소로 2-9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40	6	특수도로	35	광로3-505-1	중로2-52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41	6	특수도로	30	광로3-505-1	소로2-8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42	6	특수도로	20	중로2-539	소로2-89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43	6	특수도로	59	광로3-504	중로3-53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44	4	특수도로	10	중로1-565-3	소로2-91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45	4	특수도로	16	중로1-565-3	소로2-9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6	4	특수도로	10	소로2-105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47	4	특수도로	10	소로2-96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48	4	특수도로	10	소로2-95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49	4	특수도로	9	소로2-97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50	4	특수도로	15	소로2-110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51	4	특수도로	10	소로2-114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52	6	특수도로	45	광로3-504	소로2-110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53	6	특수도로	25	중로1-565-2	소로2-114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54	4	특수도로	15	소로2-112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55	4	특수도로	13	소로2-111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56	4	특수도로	17	소로2-116-1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57	4	특수도로	10	중로1-565-3	소로2-9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58	4	특수도로	10	소로2-100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59	4	특수도로	42	중로1-565-3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0	4	특수도로	10	소로2-103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1	4	특수도로	10	소로2-104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2	4	특수도로	10	소로2-99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3	4	특수도로	10	소로2-106	제25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4	4	특수도로	8	소로2-107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5	4	특수도로	11	소로2-109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66	6	특수도로	58	중로1-565-2	제34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기정	소로	3	167	6	특수도로	25	소로2-99	완충녹지 44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168	6	특수도로	25	소로2-108	완충녹지 44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169	6	특수도로	65	광로3-505-1	중로3-53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0	6	특수도로	83	중로3-538	제1호 수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1	6	특수도로	23	소로2-182	제506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2	6	특수도로	6	중로1-557	소로3-17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3	6	특수도로	117	소로1-44	중로3-52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4	6	특수도로	80	소로1-44	제2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75	6	특수도로	26	중로3-526	소로2-132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6	6	특수도로	95	대로3-521	제2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7	6	특수도로	25	중로1-557	소로2-133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8	6	특수도로	100	중로1-557	제30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79	6	특수도로	6	중로1-557	소로3-18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81	4	특수도로	16	소로2-16	제30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82	6	특수도로	77	중로3-525	제30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83	4	특수도로	22	소로2-138	제29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84	6	특수도로	189	제30호 근린공원	제9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1단계
기정	소로	3	185	6	특수도로	37	대로2-507-1	중로2-54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3	186	6	특수도로	51	중로1-558	제29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87	6	특수도로	134	중로1-560-1	제18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197	6	특수도로	37	대로2-507	중로2-544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3	198	6	특수도로	90	광로3-505-1	중로2-539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3	199	4	특수도로	17	중로2-539	소로2-89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3	202	6	특수도로	45	중로2-523	소로(특)1-9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3	203	6	특수도로	35	광로3-505-1	소로2-16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04	6	특수도로	50	중로3-538	제20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05	6	특수도로	51	소로2-165	소로2-16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06	6	특수도로	20	중로3-538	소로2-165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소로	3	207	4	특수도로	12	소로2-195	제1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08	4	특수도로	18	소로2-87	소로2-83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09	4	특수도로	12	소로2-84	소로2-160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0	4	특수도로	13	소로2-85	소로1-61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1	4	특수도로	19	소로2-85	소로1-61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2	4	특수도로	26	소로2-80	소로2-79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13	4	특수도로	8	중로3-536	소로2-179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4	4	특수도로	15	중로3-536	소로2-102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5	6	특수도로	27	중로1-545	소로1-40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6	6	특수도로	27	중로1-545	소로1-29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7	6	특수도로	98	중로1-545	소로1-71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8	6	특수도로	20	중로1-544-1	소로1-71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19	6	특수도로	75	중로3-525	제29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20	6	특수도로	25	소로1-72	소로(특)1-89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3	221	6	특수도로	25	중로1-561	소로1-73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소로	3	222	6	특수도로	25	소로1-16	중로3-543	보행자 전용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소로	3	223	6	특수도로	6	중로1-516	소로3-9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24	6	특수도로	24	대로3-506	소로1-1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25	6	특수도로	40	중로2-518	소로1-11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26	6	특수도로	14	중로2-518	소로1-78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27	6	특수도로	8	중로(특)2-540	소로3-12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28	6	특수도로	8	중로(특)2-540	소로3-1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29	6	특수도로	8	소로(특)2-6	소로3-14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30	6	특수도로	8	소로(특)2-6	소로3-15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31	6	특수도로	16	대로2-506	소로3-16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32	6	특수도로	16	소로1-64	중로(특)1-572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0-303호 (2010.6.18)	1단계
기정	소로	3	233	6	특수도로	99	대로3-531	소로(특)1-9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2-2단계
기정	소로	3	234	6	특수도로	126	대로3-531	소로(특)1-88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1-248호 (2011.12.21.)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40	4	특수도로	19	중로1-545	소로2-76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2012.12.28.)	1단계
기정	소로	3	241	4	특수도로	179	제10호 공공공지	제506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4단계
변경	소로	3	241	4	특수도로	179	제10호 공공공지	제506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3단계
기정	소로	3	242	5	특수도로	150	제28호 연결녹지	소로2-201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기정	소로	3	243	6	특수도로	20	제12호 공공공지	소로2-198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2014.11.07.)	2-3단계

⑨ 주차장 【변경 없음】

⑩ 지하공공보도 【변경 없음】

⑪ 자동차정류장 【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차고지	운북동 779-4잡 일원	12,568.0	감) 2.9	12,565.1	지고09-278호 (2009.12.2)	2-4단계

## 2) 공간시설 【변경】

## ① 광장 【변경】

## ○ 광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537,732.5	증) 4.9	537,737.4	-	-
소계	-	-	-	-	416,563.0	증) 4.9	416,567.9	-	-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운남동 1062-12임 일원	298,685.0	-	298,685.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3,494.1) 2-4단계 →3단계 (295,190.9)
변경	60	광장	교통광장	운서동 1499-3 일원	12,833.0	-	12,833.0	인고제1999-148호 (99.10.23)	2-4단계 →3단계
기정	61	광장	교통광장	운서동 1518-1도 일원	11,415.0	-	11,415.0	인고제1999-148호 (99.10.23)	3단계
기정	505	광장	교통광장	중산동 1097-55답 일원	82,801.0	-	82,801.0	인고제2002-200호 (2002.9.12)	3단계
변경	600	광장	교통광장	운북동 779-8잡 일원	10,829.0	증) 4.9	10,833.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소계	-	-	-	-	121,169.5	-	121,169.5	-	-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운서동 3091-8 일원	6,428.7	-	6,428.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운서동 1094대 일원	4,232.0	-	4,232.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5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794도 일원	27,091.3	-	27,091.3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6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708-3 일원	560.0	-	56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7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704-1공 일원	591.4	-	591.4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8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877-5 일원	5,399.3	-	5,399.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9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884-5 일원	5,401.6	-	5,401.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1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958-10공 일원	5,807.0	-	5,807.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2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601-6공 일원	3,185.1	-	3,185.1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13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603-4공 일원	3,294.1	-	3,294.1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14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89-34 제 일원	39,363.3	-	39,363.3	재고07-58호 (07.11.6)	2-3단계
기정	15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956-2 일원	4,360.7	-	4,360.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16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36-2장 일원	15,455.0	-	15,455.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3단계

주) ( )의 면적은 광장시설 조서상 면적임

## ② 공원【변경】

##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4,344,603.7	감) 6.5	4,344,597.2	-	-
근린공원	소계	-	-	-	3,975,071.0	-	3,975,071.0	-	-
	기정 1	공원	제1호근린공원	운서동 3020-1공 일원	26,063.0	-	26,063.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2	공원	제2호근린공원	운서동 3073-1공 일원	392,450.4	-	392,450.4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3	공원	제3호근린공원	운서동 산167입 일원	144,608.0	-	144,608.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4	공원	제4호근린공원	운서동 산296-15 입 일원	166,527.0	-	166,527.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5	공원	제5호근린공원	운서동 1116-1전 일원	30,910.0	-	30,910.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6	공원	제6호근린공원	운남동 1598-6공 일원	59,927.3	-	59,927.3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7	공원	제7호근린공원	운서동 산274입 일원	48,566.0	-	48,566.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8	공원	제8호근린공원	운남동 1604-3공 일원	26,614.7	-	26,614.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9	공원	제9호근린공원	운남동 1680-4 일원	10,746.1	-	10,746.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0	공원	제10호근린공원	운남동 1697-4공 일원	13,459.3	-	13,459.3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1	공원	제11호근린공원	운남동 1654-3공 일원	97,629.0	-	97,629.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2	공원	제12호근린공원	운남동 1740-19	14,542.6	-	14,542.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3	공원	제13호근린공원	중산동 1871-6	10,085.1	-	10,085.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4	공원	제14호근린공원	중산동 189-55잡 일원	43,441.1	-	43,441.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기정 15	공원	제15호근린공원	중산동 1960-6공 일원	48,505.2	-	48,505.2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6	공원	제16호근린공원	중산동 1880-4 일원	31,629.4	-	31,629.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7	공원	제17호근린공원	중산동 1911-4 일원	351,889.5	-	351,889.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8	공원	제18호근린공원	중산동 1887-16 일원	19,303.8	-	19,303.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9	공원	제19호근린공원	중산동 1912-1 일원	45,073.0	-	45,073.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0	공원	제20호근린공원	중산동 243-1전 일원	101,785.0	-	101,785.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21	공원	제21호근린공원	중산동189-185잡 일원	19,481.5	-	19,481.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기정 22	공원	제22호근린공원	중산동189-179잡 일원	58,403.7	-	58,403.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근 린 공 원	기정	23	공원	제23호근린공원	중산동 1958-7 일원	17,403.5	-	17,40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5	공원	제25호 근린공원	운남동 1711-62 일원	23,258.6	-	23,258.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6	공원	제26호 근린공원	운서동 2856유 일원	87,222.1	-	87,222.1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27	공원	제27호 근린공원	운서동 3076-1공 일원	10,926.1	-	10,926.1	지코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8	공원	제28호 근린공원	중산동 1878-2 일원	16,940.9	-	16,940.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9	공원	제29호 근린공원	운남동 1766-3공 일원	20,126.9	-	20,126.9	지코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30	공원	제30호 근린공원	운남동 1681-3 일원	14,966.5	-	14,966.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1	공원	제31호 근린공원	운남동 1680-3 일원	14,443.5	-	14,44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2	공원	제32호 근린공원	중산동 산265 일원	36,889.0	-	36,889.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3	공원	제33호 근린공원	중산동 1959-2공 일원	8,651.9	-	8,651.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4	공원	제34호 근린공원	운남동 1745-10공 일원	43,513.6	-	43,513.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5	공원	제35호 근린공원	운남동 1681-9공 일원	55,128.2	-	55,128.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6	공원	제36호 근린공원	중산동 산316임 일원	10,172.0	-	10,172.0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506	공원	제506호 근린공원	운남동 1640-1 일원	1,770,719.2	-	1,770,719.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7	공원	제37호 근린공원	운남동 1711-84공 일원	28,383.8	-	28,383.8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2단계	
	기정	38	공원	제38호 근린공원	운남동 산133임 일원	54,684.5	-	54,684.5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3단계	
	체 육 공 원	소계	-	-	-	-	120,576.8	-	120,576.8	-	
		기정	1	공원	제1호 체육공원	중산동 1878-3 일원	60,631.8	-	60,631.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	공원	제2호 체육공원	중산동253-1답 일원	59,945.0	-	59,945.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어 린 이 공 원	소계	-	-	-	-	102,272.6	감) 5.5	102,267.1	-		
	기정	3	공원	제3호 어린이공원	운서동 3012-9공 일원	2,292.4	-	2,292.4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4	공원	제4호 어린이공원	운서동3052-6 일원	1,629.6	-	1,629.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어린이공원	기정	5	공원	제5호 어린이공원	운서동3034 일원	5,167.0	-	5,167.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7	공원	제7호 어린이공원	운서동3033-4 일원	1,640.6	-	1,640.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8	공원	제8호 어린이공원	운남동 1643-1공 일원	2,027.5	-	2,027.5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9	공원	제9호 어린이공원	운서동3050-1 일원	9,020.1	-	9,020.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0	공원	제10호 어린이공원	운서동 3076-3공일원	2,384.2	-	2,384.2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1	공원	제11호 어린이공원	운서동3081-1 일원	1,662.9	-	1,662.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2	공원	제12호 어린이공원	운서동3083-10 일원	5,128.6	-	5,128.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3	공원	제13호 어린이공원	운서동1684-10 일원	3,717.0	-	3,717.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4	공원	제14호 어린이공원	운남동1690-14 일원	3,216.0	-	3,216.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15	공원	제15호 어린이공원	운서동482-3잡 일원	1,835.0	-	1,835.0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3단계
	기정	16	공원	제16호 어린이공원	운서동3110 일원	2,096.9	-	2,096.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7	공원	제17호 어린이공원	운서동1008전 일원	9,275.0	-	9,275.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18	공원	제18호 어린이공원	운남동 1764-6공 일원	1,514.8	-	1,514.8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19	공원	제19호 어린이공원	운남동1750-12 일원	2,255.4	-	2,255.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0	공원	제20호 어린이공원	운남동1757-7 일원	2,971.4	-	2,971.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1	공원	제21호 어린이공원	중산동 1894-15 일원	1,980.0	-	1,980.0	재고07-58호 (07.11.6)	1단계
	변경	22	공원	제22호 어린이공원	운남동 1208-8답 일원	3,134.0	감) 5.5	3,128.5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23	공원	제23호 어린이공원	운남동 1674-6 일원	6,246.5	-	6,246.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4	공원	제24호 어린이공원	운남동 1657-36 일원	3,400.2	-	3,400.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5	공원	제25호 어린이공원	운남동 1618-1 일원	3,554.8	-	3,554.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6	공원	제26호 어린이공원	운남동 1631-9 일원	5,804.9	-	5,804.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9	공원	제29호 어린이공원	중산동 1909-25 일원	3,322.6	-	3,322.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0	공원	제30호 어린이공원	중산동 1903-9 일원	6,570.8	-	6,570.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어린이공원	기정	31	공원	제31호 어린이공원	중산동 1914-5공 일원	4,347.4	-	4,347.4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32	공원	제32호 어린이공원	중산동 1887-7 일원	6,077.0	-	6,077.0	재고06-53호 (06.12.5)	1단계
	소계	-	-	-	-	46,683.3	감) 1.0	46,682.3	-	-
소공원	기정	1	공원	제1호 소공원	운서동 3038-6 일원	1,230.1	-	1,230.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	공원	제2호 소공원	운남동 1660-1 일원	1,222.3	-	1,222.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	공원	제3호 소공원	운북동 1338-2 일원	4,517.2	-	4,517.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4	공원	제4호 소공원	운서동 647-1답 일원	3,156.0	-	3,156.0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3단계
	기정	5	공원	제5호 소공원	운남동 1747-11 일원	353.1	-	353.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6	공원	제6호 소공원	운남동 1242-3유 일원	1,375.0	감) 1.0	1,374.0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8	공원	제8호 소공원	운남동 1707-2 일원	989.1	-	989.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9	공원	제9호 소공원	운남동 1700-2대 일원	912.7	-	912.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0	공원	제10호 소공원	운남동 1703-4공 일원	1,014.2	-	1,014.2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1	공원	제11호 소공원	운남동 1741-2 일원	669.7	-	669.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2	공원	제12호 소공원	운서동 3044-1 일원	1,410.4	-	1,410.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3	공원	제13호 소공원	운서동 3045-1 일원	1,287.5	-	1,287.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4	공원	제14호 소공원	운서동 3118-6 일원	1,129.2	-	1,129.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5	공원	제15호 소공원	운남동 1731-1공 일원	488.5	-	488.5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16	공원	제16호 소공원	운남동 1734-5공 일원	405.2	-	405.2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17	공원	제17호 소공원	운남동1733-36공 일원	1,130.0	-	1,130.0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18	공원	제18호 소공원	운남동1727-29공 일원	474.6	-	474.6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19	공원	제19호 소공원	운남동 1668-3 일원	1,429.1	-	1,429.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0	공원	제20호 소공원	운서동 3051-26 일원	1,508.2	-	1,508.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1	공원	제21호 소공원	운서동 3061-5 일원	1,256.3	-	1,256.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공원	기정	22	공원	제22호 소공원	운서동 3068-2 일원	1,238.7	-	1,238.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3	공원	제23호 소공원	운서동 3115-4 일원	705.7	-	705.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24	공원	제24호 소공원	운남동 1113-59 일원	9,315.0	-	9,315.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3단계
	변경	25	공원	제25호 소공원	운남동 1113-47 일원	6,404.0	-	6,404.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3단계
	기정	26	공원	제26호 소공원	중산동 1945공 일원	3,061.5	-	3,061.5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2단계
묘지공원	소계	-	-	-	-	100,000.0	-	100,000.0	-	-
	기정	1	공원	제1호 묘지공원	운서동 산178임 일원	100,000.0	-	100,000.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③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1,543,812.0	증) 41.8	1,543,853.8	-	-
소계	-	-	-	-	889,118.7	증) 89.8	889,208.5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13공 일원	9,257.7	-	9,257.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200-5임 일원	99,263.0	-	99,263.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3단계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60-32 일원	9,426.3	-	9,426.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71공 일원	4,403.1	-	4,403.1	인고제2000-117호 (2000.7.3)	2-2단계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097-14답 일원	13,519.0	-	13,519.0	인고제2000-117호 (2000.7.3)	3단계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7-1공 일원	12,155.3	-	12,155.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083 일원	25,858.90	-	25,858.9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9-1 일원	3,783.8	-	3,783.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911-1답 일원	4,483.0	증) 66.7	4,549.7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1598-7 일원	1,564.6	-	1,564.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2856유 일원	1,560.0	-	1,560.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산246-2임 일원	22,397.0	-	22,397.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13-23유 일원	13,713.0	-	13,713.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3단계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242-2염 일원	2,075.0	증) 7.8	2,082.8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10-8공 일원	7,283.1	-	7,283.1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50-4공 일원	1,222.5	-	1,222.5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1711-22일원	1,119.7	-	1,119.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65-5공 일원	6,268.1	-	6,268.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변경	20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1-10 일원	18,140.9	-	18,140.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선형 변경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8-14 일원	24,356.8	-	24,356.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80-8 일원	19,991.7	-	19,991.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1-16 일원	24,700.3	-	24,700.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80-5 일원	5,172.7	-	5,172.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50-9 일원	1,504.6	-	1,504.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58-2 일원	1,561.0	-	1,561.0	재고07-58호 (07.11.6)	1단계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27-28공 일원	6,081.7	-	6,081.7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29-3 일원	880.2	-	880.2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34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86-4 일원	30,466.8	-	30,466.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35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1496-11임 일원	41,859.0	-	41,859.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3단계
기정	36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1680-3 일원	79,134.0	-	79,134.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7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944-12 일원	51,921.0	-	51,921.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8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17-28공 일원	1,654.1	-	1,654.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9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2-2공 일원	2,548.6	-	2,548.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0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3-5 일원	3,292.1	-	3,292.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598-2공 일원	8,641.4	-	8,641.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2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8-38 일원	5,354.0	-	5,354.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3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41-25공 일원	3,242.6	-	3,242.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4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22-80 일원	5,294.0	-	5,294.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5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45-15공 일원	848.4	-	848.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6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40-14 일원	7,512.1	-	7,512.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7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61-30공 일원	4,190.0	-	4,19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8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87-6 일원	25,582.8	-	25,582.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9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15-4공 일원	7,091.1	-	7,091.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0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5-11공 일원	2,832.1	-	2,832.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8-37 일원	4,518.9	-	4,518.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2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8-5 일원	6,713.5	-	6,71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09-4공 일원	5,893.2	-	5,893.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67공 일원	141,557.9	-	141,557.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11-31 일원	4,670.8	-	4,670.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27-4공 일원	1,130.6	-	1,130.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3101-2일원	4,428.2	-	4,428.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58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911-51일원	2,805.0	감) 7.0	2,798.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기정	59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598-12공 일원	7,424.7	-	7,424.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60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1113-23유일원	12,572.0	-	12,572.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6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10-6공 일원	818.5	-	818.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2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1-8 일원	6,672.7	-	6,672.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63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714-8공 일원	3,440.3	-	3,440.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변경	64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656-23 일원	3,161.0	-	3,161.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3단계
변경	66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산53-1임 일원	10,674.3	-	10,674.3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3단계
변경	67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242-4구 일원	10,085.3	증) 18.2	10,103.5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변경	6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310-3전 일원	1,304.3	-	1,304.3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3단계
변경	69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56임 일원	8,741.2	감) 4.4	8,736.8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변경	70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13-30염 일원	20,682.0	감) 17,119.8	3,562.2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변경	7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206-1 일원	7,410.8	증) 5.5	7,416.3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변경	72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795전 일원	1,206.4	증) 3.0	1,209.4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신설	73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13-30염 일원	-	증) 17,119.8	17,119.8	-	3단계
소계	-	-	-	-	427,583.2	감) 49.0	427,534.2	-	-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779-4잡 일원	13,196.0	감) 49.0	13,147.0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3단계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 644전 일원	19,696.0	-	19,696.0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3단계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 3076-4공 일원	31,884.1	-	31,884.1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중산동251-4전일원	6,103.0	-	6,103.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운남동 1494-3도 일원	2,757.0	-	2,757.0	인천경제청고 2015-262호 (15.10.5)	2-4단계 →3단계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운남동 1494-1공 일원	3,694.0	-	3,694.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3단계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 산6임 일원	350,253.1	-	350,253.1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3단계
소계	-	-	-	-	227,110.1	증) 1.0	227,111.1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17-26공 일원	6,062.9	-	6,062.9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79-3 일원	2,491.3	-	2,491.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472답 일원	6,911.0	-	6,911.0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3단계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103-3 일원	14,370.3	-	14,370.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1619-18일원	3,884.3	-	3,884.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1666 일원	13,721.8	-	13,721.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05-20공 일원	3,496.7	-	3,496.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66-18공 일원	4,952.7	-	4,952.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0-14공 일원	1,650.2	-	1,650.2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1-3 일원	5,213.5	-	5,21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7-17일원	13,869.8	-	13,869.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8-3 일원	8,861.1	-	8,861.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3085-3공 일원	4,400.5	-	4,400.5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9-1임 일원	7,200.0	-	7,200.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1687-6대 일원	2,731.0	-	2,731.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산261-7임 일원	23,720.0	-	23,720.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1083-18염 일원	21,173.0	-	21,173.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1177-3전 일원	7,305.0	-	7,305.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957-26염 일원	11,350.0	-	11,350.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11-40 일원	1,079.8	-	1,079.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71-7 일원	26,697.0	-	26,697.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3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33-21공 일원	2,386.6	-	2,386.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24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10-4공 일원	1,932.3	-	1,932.3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25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30-8공 일원	3,396.2	-	3,396.2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65-3공 일원	7,726.9	-	7,726.9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65-10공 일원	7,951.4	-	7,951.4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9-36도일원	2,147.9	-	2,147.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변경	29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907일원	5,009.0	증) 1.0	5,01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1737-4일원	2,186.4	-	2,186.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35-8일원	3,231.5	-	3,231.5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 ④ 공공공지 【변경】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단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42,147.5	감) 16.3	42,131.2		
기정	1	공공공지	운서동 3087-1 일원	3,881.5	-	3,881.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2	공공공지	운남동 1229-1답 일원	824.0	감) 16.3	807.7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기정	3	공공공지	운남동 1705-11 일원	2,500.2	-	2,500.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	공공공지	중산동 1886-8 일원	6,259.2	-	6,259.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	공공공지	운남동 1710-5공 일원	1,438.4	-	1,438.4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6	공공공지	운서동 3046-13 일원	1,053.5	-	1,053.5	지고09-278호 (09.12.2)	1단계
기정	7	공공공지	중산동 1916-11공 일원	1,258.7	-	1,258.7	지고09-278호 (09.12.2)	2-2단계
기정	8	공공공지	운서동 3096-2공 일원	993.2	-	993.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9	공공공지	운남동 1705-34공 일원	2,458.6	-	2,458.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10	공공공지	중산동 1960-13공 일원	8,400.1	-	8,400.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11	공공공지	운서동 3085-6공 일원	413.5	-	413.5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2단계
기정	12	공공공지	중산동 189-249일원	2,507.5	-	2,507.5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3	공공공지	중산동 189-232일원	977.0	-	977.0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4	공공공지	중산동 189-187일원	793.3	-	793.3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5	공공공지	중산동 135-10일원	3,609.0	-	3,609.0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6	공공공지	중산동 189-245일원	1,095.7	-	1,095.7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7	공공공지	중산동 189-7답 일원	532.1	-	532.1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3단계
기정	18	공공공지	중산동 497-8잡 일원	2,915.0	-	2,915.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3단계
변경	19	공공공지	운북동 779-11잡 일원	237.0	-	237.0	-	2-4단계 →3단계

-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변경】  
 ① 공공청사 【변경 없음】  
 ② 학교 【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394,016.1	감) 58.5	393,957.6		
소계	-	-	-	-	100,308.0	감) 24.5	100,283.5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운서동 865답 일원	13,682.0	감) 19.3	13,662.7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변경	2	학교	초등학교	운남동 1208-5답 일원	14,877.0	감) 5.2	14,871.8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880-3	13,801.4	-	13,801.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914-4학 일원	14,403.5	-	14,403.5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766-4학 일원	15,576.4	-	15,576.4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871-2	15,125.2	-	15,125.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887-3	12,842.5	-	12,842.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소계	-	-	-	-	60,263.7	-	60,263.7		
기정	1	학교	중학교	운서동 3083-23	15,082.0	-	15,082.0	재고06-53호 (06.12.5)	1단계
기정	2	학교	중학교	운남동 1655-12	15,954.8	-	15,954.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3	학교	중학교	운남동 1737-2	13,651.9	-	13,651.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4	학교	중학교	중산동 1914-2학 일원	15,575.0	-	15,575.0	인천경자고 12-129호(12.5.18)	2-2단계
소계	-	-	-	-	147,822.4	-	147,822.4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 3077-1학 일원	41,578.7	-	41,578.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2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 3077-4학 일원	29,450.0	-	29,450.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3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 3103-8	15,273.2	-	15,273.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4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3074	30,810.0	-	30,81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5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 1737-1	15,618.2	-	15,618.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6	학교	고등학교	중산동 1914-1학 일원	15,092.3	-	15,092.3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소계	-	-	-	-	85,622.0	감) 34.0	85,588.0		
변경	1	학교	외국인 학교	운남동 1105답 일원	85,622.0	감) 34.0	85,588.0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5)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①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없음】**

②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 오수중계펌프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489.0	-	489.0		
변경	1	오수중계펌프장	운북동 779-4잡 일원	17.0	-	17.0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3단계
기정	2	오수중계펌프장	운서동 3086-6	17.1	-	17.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	오수중계펌프장	운남동 1745-11잡 일원	101.6	-	101.6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4	오수중계펌프장	중산동 1966-1잡 일원	353.3	-	353.3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③ 빗물펌프장 **【변경 없음】**

④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0,499.9	-	10,499.9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운서동 3073-4잡 일원	2,500.0	-	2,500.0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2	폐기물처리시설	운남동 1640-5잡 일원	2,999.8	-	2,999.8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3	폐기물처리시설	중산동 1640-10잡 일원	2,500.1	-	2,500.1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변경	4	폐기물처리시설	중산동 258-3답 일원	2,500.0	-	2,500.0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3단계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①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② 공동주택용지 - A【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A1	A1	24,249.0	A1	24,249.0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변경	A1	A1	24,048.0	A1	24,048.0	
기정	A2	A2	23,581.0	A2	23,581.0	
기정	A3	A3	25,774.3	A3	25,774.3	
기정	A4	A4	19,528.1	A4	19,528.1	
기정	A5	A5	32,160.0	A5	32,160.0	
변경	A5	A5	31,660.0	A5	31,660.0	
기정	A6	A6	21,575.9	A6	21,575.9	
기정	A7	A7	53,393.3	A7	53,393.3	
기정	A8	A8	66,799.0	A8	66,799.0	
변경	A8	A8	66,765.3	A8	66,765.3	
기정	A9	A9	44,597.0	A9	44,597.0	
변경	A9	A9	44,568.1	A9	44,568.1	
기정	A10	A10	43,962.0	A10	43,962.0	
기정	A11	A11	17,680.0	A11	17,680.0	
변경	A11	A11	17,656.8	A11	17,656.8	
기정	A12	A12	75,681.9	A12	75,681.9	
기정	A13	A13	60,493.3	A13	60,493.3	
기정	A14	A14	23,290.2	A14	23,290.2	
기정	A15	A15	35,104.0	A15	35,104.0	
기정	A16	A16	90,808.0	A16	90,808.0	
기정	A18	A18	32,044.0	A18	32,044.0	
변경	A18	A18	32,047.9	A18	32,047.9	
기정	A19	A19	27,779.0	A19	27,779.0	
변경	A19	A19	27,771.1	A19	27,771.1	
기정	A20	A20	37,775.0	A20	37,775.0	
변경	A20	A20	37,772.7	A20	37,772.7	
기정	A21	A21	56,102.0	A21	56,102.0	
변경	A21	A21	56,078.9	A21	56,078.9	
기정	A22	A22	56,954.0	A22	56,954.0	
변경	A22	A22	56,945.0	A22	56,945.0	
기정	A23	A23	41,017.5	A23	41,017.5	
기정	A24	A24	46,628.9	A24	46,628.9	
기정	A25	A25	72,300.5	A25	72,300.5	
기정	A26	A26	42,347.0	A26	42,347.0	
기정	A27	A27	90,174.2	A27	90,174.2	
기정	A28	A28	89,548.0	A28	89,548.0	
기정	A29	A29	41,481.1	A29	41,481.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A30	A30	66,614.0	A30	66,614.0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기정	A31	A31	30,710.1	A31	30,710.1	
기정	A32	A32	36,106.2	A32	36,106.2	
기정	A33	A33	33,467.0	A33	33,467.0	
기정	A34	A34	29,506.0	A34	29,506.0	
기정	A35	A35	54,686.3	A35	54,686.3	
기정	A36	A36	53,175.3	A36	53,175.3	
기정	A37	A37	37,696.8	A37	37,696.8	
기정	A38	A38	68,540.2	A38	68,540.2	
기정	A39	A39	54,141.0	A39	54,141.0	
기정	A40	A40	63,272.6	A40	63,272.6	
기정	A41	A41	32,987.5	A41	32,987.5	
기정	A42	A42	50,701.2	A42	50,701.2	
기정	A43	A43	31,218.3	A43	31,218.3	
기정	A44	A44	74,389.7	A44	74,389.7	
기정	A45	A45	72,518.5	A45	72,518.5	
기정	A46	A46	84,025.3	A46	84,025.3	
기정	A47	A47	32,335.9	A47	32,335.9	
기정	A48	A48	57,345.0	A48	57,345.0	
기정	A49	A49	13,469.6	A49	13,469.6	
기정	A50	A50	18,489.3	A50	18,489.3	
기정	A51	A51	28,040.0	A51	28,040.0	
기정	A53	A53	21,095.6	A53	21,095.6	
기정	A54	A54	49,870.3	A54	49,870.3	
기정	A56	A56	35,921.1	A56	35,921.1	
기정	A57	A57	20,389.5	A57	20,389.5	
기정	A58	A58	31,106.0	A58	31,106.0	
기정	A59	A59	25,406.4	A59	25,406.4	
기정	A60	A60	41,624.9	A60	41,624.9	
기정	A61	A61	34,540.6	A61	34,540.6	
기정	A62	A62	58,335.6	A62	58,335.6	
기정	A63	A63	21,986.1	A63	21,986.1	
기정	A64	A64	21,095.4	A64	21,095.4	
기정	A65	A65	25,033.4	A65	25,033.4	
기정	A66	A66	35,110.5	A66	35,110.5	
기정	A67	A67	22,888.0	A67	22,888.0	
합계	기정	-	2,760,667.4	-	2,760,667.4	
	변경	-	2,759,361.5	-	2,759,361.5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 N【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N1	①	544.8	①	544.8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②	1,684.9	-1	329.7	
				-2	337.8	
				-3	337.2	
				-4	336.9	
				-5	343.3	
	소계	-	2,229.7	-	-	
	N2	①	1,430.3	-1	537.6	
				-2	467.2	
				-3	425.5	
		②	2,762.4	-1	449.8	
				-2	451.5	
				-3	448.9	
				-4	445.7	
				-5	441.4	
				-6	525.1	
				-7	441.4	
		③	1,578.5	-1	466.7	
				-2	377.7	
				-3	369.9	
				-4	364.2	
	소계	-	5,771.2	-	-	
	N3	①	885.3	-1	474.2	
				-2	411.1	
		②	2,428.0	-1	346.6	
				-2	346.5	
				-3	346.6	
				-4	346.7	
				-5	347.0	
				-6	346.7	
		③	1,640.4	-1	547.5	
				-2	547.0	
				-3	545.9	
-4				545.9		
④		1,203.1	-1	300.3		
			-2	299.9		
			-3	300.9		
			-4	302.0		
소계	-	6,156.8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N4	①	724.6	-1	358.0		
				-2	366.6		
		②	1,298.6	-1	429.2		
				-2	430.9		
				-3	438.5		
		③	1,346.5	-1	467.3		
				-2	439.9		
				-3	439.3		
		④	564.8	④	564.8		
		⑤	1,570.1	-1	388.1		
				-2	390.1		
				-3	390.0		
	-4			401.9			
	⑥	1,728.4	-1	427.3			
			-2	428.3			
			-3	429.5			
			-4	443.3			
	소계	-	7,233.0	-	-		
	N5	①	3,994.6	-1	835.1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콜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789.3		
				-3	789.4		
				-4	790.1		
				-5	790.7		
		②	3,566.1	-1	919.7		
				-2	881.6		
				-3	882.2		
				-4	882.6		
		③	1,906.5	-1	729.1		
				-2	599.3		
				-3	578.1		
		④	2,260.4	-1	835.1		
				-2	666.2		
-3				769.1			
⑤		3,612.9	-1	903.9			
			-2	903.4			
			-3	903.3			
			-4	902.3			
⑥		3,912.5	-1	986.3			
			-2	953.5			
			-3	1003.7			
			-4	969.0			
⑦		1,572.0	-1	814.0			
	-2		758.0				
⑧	2,592.6	-1	666.9				
		-2	596.4				
		-3	528.4				
		-4	800.9				
소계	-	23,417.6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N6	①	3,313.1	-1	663.6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클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659.4						
				-3	659.7						
				-4	659.7						
				-5	670.7						
	②	3,312.9	-1	663.7							
			-2	660.4							
			-3	660.3							
			-4	659.9							
			-5	668.6							
소계	-	6,626.0	-	-							
기정	N7	①	2,387.8	①	2,387.8						
				②	580.1						
		③	2,716.8	-1	676.1						
				-2	676.0						
				-3	1364.7						
		④	1,302.7	-1	432.8						
				-2	428.5						
변경	④	1,302.7	-3	441.4							
			-1	441.4							
			-2	428.5							
기정	N8	④	3,691.7	-3	432.8						
				-2	428.5						
				소계	-	6,987.4	-	-			
				①	2,614.5	-1	721.0				
						-2	978.0				
						-3	915.5				
						②	656.3	②	656.3		
								-1	735.0		
								-2	739.6		
						③	1,474.6	-1	690.9		
								-2	691.0		
								-3	695.3		
								-4	923.2		
				-5	691.3						
				소계	-	8,437.1	-	-			
				기정	N9	④	1,773.6	-1	557.7		
								-2	560.2		
								-3	622.2		
								②	1,652.3	-1	406.6
										-2	409.9
-3	409.5										
-4	426.3										
③	2,575.9	-1	532.8								
		-2	510.6								
		-3	510.8								
		-4	510.8								
		-5	510.9								
④	1,773.6	-1	459.9								
		-2	448.2								
		-3	447.9								
		-4	417.6								
소계	-	7,741.9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N10	①	2,400.8	-1	446.6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348.7	
				-3	395.1	
				-4	395.3	
				-5	395.2	
				-6	419.9	
		②	2,407.8	-1	328.9	
				-2	410.5	
				-3	410.8	
				-4	410.7	
				-5	410.6	
				-6	436.3	
		③	1,447.1	-1	399.9	
				-2	400.2	
				-3	647.0	
		④	2,288.0	-1	449.6	
				-2	449.9	
				-3	449.9	
				-4	449.5	
				-5	489.1	
		⑤	2,267.8	-1	559.5	
				-2	558.6	
				-3	559.3	
				-4	590.4	
	소계	-	10,811.5	-	-	
	N11	①	1,977.2	-1	448.1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627.0	
				-4	451.0	
				-5	451.1	
		②	993.3	-1	505.2	
				-2	488.1	
		③	1,873.6	-1	519.7	
-2				450.7		
-3				451.7		
-4				451.5		
④		2,968.1	-1	524.8		
			-2	518.4		
			-3	525.6		
			-4	521.6		
			-5	877.7		
소계	-	7,812.2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N12	①	984.4	①	984.4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1	640.2	
		②	1,918.0	-2	642.3	
				-3	642.5	
				-1	655.0	
		③	1,818.9	-2	656.4	
	-3			507.5		
소계	-	4,728.3	-	-		
기정	N13	①	2,807.4	-1	710.8	
				-2	713.1	
				-3	713.7	
				-4	669.8	
		②	2,681.3	-1	658.3	
				-2	719.7	
				-3	716.9	
	-4	586.4				
	소계	-	5,488.7	-	-	
	기정	N14	①	1,767.6	-1	883.8
-2					883.8	
②			1,949.0	-1	973.5	
				-2	975.5	
소계		-	3,716.6	-	-	
기정	N15	①	2,565.5	-1	840.7	
				-2	840.7	
				-3	884.1	
	소계	-	2,565.5	-	-	
기정	N16	①	2,212.0	-1	459.0	
				-2	499.5	
				-3	420.4	
				-4	415.8	
				-5	417.3	
		②	1,990.7	-1	540.5	
				-2	569.8	
	-3			468.0		
	-4	412.4				
	소계	-	4,202.7	-	-	
합계	기정	-	113,926.2	-	-	

※ 필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함

④ 산업(물류)시설용지 - I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①	125,299.0	①-1	63,082.0		
				①-2	30,968.0		
				①-3	31,249.0		
변경		①	125,297.7	①-1	63,082.0		
				①-2	31,249.6		
				①-3	30,966.1		
기정	II	②	101,819.9	②-1	65,922.5		
				②-2	32,614.5		
				②-3	3,282.9		
		③	23,258.0	③-1	13,214.0		
				③-2	10,044.0		
		④	9,175.0	④	9,175.0		
		⑤	34,783.0	⑤-1	6,691.0		
				⑤-2	6,983.0		
				⑤-3	8,439.0		
				⑤-4	5,547.0		
				⑤-5	7,123.0		
		⑥	15,909.0	⑥	15,909.0		
		소계	기정	-	310,243.9	-	-
			변경	-	310,242.6	-	-
		기정	12	①	18,925.0	①-1	4,883.0
						①-2	6,873.0
						①-3	7,169.0
				②	3,515.7	②	3,515.7
③-1	1,828.4						
③	4,357.9			③-2	2,529.5		
				④	3,184.3		
⑤	13,568.0			⑤-1	6,859.0		
				⑤-2	6,709.0		
⑥	28,183.0			⑥-1	12,795.0		
				⑥-2	15,388.0		
⑦	27,808.0			⑦-1	11,899.0		
				⑦-2	15,909.0		
⑧	12,486.0			⑧	12,486.0		
⑨	7,860.0			⑨	7,860.0		
⑩	6,994.0			⑩	6,994.0		
⑪	4,194.0			⑪	4,194.0		
⑫	3,704.0			⑫	3,704.0		
⑬	4,684.0	⑬	4,684.0				
⑭	5,749.0	⑭	5,749.0				
⑮	3,294.0	⑮	3,294.0				
		⑯-1	5,201.0				
⑯	9,605.0	⑯-2	4,404.0				
		⑰-1	4,237.0				
⑰	22,526.0	⑰-2	5,561.0				
		⑰-3	7,450.0				
		⑰-4	5,278.0				
		⑱	2,326.5				
⑱	2,326.5	⑱	2,326.5				
소계	-	-	182,964.4	-	182,964.4		
합계	기정	-	493,208.3	-	-		
	변경	-	493,207.0	-	-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은 허용)

⑤ 상업용지 - C 【변경 없음】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 【변경 없음】

⑦ 업무시설용지 - B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B1	B1	5,788.4	B1	5,788.4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B2	B2	3,855.4	B2	3,855.4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B3	①	2,932.8	-1	976.6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2	980.3	
				-3	975.9	
	B4	①	6,563.3	-1	3,268.6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2	3,294.7	
	B5	B5	3,057.2	B5	3,057.2	필지분할 불허
	B6	①	11,835.7	-1	2,508.6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2	2,364.1	
				-3	2,161.7	
				-4	2,161.0	
				-5	2,640.3	
	B7	①	9,115.4	①	9,115.4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②	4,729.4	②	4,729.4	
	기정	-	47,877.6	-	-	
	B8	①	11,994.0	-1	2,626.1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2	2,160.8	
				-3	2,160.8	
-4				2,363.9		
-5				2,682.4		
B9	①	13,846.3	①	4,720.2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②		②	9,126.1		
소계	-	25,840.3	-	-		
B10	①	6,463.7	-1	1,603.4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2	3,165.9		
			-3	1,694.4		
B11	①	5,635.6	-1	2,848.3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2	2,787.3		
B12	①	5,996.8	-1	2,866.8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2	3,130.0		
기정	B13	①	-1	2,864.4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2	2,857.2		
변경	B13	①	5,721.6	-1	2,857.2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2	2,864.4	
기정	소계	-	23,817.7	-	-	
합계	기정	-	97,535.6	-	-	

- ⑧ 주상복합용지 - RC 【변경 없음】
- ⑨ 특화거리 조성용지(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 S 【변경 없음】
- ⑩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 Rv, CB, T 【변경 없음】
- ⑪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주 【변경 없음】
  - 문화시설 - CU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 복 【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 - 체 【변경 없음】
  - 교육시설(유치원) - 유 【변경 없음】
  - 교육시설(초등학교) - 초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초1	초1	13,682.0	초1	13,682.0	
변경	초1	초1	13,662.7	초1	13,662.7	
기정	초2	초2	14,877.0	초2	14,877.0	
변경	초2	초2	14,871.8	초2	14,871.8	
기정	초3	초3	13,801.4	초3	13,801.4	
기정	초4	초4	14,403.5	초4	14,403.5	
기정	초5	초5	15,576.4	초5	15,576.4	
기정	초6	초6	15,125.2	초6	15,125.2	
기정	초7	초7	12,842.5	초7	12,842.5	
기정	합계	-	100,308.0	-	-	
변경		-	100,283.5	-	-	

- 교육시설(중학교) - 중 【변경 없음】
- 교육시설(고등학교) - 고 【변경 없음】
- 교육시설(외국인학교) - 외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외1	외1	85,622.0	외1	85,622.0	
변경	외1	외1	85,588.0	외1	85,588.0	
기정	합계	-	85,622.0	-	-	
변경		-	85,588.0	-	-	

- 변전소 - 변 【변경 없음】
- 복합환승센터(복합터미널) - MT 【변경 없음】

## ○ 여객자동차차고지 - 차고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차고1	차고1	12,568.0	차고1	12,568.0	
변경	차고1	차고1	12,565.1	차고1	12,565.1	
기정	합계	-	12,568.0	-	-	
변경		-	12,565.1	-	-	

## ○ 종교시설 - 종 【변경 없음】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 폐 【변경 없음】

## ○ 하수종말처리장 - 하 【변경 없음】

## ○ 공공청사용지 - PB 【변경 없음】

## ○ 교육지원시설 - ER 【변경 없음】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주유 【변경 없음】

## ○ 배수지 - 배 【변경 없음】

## ○ 통신시설 - 통신 【변경 없음】

## ○ 오수중계펌프장 - 오 【변경 없음】

## ○ 빗물펌프장 - 빗물 【변경 없음】

## ○ 종합의료시설 - ME 【변경 없음】

## ○ 정압기 - 정 【변경 없음】

## ○ 시장용지 - 시장 【변경 없음】

## ○ 창고시설용지 - 창고 【변경 없음】

## ○ 지하차도 관리사업소 - 도관 【변경 없음】

## ○ 군사시설용지 - 군 【변경 없음】

## ○ 송유시설용지 - 송 【변경 없음】

## ○ 가압장 - 가 【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건축선 ·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건축선 ·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① 단독주택용지 - H, BH 【변경 없음】

- ② 공동주택용지 - A 【변경】 -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 N 【변경 없음】
- ④ 산업(물류)시설용지 - I 【변경 없음】
- ⑤ 상업용지 - CC, GC 【변경 없음】
-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 【변경 없음】
- ⑦ 업무시설용지 - B 【변경 없음】
- ⑧ 주상복합용지 - RC 【변경 없음】
- ⑨ 공공청사용지 - PB 【변경 없음】
- ⑩ 특화거리조성용지 - S 【변경 없음】
- ⑪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붙임 3>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공원시설 등 건축허가 및 신고

○ 제9호 소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00-2,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제9호 소공원	소공원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00-2, 공	912.70	912.7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12.70	912.70	159.00	119.00	-	-	-	-	-	-	5	5	시설면적 감) 40.00㎡
도로 및 광장	소계	107.00	67.00	107.00	67.00	-	-	-	-	-	-	-	시설면적 감) 40.00㎡
	도로	55.00	39.00	55.00	39.00	-	-	-	-	-	-	-	시설면적 감) 16.00㎡
	광장	52.00	28.00	52.00	28.00	-	-	-	-	-	-	-	시설면적 감) 24.00㎡
조경시설	-	-	-	-	-	-	-	-	-	-	1	1	-
휴양시설	52.00	52.00	52.00	52.00	-	-	-	-	-	-	4	4	-
녹지및기타	753.70	793.70	-	-	-	-	-	-	-	-	-	-	녹지면적 증) 40.00㎡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912.70	912.70	159.00	119.00	-	-	-	5	5	시설면적 감) 40.00m <sup>2</sup>
도로 및 광장	소 계			107.00	67.00	107.00	67.00	-	-	-	-	-	시설면적 감) 40.00m <sup>2</sup>
	도로	-	중구 운남동	55.00	39.00	55.00	39.00	-	-	-	-	-	시설면적 감) 16.00m <sup>2</sup>
	광장	-	"	52.00	28.00	52.00	28.00	-	-	-	-	-	시설면적 감) 24.00m <sup>2</sup>
	광장1	-	"	29.00	15.00	29.00	15.00	-	-	-	-	-	시설면적 감) 14.00m <sup>2</sup>
	광장2	-	"	23.00	13.00	23.00	13.00	-	-	-	-	-	시설면적 감) 10.00m <sup>2</sup>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1	1	-
	원형수목 보호틀A	A-1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휴양 시설	소 계			52.00	52.00	52.00	52.00	-	-	-	4	4	-
	쉼터1	-	중구 운남동	26.00	14.00	26.00	14.00	-	-	-	-	-	시설면적 감) 12.00m <sup>2</sup>
	쉼터2	-	"	20.00	13.00	20.00	13.00	-	-	-	-	-	시설면적 감) 7.00m <sup>2</sup>
	쉼터3	-	"	-	20.00	-	20.00	-	-	-	-	-	시설면적 증) 20.00m <sup>2</sup>
	평의자 (기본형)	B-1	"	-	-	-	-	-	-	-	3	3	-
	앉음벽	B-2	"	6.00	5.00	6.00	5.00	-	-	-	1	1	시설면적 감) 1.00m <sup>2</sup>
녹지및 기타	소 계			753.70	793.70	-	-	-	-	-	-	-	녹지면적 증) 40.0m <sup>2</sup>
	녹지	-	전지역	753.70	793.70	-	-	-	-	-	-	-	녹지면적 증) 40.0m <sup>2</sup>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	-	36.5	55.00	-	-	-	도로면적 감) 16.00m <sup>2</sup>
변경					36.5	39.00				
기정	소로	3류	진 1	1.5	8.5	13.00	진입로	남측경계	쉼터3	
변경	소로	3류	진 1	1.5	8.5	11.00	진입로	남측경계	쉼터3	
기정	소로	3류	진 2	1.5	11.0	17.00	진입로	북측경계	쉼터1	
변경	소로	3류	진 2	1.5	11.0	15.00	진입로	북측경계	쉼터1	
기정	소로	3류	연 1	1.5	17.0	25.00	연결로	쉼터3	쉼터1	
변경	소로	3류	연 1	1.5	17.0	13.00	연결로	쉼터3	쉼터1	

####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8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3-1,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해저대탐험공원 (제8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3-1, 공	2,027.50	2,027.5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27.50	2,027.50	988.00	988.00	-	-	-	-	-	-	36	35	공작물 감)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534.00	534.00	534.00	534.00	-	-	-	-	-	-	-	-	-
	도로	-	-	-	-	-	-	-	-	-	-	-	-	-
	광장	534.00	534.00	534.00	534.00	-	-	-	-	-	-	-	-	-
조경시설	-	-	-	-	-	-	-	-	-	-	2	2	-	
휴양시설	45.00	45.00	45.00	45.00	-	-	-	-	-	-	8	8	-	
유희시설	391.00	391.00	391.00	391.00	-	-	-	-	-	-	5	5	-	
운동시설	18.00	18.00	18.00	18.00	-	-	-	-	-	-	3	3	-	
관리시설	-	-	-	-	-	-	-	-	-	-	18	17	공작물 감) 1개소	
녹지및기타	1,039.50	1,039.50	-	-	-	-	-	-	-	-	-	-	-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운남동	2,027.50	2,027.50	988.00	988.00	-	-	-	36	35	공작물 감)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534.00	534.00	534.00	534.00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	-	-	-	-	-	-	-	-	-
	광장	-	"	534.00	534.00	534.00	534.00	-	-	-	-	-	-
	광장1	-	"	90.00	90.00	90.00	90.00	-	-	-	-	-	-
	광장2	-	"	288.00	288.00	288.00	288.00	-	-	-	-	-	-
	광장3	-	"	92.00	92.00	92.00	92.00	-	-	-	-	-	-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2	2	-
	원형 파고라B	A-1	중구 운남동	-	-	-	-	-	-	-	2	2	-
휴양 시설	소 계			45.00	45.00	45.00	45.00	-	-	-	8	8	-
	쉼터1	-	중구 운남동	45.00	45.00	45.00	45.00	-	-	-	-	-	-
	평의자	B-1	"	-	-	-	-	-	-	-	6	6	-
	원형플랜터 (04-08)	B-2	"	-	-	-	-	-	-	-	1	1	-
유희 시설	소 계			391.00	391.00	391.00	391.00	-	-	-	5	5	-
	어린이놀이터	-	중구 운남동	391.00	391.00	391.00	391.00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유희시설	잠수함놀이대	C-1	"	-	-	-	-	-	-	-	1	1	-
	꽃게그네	C-2	"	-	-	-	-	-	-	-	1	1	-
	해마흔들놀이	C-3	"	-	-	-	-	-	-	-	1	1	-
	돌고래흔들놀이	C-4	"	-	-	-	-	-	-	-	1	1	-
	물고기흔들놀이	C-5	"	-	-	-	-	-	-	-	1	1	-
운동시설	소 계			18.00	18.00	18.00	18.00	-	-	-	3	3	-
	운동공간	-	중구 운남동	18.00	18.00	18.00	18.00	-	-	-	-	-	-
	어깨유연성운동	D-1	"	-	-	-	-	-	-	-	1	1	-
	등허리지압기	D-2	"	-	-	-	-	-	-	-	1	1	-
	파도타기	D-3	"	-	-	-	-	-	-	-	1	1	-
관리시설	소 계			-	-	-	-	-	-	-	18	17	공작물 감) 1개소
	볼라드	E-1	"	-	-	-	-	-	-	-	16	16	-
	안전헬스SKY	E-2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공원안내판	E-3	"	-	-	-	-	-	-	-	1	1	-
녹지및 기타	소 계			1,039.50	1,039.50	-	-	-	-	-	-	-	-
	녹지	-	전지역	1,039.50	1,039.50	-	-	-	-	-	-	-	-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3124-1외 1필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은골공원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인천시 중구 운서동 3124-1외 1필지, 공	392,450.40	392,450.4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계	392,450.40	392,450.40	16,487.80	16,520.80	-	1	-	33.00	-	33.00	197	197	시설면적 증) 33.00㎡ 건축물 증) 1동
도로 및 광장	소계	12,772.64	12,772.64	12,772.64	12,772.64	-	-	-	-	-	-	-	-
	도로	10,626.55	10,626.55	10,626.55	10,626.55	-	-	-	-	-	-	-	-
	광장	2,146.09	2,146.09	2,146.09	2,146.09	-	-	-	-	-	-	-	-
조경시설	1,555.91	1,555.91	1,555.91	1,555.91	-	-	-	-	-	-	36	36	-
휴양시설	405.69	405.69	405.69	405.69	-	-	-	-	-	-	142	142	-
운동시설	1,253.56	1,253.56	1,253.56	1,253.56	-	-	-	-	-	-	18	18	-
교양시설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1	1	-
편익시설	-	33.00	-	33.00	-	1	-	33.00	-	33.00	-	-	시설면적 증) 33.0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기타	375,962.6	375,929.6	-	-	-	-	-	-	-	-	-	-	녹지면적 감) 33.00㎡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서동	392,450.40	392,450.40	16,487.80	16,520.80	-	33.00	33.00	197	197	시설면적 증) 33.00㎡ 건축물 증) 1동
도로 및 광장	소 계			12,772.64	12,772.64	12,772.64	12,772.64	-	-	-	-	-	-
	도로	-	중구 운서동	10,626.55	10,626.55	10,626.55	10,626.55	-	-	-	-	-	-
	광장	가	"	2,146.09	2,146.09	2,146.09	2,146.09	-	-	-	-	-	-
	광장1	가-1	"	479.60	479.60	479.60	479.60	-	-	-	-	-	-
	광장2	가-2	"	930.97	930.97	930.97	930.97	-	-	-	-	-	-
	광장3	가-3	"	322.90	322.90	322.90	322.90	-	-	-	-	-	-
	광장4	가-4	"	226.44	226.44	226.44	226.44	-	-	-	-	-	-
	광장5	가-5	"	77.72	77.72	77.72	77.72	-	-	-	-	-	-
광장6	가-6	"	108.46	108.46	108.46	108.46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555.91	1,555.91	1,555.91	1,555.91	-	-	-	36	36	-
	실개천	⑫	중구 운서동	1,555.91	1,555.91	1,555.91	1,555.91	-	-	-	2	2	-
	자연형여울	⑬	"	-	-	-	-	-	-	-	1	1	-
	램프	⑭	"	-	-	-	-	-	-	-	1	1	-
	목교	⑮	"	-	-	-	-	-	-	-	2	2	-
	원형플랜터	-	"	-	-	-	-	-	-	-	1	1	-
	계단	-	"	-	-	-	-	-	-	-	2	2	-
	목재계단	-	"	-	-	-	-	-	-	-	1	1	-
	고사목농기	-	"	-	-	-	-	-	-	-	9	9	-
	불용덩이	-	"	-	-	-	-	-	-	-	3	3	-
	돌무더기	-	"	-	-	-	-	-	-	-	10	10	-
조경석쌓기	-	"	-	-	-	-	-	-	-	1	1	-	
횃대	-	"	-	-	-	-	-	-	-	3	3	-	
휴양 시설	소 계			405.69	405.69	405.69	405.69	-	-	-	142	142	-
	휴게소	나	중구 운서동	405.69	405.69	405.69	405.69	-	-	-	-	-	-
	휴게소1	나-1	"	83.89	83.89	83.89	83.89	-	-	-	-	-	-
	휴게소2	나-2	"	91.50	91.50	91.50	91.50	-	-	-	-	-	-
	휴게소3	나-3	"	68.67	68.67	68.67	68.67	-	-	-	-	-	-
	휴게소4	나-4	"	63.26	63.26	63.26	63.26	-	-	-	-	-	-
	휴게소5	나-5	"	98.37	98.37	98.37	98.37	-	-	-	-	-	-
	파고라	①	"	-	-	-	-	-	-	-	10	10	-
	육각정자	②	"	-	-	-	-	-	-	-	1	1	-
	등의자	③	"	-	-	-	-	-	-	-	20	20	-
평의자	④	"	-	-	-	-	-	-	-	102	102	-	
사각등벤치	⑤	"	-	-	-	-	-	-	-	8	8	-	
앉음벽	⑥	"	-	-	-	-	-	-	-	1	1	-	
운동 시설	소 계			1,253.56	1,253.56	1,253.56	1,253.56	-	-	-	18	18	-
	농구장	다	중구 운서동	713.36	713.36	713.36	713.36	-	-	-	1	1	-
	배드민턴장	라	"	540.20	540.20	540.20	540.20	-	-	-	3	3	-
	농구대	⑦	"	-	-	-	-	-	-	-	2	2	-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	-	12	12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교양 시설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경로당	마	중구 운서동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1	1	-
	자전거보관대	⑨	중구 운서동	-	-	-	-	-	-	-	-	-	-
	공원안내판	⑩	"	-	-	-	-	-	-	-	-	-	-
	웍스	⑪	"	-	-	-	-	-	-	-	1	1	-
편익 시설	소 계			-	33.00	-	33.00	지상 1층	33.00	33.00	-	-	시설면적 증) 33.00㎡ 건축물 증) 1동
	화장실	1	중구 운서동	-	33.00	-	33.00	지상 1층	33.00	33.00	-	-	시설면적 증) 33.0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 기타	소 계			375,962.6	375,929.6	-	-	-	-	-	-	-	녹지면적 감) 33.00㎡
	녹지	-	전지역	375,962.6	375,929.6	-	-	-	-	-	-	-	녹지면적 감) 33.00㎡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3,993.6	10,626.55	-	-	-	
기정	소로	3	1	2.0	332.0	673.32	진입로	도로	소3-2	
기정	소로	3	2	2.0	467.0	961.0	산책로	소3-4	소3-7	
기정	소로	3	3	2.0	94.0	218.09	연결로	소3-4	소3-7	
기정	소로	3	4	2.0	3.9	7.71	진입로	단독주택	소3-3	
기정	소로	3	5	2.0	272.7	553.67	산책로	소3-6	소3-7	
기정	소로	3	6	2.0	12.2	24.48	진입로	광장1	소3-5	
기정	소로	3	7	2.0	102.7	2,012.70	산책로	광장1	소3-8	
기정	소로	3	8	2.0	250.0	500.66	산책로	대로 보2-506	소3-10	
기정	소로	3	9	2.0	124.9	269.42	연결로	소3-14	소3-8	
기정	소로	3	10	3.0	71.1	219.65	진입로	보행자전용도로 소1-99	광장2	
기정	소로	3	11	2.0	26.1	52.19	연결로	광장2	농구장	
기정	소로	3	12	2.0	46.0	109.02	연결로	소3-14	광장2	
기정	소로	3	13	3.0	4.0	11.91	연결로	-	소3-14	
기정	소로	3	14	3.0	312.8	939.10	산책로	광장5	광장6	
기정	소로	3	15	3.0	18.1	54.31	연결로	소3-14	광장2	
기정	소로	3	16	2.0	330.5	668.40	산책로	소3-10	소3-19	
기정	소로	3	17	3.0	16.1	48.36	진입로	-	소3-18	
기정	소로	3	18	3.0	207.7	642.89	산책로	단독주택	광장3	
기정	소로	3	19	2.0	323.3	655.68	산책로	광장3	소3-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20	2.0	33.5	75.35	연결로	소3-19	소3-21	
기정	소로	3	21	2.0	702.7	1,406.40	산책로	휴게소5	단독주택	
기정	소로	3	22	2.0	25.8	53.80	진입로	대로 보2-516	휴게소5	
기정	소로	3	23	2.6	9.5	24.72	진입로	-	광장4	
기정	소로	3	24	2.0	82.5	190.83	산책로	광장4	소3-21	
기정	소로	3	25	2.0	124.5	252.89	산책로	-	소3-21	

####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 제1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11-4외 1필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박석공원 (제17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11-4외 1필지, 공	351,889.50	351,889.50	

####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51,889.50	351,889.50	26,202.14	27,721.79	1	3	2,200.61	2,266.61	5,143.40	5,209.40	448	476	시설면적 증) 1,519.65㎡ 건축물 증) 2동 공작물 증) 28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7,115.63	17,099.51	17,115.63	17,099.51	-	-	-	-	-	-	-	-	시설면적 감) 16.12㎡
	도로	12,751.52	12,793.57	12,751.52	12,793.57	-	-	-	-	-	-	-	-	시설면적 증) 42.05㎡
	광장	4,364.11	4,305.94	4,364.11	4,305.94	-	-	-	-	-	-	-	-	시설면적 감) 58.17㎡
조경시설	336.83	923.33	336.83	923.33	-	-	-	-	-	-	221	227	시설면적 증) 586.50㎡ 공작물 증) 6개소	
휴양시설	-	-	-	-	-	-	-	-	-	-	169	187	공작물 증) 18개소	
유흥시설	397.73	1,281.00	397.73	1,281.00	-	-	-	-	-	-	4	8	시설면적 증) 883.27㎡ 공작물 증) 4개소	
운동시설	3,284.00	3,284.00	3,284.00	3,284.00	-	-	-	-	-	-	-	-	-	
교양시설	4,700.61	4,700.61	4,700.61	4,700.61	1	1	2,200.61	2,200.61	5,143.40	5,143.40	-	-	-	
관리시설	367.34	367.34	367.34	367.34	-	-	-	-	-	-	54	54	-	
편익시설	-	66.00	-	66.00	-	2	-	66.00	-	66.00	-	-	-	시설면적 증) 66.00㎡ 건축물 증) 2동
녹지및기타	325,687.36	324,167.71	-	-	-	-	-	-	-	-	-	-	-	녹지면적 감) 1,519.65㎡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중산동	351,889.50	351,889.50	26,202.14	27,721.79	지상 1층 ~ 2층	2,266.61	5,209.40	448	476	시설면적 증) 1,519.65㎡ 건축물 증) 2등 공작물 증) 28개소
도로 빛 광장	소 계			17,115.63	17,099.51	17,115.63	17,099.51	-	-	-	-	-	시설면적 감) 16.12㎡
	도로	-	중구 중산동	12,751.52	12,793.57	12,751.52	12,793.57	-	-	-	-	-	시설면적 증) 42.05㎡
	광장	-	"	4,364.11	4,305.94	4,364.11	4,305.94	-	-	-	-	-	시설면적 감) 58.17㎡
	광장1	-	"	757.85	711.97	757.85	711.97	-	-	-	-	-	시설면적 감) 45.88㎡
	광장2	-	"	573.69	561.40	573.69	561.40	-	-	-	-	-	시설면적 감) 12.29㎡
	광장3	-	"	162.47	162.47	162.47	162.47	-	-	-	-	-	-
	광장4	-	"	129.32	129.32	129.32	129.32	-	-	-	-	-	-
	광장5	-	"	56.74	56.74	56.74	56.74	-	-	-	-	-	-
	광장6	-	"	132.00	132.00	132.00	132.00	-	-	-	-	-	-
	광장7	-	"	120.99	120.99	120.99	120.99	-	-	-	-	-	-
	광장8	-	"	56.00	56.00	56.00	56.00	-	-	-	-	-	-
	광장9	-	"	81.03	81.03	81.03	81.03	-	-	-	-	-	-
	광장10	-	"	570.76	570.76	570.76	570.76	-	-	-	-	-	-
	광장11	-	"	100.00	100.00	100.00	100.00	-	-	-	-	-	-
	광장12	-	"	126.75	126.75	126.75	126.75	-	-	-	-	-	-
	광장13	-	"	227.99	227.99	227.99	227.99	-	-	-	-	-	-
	광장14	-	"	153.94	153.94	153.94	153.94	-	-	-	-	-	-
	광장15	-	"	84.00	84.00	84.00	84.00	-	-	-	-	-	-
	광장16	-	"	78.54	78.54	78.54	78.54	-	-	-	-	-	-
	광장17	-	"	48.00	48.00	48.00	48.00	-	-	-	-	-	-
	광장18	-	"	73.33	73.33	73.33	73.33	-	-	-	-	-	-
	광장19	-	"	253.99	253.99	253.99	253.99	-	-	-	-	-	-
	광장20	-	"	165.22	165.22	165.22	165.22	-	-	-	-	-	-
	광장21	-	"	202.37	202.37	202.37	202.37	-	-	-	-	-	-
	광장22	-	"	9.93	9.93	9.93	9.93	-	-	-	-	-	-
광장23	-	"	134.66	134.66	134.66	134.66	-	-	-	-	-	-	
광장24	-	"	38.64	38.64	38.64	38.64	-	-	-	-	-	-	
광장25	-	"	25.90	25.90	25.90	25.90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조경 시설	소 계			336.83	923.33	336.83	923.33	-	-	-	221	227	시설면적 증) 586.50㎡ 공작물 증) 6개소
	파고라	-	중구 중산동	-	-	-	-	-	-	-	-	-	-
	육각정자	-	"	-	-	-	-	-	-	-	-	-	-
	발원분수	A	"	18.49	18.49	18.49	18.49	-	-	-	-	-	-
	실개천	B	"	228.34	228.34	228.34	228.34	-	-	-	-	-	-
	석교	C	"	-	-	-	-	-	-	-	2	2	-
	돌담	D	"	-	-	-	-	-	-	-	1	1	-
	돌담쌓기	E	"	-	-	-	-	-	-	-	3	3	-
	고사목농기	F	"	-	-	-	-	-	-	-	3	3	-
	물웅덩이	G	"	-	-	-	-	-	-	-	1	1	-
	원주목흙막이	H	"	-	-	-	-	-	-	-	1	1	-
	자연석쌓기	I	"	-	-	-	-	-	-	-	1	1	-
	계단	J	"	-	-	-	-	-	-	-	1	1	-
	현장발생석 농기	K	"	-	-	-	-	-	-	-	175	175	-
	석등	L	"	-	-	-	-	-	-	-	16	16	-
	목재테크	M-1	"	90.00	90.00	90.00	90.00	-	-	-	-	-	-
	휴게테크	M-2	"	-	-	-	-	-	-	-	1	1	-
	전망테크	M-3	"	-	-	-	-	-	-	-	1	1	-
	보행테크	M-4	"	-	-	-	-	-	-	-	3	3	-
	테크계단	M-5	"	-	-	-	-	-	-	-	2	2	-
	목재계단	M-6	"	-	-	-	-	-	-	-	1	1	-
목재랩프	M-7	"	-	-	-	-	-	-	-	2	2	-	
조명열주	M-8	"	-	-	-	-	-	-	-	6	6	-	
편책	N	"	-	-	-	-	-	-	-	1	1	-	
캐스캐이드	N-2	"	-	194.85	-	194.85	-	-	-	-	-	시설면적 증) 194.85㎡	
조망테크	N-3	"	-	46.33	-	46.33	-	-	-	-	-	시설면적 증) 46.33㎡	
숲속도서관	N-4	"	-	345.32	-	345.32	-	-	-	-	-	시설면적 증) 345.32㎡	
독서테크	N-5	"	-	-	-	-	-	-	-	-	4	공작물 증) 4개소	
무대테크	N-6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목재계단	N-7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소 계			-	-	-	-	-	-	-	169	187	공작물 증) 18개소	
휴양 시설	파고라J	O-1	중구 중산동	-	-	-	-	-	-	-	12	12	-
	파고라I	O-2	"	-	-	-	-	-	-	-	2	2	-
	원형그늘막	O-3	"	-	-	-	-	-	-	-	2	2	-
	그늘막	O-4	"	-	-	-	-	-	-	-	4	4	-
	원형파고라A	P	"	-	-	-	-	-	-	-	2	2	-
	팔각정자	Q-1	"	-	-	-	-	-	-	-	1	1	-
	사각정자	Q-2	"	-	-	-	-	-	-	-	1	1	-
	플랜터	R	"	-	-	-	-	-	-	-	1	1	-
앉음벽	S	"	-	-	-	-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휴양 시설	등의자G	T-1	"	-	-	-	-	-	-	-	60	60	-
	평의자G	T-2	"	-	-	-	-	-	-	-	76	76	-
	평의자	T-3	"	-	-	-	-	-	-	-	8	8	-
	평의자A	T-4	"	-	-	-	-	-	-	-	-	4	공작물 증) 4개소
	평의자B	T-5	"	-	-	-	-	-	-	-	-	4	공작물 증) 4개소
	서고쉼터	T-6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원형파고라B	T-7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야외테이블	T-8	"	-	-	-	-	-	-	-	-	5	공작물 증) 5개소
	독서벤치A	T-9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독서벤치B	T-10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휴게소 1	-	"	-	-	-	-	-	-	-	-	-	-
	휴게소 2	-	"	-	-	-	-	-	-	-	-	-	-
평의자	-	"	-	-	-	-	-	-	-	-	-	-	
유희 시설	소 계			397.73	1,281.00	397.73	1,281.00	-	-	-	4	8	시설면적 증) 883.27㎡ 공작물 증) 4개소
	어린이놀이터	U	중구 중산동	397.73	397.73	397.73	397.73	-	-	-	-	-	-
	조합놀이대	U-1	"	-	-	-	-	-	-	-	1	1	-
	그네	U-2	"	-	-	-	-	-	-	-	1	1	-
	흔들놀이	U-3	"	-	-	-	-	-	-	-	2	2	-
	물놀이장	U-4	"	-	883.27	-	883.27	-	-	-	-	-	시설면적 증) 883.27㎡
	물놀이조합 놀이대	U-5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만원터널분수	U-6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우산조형분수	U-7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운동 시설	소 계			3,284.00	3,284.00	3,284.00	3,284.00	-	-	-	-	-	-
	운동공간1	-	중구 중산동	-	-	-	-	-	-	-	-	-	-
	운동공간2	-	"	-	-	-	-	-	-	-	-	-	-
	운동공간3	-	"	-	-	-	-	-	-	-	-	-	-
	운동공간4	-	"	-	-	-	-	-	-	-	-	-	-
	운동시설 1	-	"	-	-	-	-	-	-	-	-	-	-
	운동시설 2	-	"	-	-	-	-	-	-	-	-	-	-
	운동시설 3	-	"	-	-	-	-	-	-	-	-	-	-
	운동시설 4	-	"	-	-	-	-	-	-	-	-	-	-
	운동시설 5	-	"	-	-	-	-	-	-	-	-	-	-
	운동시설 6	-	"	-	-	-	-	-	-	-	-	-	-
	운동시설 7	-	"	-	-	-	-	-	-	-	-	-	-
	체력단련장-1	V-1	"	84.00	84.00	84.00	84.00	-	-	-	-	-	-
체력단련장-2	V-2	"	134.00	134.00	134.00	134.00	-	-	-	-	-	-	
체력단련장-3	V-3	"	88.00	88.00	88.00	88.00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W	"	748.00	748.00	748.00	748.00	-	-	-	-	-	-
	배드민턴장	X-1	"	1862.00	1862.00	1862.00	1862.00	-	-	-	-	-	-
	농구장	X-2	"	368.00	368.00	368.00	368.00	-	-	-	-	-	-
교양시설	소 계			4,700.61	4,700.61	4,700.61	4,700.61	지상 2층	2,200.61	5,143.40	-	-	-
	도서관	Y-1	"	2,200.61	2,200.61	2,200.61	2,200.61	지상 2층	2,200.61	5,143.40	-	-	-
	사회복지시설	Y-2	"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	-	-	-	-
	경로당	Y-3	"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관리시설	소 계			367.34	367.34	367.34	367.34	-	-	-	54	54	-
	수목보호호흡틀개	-	중구 중산동	-	-	-	-	-	-	-	-	-	-
	휴지통	-	"	-	-	-	-	-	-	-	-	-	-
	주차장	Y-4	"	367.34	367.34	367.34	367.34	-	-	-	-	-	-
	사각수목보호석	Z-1	"	-	-	-	-	-	-	-	10	10	-
	로프난간	Z-2	"	-	-	-	-	-	-	-	1	1	-
	공원안내관	Z-3	"	-	-	-	-	-	-	-	2	2	-
	시설이용안내관	Z-4	"	-	-	-	-	-	-	-	3	3	-
	방향안내관	Z-5	"	-	-	-	-	-	-	-	5	5	-
원주목계단	Z-6	"	-	-	-	-	-	-	-	1	1	-	
카스트퍼	Z-7	"	-	-	-	-	-	-	-	32	32	-	
편익시설	소 계			-	66.00	-	66.00	지상 1층	66.00	66.00	-	-	시설면적(증) 66.00㎡ 건축물(증) 2동
	화장실1	1	중구 중산동	-	33.00	-	33.00	지상 1층	33.00	33.00	-	-	시설면적(증) 33.00㎡ 건축물(증) 1동
	화장실2	2	"	-	33.00	-	33.00	지상 1층	33.00	33.00	-	-	시설면적(증) 33.00㎡ 건축물(증) 1동
녹지 및 기타	소 계			325,687.36	324,167.71	-	-	-	-	-	-	-	녹지면적(감) 1,519.65㎡
	녹지	-	전지역	325,687.36	324,167.71	-	-	-	-	-	-	-	녹지면적(감) 1,519.65㎡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	5,740.59	12,751.52	-	-	-	도로연장(증) 14.00m 도로면적(증) 42.05㎡
변경					5,754.59	12,793.57				
기정	소로	3	진 1	6.3	12.0	75.59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7	
기정	소로	3	진 2	2.0	80.0	159.98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8	
기정	소로	3	진 3	2.0	73.9	147.82	진입로	사회복지시설	산21	
기정	소로	3	진 4	2.0	15.2	30.33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14	
기정	소로	3	진 5	2.0	10.4	20.86	진입로	남측경계	연20	
기정	소로	3	진 6	2.0	10.5	20.97	진입로	남측경계	진7	
기정	소로	3	진 7	5.0	56.7	283.37	진입로	동측경계	진8	
기정	소로	3	진 8	2.0	60.7	121.46	진입로	동측경계	연19	
기정	소로	3	진 9	2.2	30.3	66.63	진입로	주차장	광장19	
기정	소로	3	진 10	3.0	37.5	112.55	진입로	광장21	광장19	
기정	소로	3	연 1	6.0	19.3	116.03	연결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	연 2	2.0	123.1	246.24	연결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	연 3	2.0	24.4	48.83	연결로	산8	배드민턴장	
기정	소로	3	연 4	3.0	14.1	42.37	연결로	산8	배드민턴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연 5	2.0	134.6	269.11	연결로	연6	산11	
기정	소로	3	연 6	3.0	48.0	144.03	연결로	연5	연11	
기정	소로	3	연 7	2.0	13.7	27.37	연결로	산17	연11	
기정	소로	3	연 8	2.0	12.4	24.86	연결로	산17	연11	
기정	소로	3	연 9	3.0	49.6	148.82	연결로	연10	연11	
기정	소로	3	연 10	3.0	24.0	72.02	연결로	산16	연11	
기정	소로	3	연 11	2.0	85.8	171.63	연결로	산15	연6	
기정	소로	3	연 12	5.0	9.0	45.17	연결로	광장10	광장10	
기정	소로	3	연 13	2.0	30.0	60.05	연결로	연16	산19	
기정	소로	3	연 14	2.0	27.3	54.68	연결로	연16	산19	
기정	소로	3	연 15	2.0	22.0	44.00	연결로	연16	산19	
기정	소로	3	연 16	3.0	58.09	176.65	연결로	산20	산21	
기정	소로	3	연 17	1.5	30.3	45.43	연결로	진7	광장16	
기정	소로	3	연 18	2.0	6.0	12.02	연결로	연19	배드민턴장	
기정	소로	3	연 19	3.0	89.3	268.00	연결로	진7	산23	
기정	소로	3	연 20	2.0	86.9	173.86	연결로	진7	연19	
기정	소로	3	연 21	2.0	25.8	51.67	연결로	연19	연20	
기정	소로	3	연 22	1.5	38.0	56.95	연결로	광장16	연19	
기정	소로	3	연 23	5.0	1.7	8.51	연결로	진8	광장16	
기정	소로	3	연 24	1.0	6.0	6.00	연결로	진8	체력단련장	
기정	소로	3	연 25	1.0	6.0	6.00	연결로	진8	체력단련장	
기정	소로	3	연 26	2.0	31.7	63.34	연결로	진10	진9	
기정	소로	3	연 27	1.5	25.9	38.86	연결로	광장19	산17	
기정	소로	3	연 28	2.2	6.5	14.27	연결로	진10	광장20	
신설	소로	3	연 29	3.0	14.0	42.05	연결로	연2	연2	
기정	소로	3	산 1	3.0	55.8	167.44	산책로	광장2	농구장	
기정	소로	3	산 2	2.0	27.3	54.68	산책로	광장2	산3	
기정	소로	3	산 3	2.0	46.0	92.05	산책로	산5	농구장	
기정	소로	3	산 4	2.0	38.7	77.37	산책로	산5	산3	
기정	소로	3	산 5	2.0	111.2	222.39	산책로	산9	배드민턴장	
기정	소로	3	산 6	2.0	14.6	29.21	산책로	산8	산5	
기정	소로	3	산 7	2.0	27.6	55.28	산책로	산8	산5	
기정	소로	3	산 8	3.0	169.0	507.11	산책로	북측경계	산9	
기정	소로	3	산 9	2.0	685.2	1,370.41	산책로	광장2	산19	
기정	소로	3	산 10	2.0	269.5	539.07	산책로	산9	산9	
기정	소로	3	산 11	2.0	12.0	24.0	산책로	산9	전망테크	
기정	소로	3	산 12	3.0	203.6	610.80	산책로	광장7	연5	
기정	소로	3	산 13	2.0	21.1	42.20	산책로	산12	산15	
기정	소로	3	산 14	2.0	11.3	22.56	산책로	산12	산15	
기정	소로	3	산 15	2.0	315.1	630.12	산책로	광장7	연11	
기정	소로	3	산 16	3.0	53.9	161.68	산책로	산17	연10	
기정	소로	3	산 17	3.0	184.7	554.11	산책로	광장7	연5	
기정	소로	3	산 18	2.0	228.5	457.05	산책로	테크계단	산19	
기정	소로	3	산 19	2.0	343.1	686.17	산책로	광장10	산21	
기정	소로	3	산 20	2.0	54.2	108.47	산책로	산23	연16	
기정	소로	3	산 21	2.0	28.9	57.82	산책로	진3	산23	
기정	소로	3	산 22	2.0	327.2	654.49	산책로	산23	산23	
기정	소로	3	산 23	2.0	814.3	1,628.57	산책로	경로당	연19	
기정	소로	3	산 24	2.0	261.1	522.14	산책로	북측경계	산23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04-3,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붉은밭공원 (제8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04-3, 공	26,614.70	26,614.7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계	26,614.70	26,614.70	9,830.36	9,902.36	-	1	-	48.00	-	48.00	64	65	시설면적 증) 72.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5,625.56	5,625.56	5,625.56	5,625.56	-	-	-	-	-	-	-	-	-
	도로	4,230.83	4,230.83	4,230.83	4,230.83	-	-	-	-	-	-	-	-	-
	광장	1,394.73	1,394.73	1,394.73	1,394.73	-	-	-	-	-	-	-	-	-
조경시설	1,692.02	1,692.02	1,692.02	1,692.02	-	-	-	-	-	-	13	13	-	
휴양시설	-	-	-	-	-	-	-	-	-	-	40	40	-	
유흥시설	-	1,788.00	-	1,788.00	-	-	-	-	-	-	-	-	시설면적 증) 1,788.00㎡	
운동시설	2,512.78	724.78	2,512.78	724.78	-	-	-	-	-	-	11	11	시설면적 감) 1,788.00㎡	
관리시설	-	72.00	-	72.00	-	1	-	48.00	-	48.00	-	1	시설면적 증) 72.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기타	16,784.34	16,712.34	-	-	-	-	-	-	-	-	-	-	녹지면적 감) 72.00㎡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26,614.70	26,614.70	9,830.36	9,902.36	지상 1층	48.00	48.00	64	65	시설면적 증) 72.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5,625.56	5,625.56	5,625.56	5,625.56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4,230.83	4,230.83	4,230.83	4,230.83	-	-	-	-	-	-
	광장	-	"	1,394.73	1,394.73	1,394.73	1,394.73	-	-	-	-	-	-
	광장1	-	"	88.02	88.02	88.02	88.02	-	-	-	-	-	-
	광장2	-	"	364.41	364.41	364.41	364.41	-	-	-	-	-	-
	광장3	-	"	72.78	72.78	72.78	72.78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광장4	-	"	317.09	317.09	317.09	317.09	-	-	-	-	-	-
	광장5	-	"	41.76	41.76	41.76	41.76	-	-	-	-	-	-
	광장6	-	"	391.92	391.92	391.92	391.92	-	-	-	-	-	-
	광장7	-	"	118.75	118.75	118.75	118.75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692.02	1,692.02	1,692.02	1,692.02	-	-	-	13	13	-
	실개천	A	중구 운남동	1,692.02	1,692.02	1,692.02	1,692.02	-	-	-	-	-	-
	보행목교G	C	"	-	-	-	-	-	-	-	3	3	-
	보행목교H	S	"	-	-	-	-	-	-	-	1	1	-
	사각과고라A	B	"	-	-	-	-	-	-	-	6	6	-
	자전거보관대	D	"	-	-	-	-	-	-	-	3	3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40	40	-
	평의자B	E	중구 운남동	-	-	-	-	-	-	-	12	12	-
	등의자B	G	"	-	-	-	-	-	-	-	27	27	-
	육각정자	F	"	-	-	-	-	-	-	-	1	1	-
유희 시설	소 계			-	1,788.00	-	1,788.00	-	-	-	-	-	시설면적 증) 1,788.00㎡
	자전거놀이터	U	중구 운남동	-	1,788.00	-	1,788.00	-	-	-	-	-	시설구분변경 (운동시설→유희시설)
운동 시설	소 계			2,512.78	724.78	2,512.78	724.78	-	-	-	11	11	시설면적 감) 1,788.00㎡
	자전거놀이터	U	중구 운남동	1,788.00	-	1,788.00	-	-	-	-	-	-	시설구분변경 (운동시설→유희시설)
	체력단련장	H	"	724.78	724.78	724.78	724.78	-	-	-	-	-	-
	농구대	I	"	-	-	-	-	-	-	-	1	1	-
	자가발전운동놀이	J	"	-	-	-	-	-	-	-	2	2	-
	공중걸기	K	"	-	-	-	-	-	-	-	1	1	-
	달리기운동	L	"	-	-	-	-	-	-	-	1	1	-
	등허리지압기	M	"	-	-	-	-	-	-	-	1	1	-
	어깨유연성	N	"	-	-	-	-	-	-	-	1	1	-
	역기내리기	O	"	-	-	-	-	-	-	-	1	1	-
	오금펴기	P	"	-	-	-	-	-	-	-	1	1	-
과도타기	Q	"	-	-	-	-	-	-	-	1	1	-	
허리돌리기	R	"	-	-	-	-	-	-	-	1	1	-	
관리 시설	소 계			-	72.00	-	72.00	지상 1층	48.00	48.00	-	1	시설면적 증) 72.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	중구 운남동	-	72.00	-	72.00	지상 1층	48.00	48.00	-	-	시설면적 증) 72.00㎡ 건축물 증) 1동
	공원명칭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16,784.34	16,712.34	-	-	-	-	-	-	-	녹지면적 감) 72.00㎡
	녹지	-	전지역	16,784.34	16,712.34	-	-	-	-	-	-	-	녹지면적 감) 72.00㎡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1,755.2	4,230.83	-	-	-	
기정	소로	3	진1	3.0	11.8	35.71	진입로	광장1	산1	
기정	소로	3	진2	3.0	37.0	110.92	진입로	광장3	산1	
기정	소로	3	진3	3.0	32.1	104.93	진입로	광장7	산1	
기정	소로	3	연1	2.0	31.8	63.57	연결로	산2	산2	
기정	소로	3	연2	2.0	39.5	78.92	연결로	산2	산2	
기정	소로	3	연3	2.0	48.4	96.87	연결로	산2	산2	
기정	소로	3	연4	2.4	147.1	340.13	연결로	광장4	광장5	
기정	소로	3	연5	2.0	6.1	12.15	연결로	산1	체력단련장	
기정	소로	3	산1	2.0	812.8	1,622.53	산책로	광장2	광장2	
기정	소로	3	산2	3.0	385.1	1,155.40	산책로	순환로	순환로	
기정	소로	3	산3	2.0	24.0	49.56	산책로	보행자도로	산1	
기정	소로	3	산4	2.0	90.9	207.58	산책로	보행자도로	산1	
기정	소로	3	산5	3.0	10.9	51.24	산책로	진2	산1	
기정	소로	3	산6	3.0	77.7	301.32	산책로	진2	산1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10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97-4,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비고
-	염전공원 (제10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97-4, 공	13,459.30	13,459.3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459.30	13,459.30	4,401.54	4,401.54	-	-	-	-	-	-	36	37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3,985.54	3,985.54	3,985.54	-	-	-	-	-	-	-	-	-	-
	도로	2,911.47	2,911.47	2,911.47	-	-	-	-	-	-	-	-	-	-
	광장	1,074.07	1,074.07	1,074.07	1,074.07	-	-	-	-	-	-	-	-	-
조경시설	416.00	416.00	416.00	416.00	-	-	-	-	-	-	4	4	-	
휴양시설	-	-	-	-	-	-	-	-	-	-	30	30	-	
관리시설	-	-	-	-	-	-	-	-	-	-	2	3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기타	9,057.76	9,057.76	-	-	-	-	-	-	-	-	-	-	-	-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13,459.30	13,459.30	4,401.54	4,401.54	-	-	-	36	37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3,985.54	3,985.54	3,985.54	3,985.54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2,911.47	2,911.47	2,911.47	2,911.47	-	-	-	-	-	-
	광장	-	"	1,074.07	1,074.07	1,074.07	1,074.07	-	-	-	-	-	-
	광장1	-	"	620.23	620.23	620.23	620.23	-	-	-	-	-	-
	광장2	-	"	312.05	312.05	312.05	312.05	-	-	-	-	-	-
	광장3	-	"	141.79	141.79	141.79	141.79	-	-	-	-	-	-
조경 시설	소 계			416.00	416.00	416.00	416.00	-	-	-	4	4	-
	목재테크	-	중구 운남동	-	-	-	-	-	-	-	-	-	-
	수경시설	A	"	416.00	416.00	416.00	416.00	-	-	-	2	2	-
	소원담장	E	"	-	-	-	-	-	-	-	2	2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30	30	-
	파고라K	B	중구 운남동	-	-	-	-	-	-	-	3	3	-
	등의자E	C	"	-	-	-	-	-	-	-	12	12	-
	평의자E	D	"	-	-	-	-	-	-	-	14	14	-
	원형플랜터	H	"	-	-	-	-	-	-	-	1	1	-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2	3	공작물 (증) 1개소
	자전거보관대C	F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공원안내판	G	"	-	-	-	-	-	-	-	1	1	-
	수경시설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9,057.76	9,057.76	-	-	-	-	-	-	-	-
	녹지	-	전지역	9,057.76	9,057.76	-	-	-	-	-	-	-	-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	-	733.49	2,911.47	-	-	-	
기정	소로	3	진 1	6.0	47.98	288.88	진입로	광장2	산3	
기정	소로	3	진 2	3.0	55.49	166.47	진입로	남측경계	산3	
기정	소로	3	진 3	3.0	50.27	150.81	진입로	광장2	산2	
기정	소로	3	진 4	3.0	51.96	155.88	진입로	북측경계	산3	
기정	소로	3	진 5	3.0	41.54	124.62	진입로	북측경계	산3	
기정	소로	3	진 6	6.0	36.25	217.50	진입로	북측경계	산3	
기정	소로	3	진 7	3.0	33.32	99.96	진입로	북측경계	산3	
기정	소로	3	진 8	3.0	32.58	97.74	진입로	북측경계	산2	
기정	소로	3	연 1	6.0	4.19	25.14	연결로	산3	광장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연 2	3.0	8.61	25.83	연결로	산1	산2	
기정	소로	3	연 3	2.0	4.20	8.40	연결로	산2	산1	
기정	소로	3	연 4	2.0	4.60	9.20	연결로	산3	광장1	
기정	소로	3	연 5	6.0	18.64	111.84	연결로	산3	광장1	
기정	소로	3	연 6	3.0	7.63	22.89	연결로	진8	산1	
기정	소로	3	산 1	3.0	137.42	412.26	산책로	진3	북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2	5.0	93.71	468.55	산책로	산3	산3	
기정	소로	3	산 3	3.0	105.10	525.50	산책로	산2	산2	

####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 제1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54-3,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m <sup>2</sup> )	변경(m <sup>2</sup> )	비고
-	말우물공원 (제1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54-3, 공	97,629.00	97,629.00	

####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계	97,629.00	97,629.00	20,311.70	20,081.63	-	1	-	48.00	-	48.00	83	100	시설면적 감) 230.07m <sup>2</sup>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7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3,798.30	13,496.23	13,798.30	13,496.23	-	-	-	-	-	-	-	시설면적 감) 302.07m <sup>2</sup>
	도로	7,414.27	7,127.85	7,414.27	7,127.85	-	-	-	-	-	-	-	시설면적 감) 286.42m <sup>2</sup>
	광장	6,384.03	6,368.38	6,384.03	6,368.38	-	-	-	-	-	-	-	시설면적 감) 15.65m <sup>2</sup>
조경시설	407.04	407.04	407.04	407.04	-	-	-	-	-	-	3	3	-
휴양시설	33.00	33.00	33.00	33.00	-	-	-	-	-	-	74	75	공작물 증) 1개소
운동시설	1,073.36	1,073.36	1,073.36	1,073.36	-	-	-	-	-	-	-	13	공작물 증) 13개소
교양시설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	-	-	-	-	-	-	-
관리시설	-	72.00	-	72.00	-	1	-	48.00	-	48.00	6	9	시설면적 증) 72.00m <sup>2</sup>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3개소
녹지및기타	77,317.30	77,547.37	-	-	-	-	-	-	-	-	-	-	녹지면적 증) 230.07m <sup>2</sup>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계	-	-	중구 운남동	97,629.00	97,629.00	20,311.70	20,081.63	지상 1층	48.00	48.00	83	100	시설면적 감) 230.07㎡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7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3,798.30	13,496.23	13,798.30	13,496.23	-	-	-	-	-	시설면적 감) 302.07㎡
	도로	-	중구 운남동	7,414.27	7,127.85	7,414.27	7,127.85	-	-	-	-	-	시설면적 감) 286.42㎡
	광장	-	"	6,384.03	6,368.38	6,384.03	6,368.38	-	-	-	-	-	시설면적 감) 15.65㎡
	광장1	-	"	456.01	456.01	456.01	456.01	-	-	-	-	-	-
	광장2	-	"	188.65	188.65	188.65	188.65	-	-	-	-	-	-
	광장3	-	"	43.20	70.58	43.20	70.58	-	-	-	-	-	시설면적 증) 27.38㎡
	광장4	-	"	433.06	433.06	433.06	433.06	-	-	-	-	-	-
	광장5	-	"	96.71	96.71	96.71	96.71	-	-	-	-	-	-
	광장6	-	"	311.33	311.33	311.33	311.33	-	-	-	-	-	-
	광장7	-	"	168.00	168.00	168.00	168.00	-	-	-	-	-	-
	광장8	-	"	62.96	62.96	62.96	62.96	-	-	-	-	-	-
도로 및 광장	광장9	-	"	3,270.48	3,270.48	3,270.48	3,270.48	-	-	-	-	-	-
	광장10	-	"	427.85	427.85	427.85	427.85	-	-	-	-	-	-
	광장11	-	"	323.45	323.45	323.45	323.45	-	-	-	-	-	-
	광장12	-	"	308.07	517.30	308.07	517.30	-	-	-	-	-	시설면적 증) 209.23㎡
조경 시설	광장13	-	"	116.50	42.00	116.50	42.00	-	-	-	-	-	시설면적 감) 74.50㎡
	광장14	-	"	177.76	-	177.76	-	-	-	-	-	-	시설면적 감) 177.76㎡
	소계			407.04	407.04	407.04	407.04	-	-	-	3	3	-
	벽천	C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휴양 시설	장식가벽	D	"	38.40	38.40	38.40	38.40	-	-	-	1	1	-
	목재데크	E	"	368.64	368.64	368.64	368.64	-	-	-	-	-	-
	계단	O	"	-	-	-	-	-	-	-	1	1	-
	소계			33.00	33.00	33.00	33.00	-	-	-	74	75	공작물 증) 1개소
	원두막	A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통돌의자	B	"	33.00	33.00	33.00	33.00	-	-	-	1	1	-
	파고라E-1	F	"	-	-	-	-	-	-	-	4	4	-
	파고라F	G	"	-	-	-	-	-	-	-	5	5	-
휴양 시설	등의자E	H	"	-	-	-	-	-	-	-	30	30	-
	평의자E	I	"	-	-	-	-	-	-	-	32	32	-
	앉음벽	Q	"	-	-	-	-	-	-	-	1	1	-
	원형플랜터	B'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운동 시설	소 계			1,073.36	1,073.36	1,073.36	1,073.36	-	-	-	-	13	공작물 증) 13개소
	농구장	M	중구 운남동	713.36	713.36	713.36	713.36	-	-	-	-	-	-
	배드민턴장	N	"	360.00	360.00	360.00	360.00	-	-	-	-	-	-
	어깨유연성	S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등허리지압기	T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공중걸기	U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달리기	V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허리틀리기	W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역기내리기	X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오금패기운동	Y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파도타기	Z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교양 시설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	-	-	-	-
	도서관	P	중구 운남동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	-	-	-	-
관리 시설	소 계			-	72.00	-	72.00	지상 1층	48.00	48.00	6	9	시설면적 증) 72.00m <sup>2</sup>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3개소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	중구 운남동	-	72.00	-	72.00	지상 1층	48.00	48.00	-	-	시설면적 증) 72.00m <sup>2</sup> 건축물 증) 1동
	공원안내판	J	"	-	-	-	-	-	-	-	2	2	-
	시설이용안내판	K	"	-	-	-	-	-	-	-	1	1	-
	방향안내판	L	"	-	-	-	-	-	-	-	3	3	-
	위험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공원명칭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수경시설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77,317.30	77,547.37	-	-	-	-	-	-	-	녹지면적 증) 230.07m <sup>2</sup>
	녹지	-	전지역	77,317.30	77,547.37	-	-	-	-	-	-	-	녹지면적 증) 230.07m <sup>2</sup>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2,520.51	7,414.27	-	-	-	도로연장 감) 143.3m 도로면적 감) 286.42m <sup>2</sup>
변경					2,377.21	7,127.85				
기정	소로	3	진 1	5.0	212.17	1,060.85	진입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	진 2	4.0	64.85	259.40	진입로	동측경계	진3	
기정	소로	3	진 3	4.0	88.75	355.00	진입로	동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진 4	5.5	40.2	221.10	진입로	광장3	농구장	
기정	소로	3	진 5	4.0	74.95	299.80	진입로	서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연 1	2.0	17.24	34.48	연결로	동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연 2	2.0	26.3	52.60	연결로	동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연 3	2.0	34.55	69.10	연결로	진2	진1	
기정	소로	3	연 4	2.0	26.74	53.48	연결로	진2	진1	
기정	소로	3	연 5	9.5	14.1	134.00	연결로	진2	산1	
기정	소로	3	연 6	4.0	33.24	132.96	연결로	진1	연7	
기정	소로	3	연 7	4.0	86.48	345.92	연결로	광장4	진1	
기정	소로	3	연 8	2.0	2.0	4.00	연결로	연7	농구장	
기정	소로	3	연 9	2.0	2.0	4.00	연결로	연7	농구장	
기정	소로	3	연 10	2.0	2.0	4.00	연결로	연7	베드민턴장	
기정	소로	3	연 11	2.0	2.0	4.00	연결로	연7	베드민턴장	
기정	소로	3	연 12	2.0	2.0	4.00	연결로	광장5	베드민턴장	
기정	소로	3	연 13	6.0	65.1	390.60	연결로	진1	연14	
기정	소로	3	연 14	6.6	57.8	381.48	연결로	진5	도서실	
기정	소로	3	연 15	4.0	19.45	77.80	연결로	진1	도서실	
기정	소로	3	연 16	3.0	17.8	53.40	연결로	광장9	광장10	
기정	소로	3	연 17	4.5	6.9	31.05	연결로	광장9	광장10	
기정	소로	3	연 18	2.5	12.5	31.25	연결로	광장10	광장11	
기정	소로	3	연 19	1.4	56.0	84.00	연결로	광장10	광장11	
기정	소로	3	연 20	2.4	43.3	103.92	연결로	광장9	광장10	
기정	소로	3	산 1	2.74	55.2	152.77	산책로	진1	진1	
기정	소로	3	산 2	5.5	42.8	235.4	산책로	진1	연13	
기정	소로	3	산 3	2.0	62.33	130.66	산책로	광장10	산4	
기정	소로	3	산 4	2.0	305.75	611.50	산책로	광장10	광장12	
기정	소로	3	산 5	2.0	123.6	247.20	산책로	광장14	산4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 6	2.0	140.7	281.31	산책로	보행자도로	광장14	
기정	소로	3	산 7	2.0	211.1	422.11	산책로	산4	산6	
변경	소로	3	산 7	2.0	273.7	547.40	산책로	산4	광장12	
기정	소로	3	산 8	2.0	144.0	287.98	산책로	산4	산9	
변경	소로	3	산 8	2.0	176.3	352.60	산책로	산4	광장12	
기정	소로	3	산 9	2.0	89.6	179.13	산책로	광장13	광장12	
변경	소로	3	산 9	2.0	24.0	48.00	산책로	광장13	산8	
기정	소로	3	산15	2.0	59.21	118.42	산책로	근린공원38호	산9	
변경	소로	3	산15	2.0	24.2	48.40	산책로	근린공원38호	산8	
기정	소로	3	자1	2.0	102.15	204.30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완충녹지53호	
변경	소로	3	자1	2.0	88.16	176.32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광장3	
기정	소로	3	자2	2.0	175.65	351.30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완충녹지54호	

##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1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63-1공, 1960-6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중산공원 (제15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63-1공, 1960-6공	48,505.20	48,505.2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계	48,505.20	48,505.20	18,813.24	18,861.24	-	1	-	48.00	-	48.00	155	156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5,992.33	15,992.33	15,992.33	15,992.33	-	-	-	-	-	-	-	-	-
	도로	7,878.35	7,878.35	7,878.35	7,878.35	-	-	-	-	-	-	-	-	-
	광장	8,113.98	8,113.98	8,113.98	8,113.98	-	-	-	-	-	-	-	-	-
조경시설	2,820.91	2,820.91	2,820.91	2,820.91	-	-	-	-	-	-	29	29	-	
휴양시설	-	-	-	-	-	-	-	-	-	-	106	106	-	
관리시설	-	48.00	-	48.00	-	1	-	48.00	-	48.00	20	21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기타	29,691.96	29,643.96	-	-	-	-	-	-	-	-	-	-	녹지면적 감) 48.00㎡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중산동	48,505.20	48,505.20	18,813.24	18,861.24	지상 1층	48.00	48.00	155	156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15,992.33	15,992.33	15,992.33	15,992.33	-	-	-	-	-	-
	도로	-	중구 중산동	7,878.35	7,878.35	7,878.35	7,878.35	-	-	-	-	-	-
	광장	-	"	8,113.98	8,113.98	8,113.98	8,113.98	-	-	-	-	-	-
	광장1	-	"	267.22	267.22	267.22	267.22	-	-	-	-	-	-
	광장2	-	"	1,064.84	1,064.84	1,064.84	1,064.84	-	-	-	-	-	-
	광장3	-	"	146.84	146.84	146.84	146.84	-	-	-	-	-	-
	광장4	-	"	266.99	266.99	266.99	266.99	-	-	-	-	-	-
	광장5	-	"	45.93	45.93	45.93	45.93	-	-	-	-	-	-
광장6	-	"	481.28	481.28	481.28	481.28	-	-	-	-	-	-	
광장7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광장8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9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10	-	"	218.95	218.95	218.95	218.95	-	-	-	-	-	-
	광장11	-	"	311.73	311.73	311.73	311.73	-	-	-	-	-	-
	광장12	-	"	333.56	333.56	333.56	333.56	-	-	-	-	-	-
	광장13	-	"	44.04	44.04	44.04	44.04	-	-	-	-	-	-
	광장14	-	"	41.89	41.89	41.89	41.89	-	-	-	-	-	-
	광장15	-	"	929.95	929.95	929.95	929.95	-	-	-	-	-	-
	광장16	-	"	812.84	812.84	812.84	812.84	-	-	-	-	-	-
	광장17	-	"	571.18	571.18	571.18	571.18	-	-	-	-	-	-
	광장18	-	"	196.41	196.41	196.41	196.41	-	-	-	-	-	-
	광장19	-	"	323.12	323.12	323.12	323.12	-	-	-	-	-	-
	광장20	-	"	681.82	681.82	681.82	681.82	-	-	-	-	-	-
	광장21	-	"	892.55	892.55	892.55	892.55	-	-	-	-	-	-
	광장22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23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24	-	"	54.02	54.02	54.02	54.02	-	-	-	-	-	-	
광장25	-	"	71.47	71.47	71.47	71.47	-	-	-	-	-	-	
조경 시설	소 계			2,820.91	2,820.91	2,820.91	2,820.91	-	-	-	29	29	-
	실개천	A	중구 중산동	2,645.71	2,645.71	2,645.71	2,645.71	-	-	-	-	-	-
	스탠드C	B	"	175.20	175.20	175.20	175.20	-	-	-	1	1	-
	장식가벽A	C	"	-	-	-	-	-	-	-	1	1	-
	장식가벽B	D	"	-	-	-	-	-	-	-	1	1	-
	장식가벽C	E	"	-	-	-	-	-	-	-	1	1	-
	전통열주	-	"	-	-	-	-	-	-	-	23	23	-
사 계	-	"	-	-	-	-	-	-	-	2	2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106	106	-
	한글조형파고라A	G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한글조형파고라B	H	"	-	-	-	-	-	-	-	1	1	-
	연결형파고라A	I	"	-	-	-	-	-	-	-	2	2	-
휴양 시설	전통형파고라	J	"	-	-	-	-	-	-	-	3	3	-
	운동시설	J	"	-	-	-	-	-	-	-	10	10	-
	평의자B	L	"	-	-	-	-	-	-	-	40	40	-
	등의자B	M	"	-	-	-	-	-	-	-	46	46	-
관리 시설	탁구대	N	"	-	-	-	-	-	-	-	3	3	-
	소 계			-	48.00	-	48.00	지상 1층	48.00	48.00	20	21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S	중구 중산동	-	48.00	-	48.00	지상 1층	48.00	48.00	-	-	시설면적 증) 48.00㎡
	공원명칭안내판	T	"	-	-	-	-	-	-	-	1	1	공작물 증) 1개소
	수목보호틀	O	"	-	-	-	-	-	-	-	18	18	-
	목교A	P	"	-	-	-	-	-	-	-	1	1	-
목교B	Q	"	-	-	-	-	-	-	-	1	1	-	
녹지 및 기타	소 계			29,691.96	29,643.96	-	-	-	-	-	-	-	녹지면적 감) 48.00㎡
	녹지	-	전지역	29,691.96	29,643.96	-	-	-	-	-	-	-	녹지면적 감) 48.00㎡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3,310.44	7,878.35	-	-	-	
기정	소로	3	진1	5.0	79.6	397.64	진입로	광장3	광장1	
기정	소로	3	진2	2.0	18.87	38.39	진입로	서측경계	실개천	
기정	소로	3	진3	3.0	23.5	70.81	진입로	서측경계	실개천	
기정	소로	3	진4	4.5	97.5	438.76	진입로	광장13	자1	
기정	소로	3	진5	1.2	38.48	46.17	진입로	북동측경계	자1	
기정	소로	3	진6	4.0	23.46	93.85	진입로	서측경계	실개천	
기정	소로	3	진7	4.0	110.2	440.76	진입로	동측경계	스탠드	
기정	소로	3	진8	8.0	63.79	511.61	진입로	광장21	자2	
기정	소로	3	진9	2.0	14.4	28.64	산책로	동측경계	자1	
기정	소로	3	진10	1.2	46.95	93.89	산책로	동측경계	자2	
기정	소로	3	연1	3.0	46.27	138.80	연결로	광장3	광장10	
기정	소로	3	연2	3.0	13.7	41.13	연결로	광장10	진2	
기정	소로	3	연3	1.5	7.24	10.86	연결로	산9	광장8	
기정	소로	3	연4	2.0	42.3	84.59	연결로	광장12	진4	
기정	소로	3	연5	1.5	14.41	21.61	연결로	산9	광장9	
기정	소로	3	연6	1.2	31.84	38.21	연결로	진4	자1	
기정	소로	3	연7	1.5	10.25	15.37	연결로	산11	광장18	
기정	소로	3	연8	1.5	4.93	7.40	연결로	자1	광장7	
기정	소로	3	연9	1.5	9.6	14.31	연결로	자2	광장22	
기정	소로	3	연10	1.5	9.06	13.59	연결로	광장21	광장23	
기정	소로	3	연11	1.5	7.76	11.64	연결로	자2	광장25	
기정	소로	3	연12	1.2	45.39	54.47	연결로	광장6	자1	
기정	소로	3	산1	1.2	173.4	208.13	산책로	광장1	광장10	
기정	소로	3	산2	1.2	59.7	71.67	산책로	산3	광장10	
기정	소로	3	산3	2.0	50.5	100.99	산책로	광장10	자1	
기정	소로	3	산4	1.2	49.3	59.13	산책로	진9	광장4	
기정	소로	3	산5	2.0	33.4	66.76	산책로	자1	광장4	
기정	소로	3	산6	1.2	99.9	119.82	산책로	광장4	광장6	
기정	소로	3	산7	2.0	101.4	202.72	산책로	광장4	광장6	
기정	소로	3	산8	1.2	58.56	175.67	산책로	산9	자1	
기정	소로	3	산9	1.2	137.3	411.85	산책로	광장10	연4	
기정	소로	3	산10	1.2	165.6	198.70	산책로	광장12	진4	
기정	소로	3	산11	3.0	189.0	567.00	산책로	광장16	광장21	
기정	소로	3	산12	1.5	43.7	65.51	산책로	광장18	자2	
기정	소로	3	산13	1.2	67.3	80.80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6	
기정	소로	3	산14	1.2	26.1	31.35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6	
기정	소로	3	산15	1.2	26.2	31.47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6,진6	
기정	소로	3	산16	3.0	51.3	153.87	산책로	산11	자2	
기정	소로	3	산17	1.2	42.3	50.81	산책로	진10	광장19	
기정	소로	3	산18	1.2	76.8	92.12	산책로	광장19	진7	
기정	소로	3	산19	1.2	267.2	320.59	산책로	광장19	자2	
기정	소로	3	산20	3.0	145.4	436.29	산책로	진6	광장21	
기정	소로	3	산21	1.2	52.3	62.70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7	
기정	소로	3	산22	1.2	57.3	68.71	산책로	서측경계	산20	
기정	소로	3	산23	2.0	35.5	66.93	산책로	산11	자2	
기정	소로	3	자1	3.0	253.0	759.01	자전거도로	공공공지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자2	3.0	287.8	863.25	자전거도로	남측경계	남측경계	

## 다. 관계도면 : 기재생략

○ 제29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66-3,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중촌공원 (제29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66-3, 공	20,126.90	20,126.9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126.90	20,126.90	6,896.19	6,935.10	-	1	-	48.00	-	48.00	68	78	시설면적 증) 38.91㎡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0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5,194.99	5,185.90	5,194.99	5,185.90	-	-	-	-	-	-	-	-	시설면적 감) 9.09㎡
	도로	3,988.69	4,022.83	3,988.69	4,022.83	-	-	-	-	-	-	-	-	시설면적 증) 34.14㎡
	광장	1,206.30	1,163.07	1,206.30	1,163.07	-	-	-	-	-	-	-	-	시설면적 감) 43.23㎡
조경시설	302.20	302.20	302.20	302.20	-	-	-	-	-	-	10	10	-	
휴양시설	-	-	-	-	-	-	-	-	-	-	44	53	공작물 증) 9개소	
유희시설	648.60	648.60	648.60	648.60	-	-	-	-	-	-	8	8	-	
운동시설	750.40	750.40	750.40	750.40	-	-	-	-	-	-	-	-	-	
관리시설	-	48.00	-	48.00	-	1	-	48.00	-	48.00	6	7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기타	13,230.71	13,191.80	-	-	-	-	-	-	-	-	-	-	-	녹지면적 감) 38.91㎡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운남동	20,126.90	20,126.90	6,896.19	6,935.10	지상 1층	48.00	48.00	68	78	시설면적 증) 38.91㎡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0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5,194.99	5,185.90	5,194.99	5,185.90	-	-	-	-	-	시설면적 감) 9.09㎡
	도로	-	중구 운남동	3,988.69	4,022.83	3,988.69	4,022.83	-	-	-	-	-	시설면적 증) 34.14㎡
	광장	-	"	1,206.30	1,163.07	1,206.30	1,163.07	-	-	-	-	-	-
	광장1	-	"	640.50	597.27	640.50	597.27	-	-	-	-	-	시설면적 감) 43.23㎡
	광장2	-	"	461.00	461.00	461.00	461.00	-	-	-	-	-	-
	광장3	-	"	104.80	104.80	104.80	104.80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조경시설	소 계			302.20	302.20	302.20	302.20	-	-	-	10	10	-
	스탠드	A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조형마운딩 '가-1'	B	"	152.40	152.40	152.40	152.40	-	-	-	1	1	-
	조형마운딩 '나-1'	C	"	149.80	149.80	149.80	149.80	-	-	-	1	1	-
	바람개비조형물	D	"	-	-	-	-	-	-	-	6	6	-
	안전난간	E	"	-	-	-	-	-	-	-	1	1	-
휴양시설	소 계			-	-	-	-	-	-	-	44	53	공작물 증) 9개소
	막구조과고라	F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과고라D	G	"	-	-	-	-	-	-	-	2	2	-
	과고라O	H	"	-	-	-	-	-	-	-	4	4	-
	등의자A	I	"	-	-	-	-	-	-	-	14	24	공작물 증) 10개소
	평의자A	J	"	-	-	-	-	-	-	-	22	22	-
	앉음벽	K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유희시설	소 계			648.60	648.60	648.60	648.60	-	-	-	8	8	-
	어린이놀이터	L	중구 운남동	648.60	648.60	648.60	648.60	-	-	-	-	-	-
	금광조합놀이대	M	"	-	-	-	-	-	-	-	1	1	-
	스피드레이서	N	"	-	-	-	-	-	-	-	1	1	-
	신호등게임	O	"	-	-	-	-	-	-	-	1	1	-
	파크레이싱 (아동용)	P	"	-	-	-	-	-	-	-	2	2	-
	그네	Q	"	-	-	-	-	-	-	-	1	1	-
	흔들놀이	R	"	-	-	-	-	-	-	-	2	2	-
운동시설	소 계			750.40	750.40	750.40	750.40	-	-	-	-	-	-
	멀티코트	S	중구 운남동	470.30	470.30	470.30	470.30	-	-	-	-	-	-
	배드민턴장	T	"	280.10	280.10	280.10	280.10	-	-	-	-	-	-
관리시설	소 계			-	48.00	-	48.00	지상 1층	48.00	48.00	6	7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개소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X	중구 운남동	-	48.00	-	48.00	지상 1층	48.00	48.00	-	-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원명칭안내판	Y	"	-	-	-	-	-	-	-	1	1	공작물 증) 1개소
	공원안내판B	U	"	-	-	-	-	-	-	-	2	2	-
	공원안내판C	V	"	-	-	-	-	-	-	-	2	2	-
	자전거보관대	W	"	-	-	-	-	-	-	-	2	2	-
녹지및 기타	소 계			13,230.71	13,191.80	-	-	-	-	-	-	-	녹지면적 감) 38.91㎡
	녹지	-	진지역	13,230.71	13,191.80	-	-	-	-	-	-	-	녹지면적 감) 38.91㎡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1,213.94	3,988.69	-	-	-	도로연장(중) 10.8m 도로면적(중) 34.14m <sup>2</sup>
변경					1,224.74	4,022.83				
기정	소로	3류	진 1	6.0	84.1	510.46	진입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류	진 2	5.0	38.4	191.96	진입로	광로	녹지	
기정	소로	3류	연 1	4.0	46.2	184.92	연결로	진1	자4	
기정	소로	3류	연 2	3.0	5.0	16.13	연결로	진1	배드민턴장	
기정	소로	3류	연 3	3.0	5.0	15.99	연결로	진1	멀티코트	
기정	소로	3류	연 4	4.0	28.9	112.61	연결로	산3	자1	
기정	소로	3류	연 5	4.4	89.3	440.59	연결로	진1	자1	
신규	소로	3류	연 6	2.0	5.1	10.27	연결로	자4	공동주택	
신규	소로	3류	연 7	4.0	5.7	23.87	연결로	자4	공동주택	
기정	소로	3류	산 1	4.0	96.4	285.63	산책로	광로	진2	
기정	소로	3류	산 2	5.0	71.6	241.19	산책로	광로	진2	
기정	소로	3류	산 3	4.0	233.75	884.75	산책로	진2	진2	
기정	소로	3류	자1	2.0	195.53	419.91	자전거도로	완충녹지54	광장1	
기정	소로	3류	자2	2.0	58.39	121.69	자전거도로	자1	진2	
기정	소로	3류	자3	2.0	54.81	125.71	자전거도로	완충녹지54	진2	
기정	소로	3류	자4	2.0	206.56	437.15	자전거도로	자3	광장1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33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59-2,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m <sup>2</sup> )	변경(m <sup>2</sup> )	비고
-	구읍공원 (제3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59-2, 공	8,651.90	8,651.9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계	8,651.90	8,651.90	3,388.88	3,388.88	-	-	-	-	-	-	30	30	-
도로 및 광장	소계	2,229.08	2,229.08	2,229.08	2,229.08	-	-	-	-	-	-	-	-
	도로	1,491.14	1,491.14	1,491.14	1,491.14	-	-	-	-	-	-	-	-
	광장	737.94	737.94	737.94	737.94	-	-	-	-	-	-	-	-
조경시설	1,159.80	1,159.80	1,159.80	1,159.80	-	-	-	-	-	-	-	-	-
휴양시설	-	-	-	-	-	-	-	-	-	-	25	25	-
관리시설	-	-	-	-	-	-	-	-	-	-	5	5	-
녹지및기타	5,263.02	5,263.02	-	-	-	-	-	-	-	-	-	-	-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중산동	8,651.90	8,651.90	3,388.88	3,388.88	-	-	-	30	30	-
도로 및 광장	소 계				2,229.08	2,229.08	2,229.08	2,229.08	-	-	-	-	-	-
	도로	-	중구 중산동	1,491.14	1,491.14	1,491.14	1,491.14	-	-	-	-	-	-	-
	광장	-	"	737.94	737.94	737.94	737.94	-	-	-	-	-	-	-
	광장1	-	"	118.81	118.81	118.81	118.81	-	-	-	-	-	-	-
	광장2	-	"	247.40	247.40	247.40	247.40	-	-	-	-	-	-	-
	광장3	-	"	56.55	56.55	56.55	56.55	-	-	-	-	-	-	-
	광장4	-	"	58.22	58.22	58.22	58.22	-	-	-	-	-	-	-
	광장5	-	"	171.01	171.01	171.01	171.01	-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159.80	1,159.80	1,159.80	1,159.80	-	-	-	-	-	-
	실개천	A	중구 중산동	1,147.80	1,147.80	1,147.80	1,147.80	-	-	-	-	-	-	-
	보행데크2	C	"	12.00	12.00	12.00	12.00	-	-	-	-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25	25	-	
	앉음벽	D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파고라D	E	"	-	-	-	-	-	-	-	2	2	-	
	원형플렌터	F	"	-	-	-	-	-	-	-	2	2	-	
	등의자C	G	"	-	-	-	-	-	-	-	4	4	-	
	평의자C	H	"	-	-	-	-	-	-	-	14	14	-	
관리 시설	소 계				-	-	-	-	-	-	5	5	-	
	안전웬스	J	중구 중산동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자전거보관대	K	"	-	-	-	-	-	-	-	1	1	-	
	공원안내판B	L	"	-	-	-	-	-	-	-	2	2	-	
	공원안내판C	M	"	-	-	-	-	-	-	-	1	1	-	
	공원명칭안내판	N	"	-	-	-	-	-	-	-	-	1	공작물 중) 1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5,263.02	5,263.02	-	-	-	-	-	-	-	
	녹지	-	전지역	5,263.02	5,263.02	-	-	-	-	-	-	-	-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	-	594.0	1,491.14	-	-	-	
기정	소로	3	진 5	2.0	105.3	210.64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4	
기정	소로	3	진 6	3.0	4.0	12.00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	산 5	3.0	56.5	169.64	산책로	광장1	광장3	
기정	소로	3	산 6	3.0	98.5	295.58	산책로	광장3	광장4	
기정	소로	3	산 7	3.0	97.3	291.86	산책로	광장4	광장5	
기정	소로	3	자3	2.2	93.3	205.34	자전거도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	자4	2.2	139.1	306.08	자전거도로	광장2	동측경계	

####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3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45-10,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둔치공원 (제3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45-10, 공	43,513.60	43,513.6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3,513.60	43,513.60	11,450.31	11,450.31	-	-	-	-	-	-	30	32	공작물 증) 2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5,858.31	5,858.31	5,858.31	5,858.31	-	-	-	-	-	-	-	-	-
	도로	5,685.22	5,685.22	5,685.22	5,685.22	-	-	-	-	-	-	-	-	-
	광장	173.09	173.09	173.09	173.09	-	-	-	-	-	-	-	-	-
조정시설	5,592.00	5,592.00	5,592.00	5,592.00	-	-	-	-	-	-	3	3	-	
휴양시설	-	-	-	-	-	-	-	-	-	-	27	27	-	
관리시설	-	-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녹지및기타	32,063.29	32,063.29	-	-	-	-	-	-	-	-	-	-	-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운남동	43,513.60	43,513.60	11,450.31	11,450.31	-	-	-	30	32	공작물 증) 2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5,858.31	5,858.31	5,858.31	5,858.31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5,685.22	5,685.22	5,685.22	5,685.22	-	-	-	-	-	-
	광장	-	"	173.09	173.09	173.09	173.09	-	-	-	-	-	-
	광장8	-	"	129.42	129.42	129.42	129.42	-	-	-	-	-	-
	광장9	-	"	43.67	43.67	43.67	43.67	-	-	-	-	-	-
조정 시설	소 계			5,592.00	5,592.00	5,592.00	5,592.00	-	-	-	3	3	-
	하천조성	A	중구 운남동	5,592.00	5,592.00	5,592.00	5,592.00	-	-	-	-	-	-
	계단	J	"	-	-	-	-	-	-	-	1	1	-
	목교	B	"	-	-	-	-	-	-	-	2	2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27	27	-
	앉음벽	M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등의자D	O	"	-	-	-	-	-	-	-	20	20	-
	평의자D	P	"	-	-	-	-	-	-	-	6	6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공원안내판B	Q	중구 운남동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공원명칭안내 판	X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32,063.29	32,063.29								-
	녹지	-	전지역	32,063.29	32,063.29	-	-	-	-	-	-	-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1,820.6	5,685.22	-	-	-	
기정	소로	3	연 5	2.0	16.0	32.00	연결로	산18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연 7	3.0	34.2	103.70	연결로	북측경계	산12	
기정	소로	3	연 8	3.0	39.5	120.02	연결로	북측경계	산14	
기정	소로	3	연 9	2.0	11.1	22.32	연결로	산14	광장8	
기정	소로	3	연 10	2.0	11.7	23.42	연결로	산12	서측경계	
기정	소로	3	연 11	2.0	11.6	23.27	연결로	산13	서측경계	
기정	소로	3	연 12	3.0	29.5	89.52	연결로	남측경계	산13	
기정	소로	3	연 13	2.0	20.9	41.58	연결로	북측경계	산15	
기정	소로	3	연 14	3.0	36.8	111.74	연결로	남측경계	산17	
기정	소로	3	연 15	3.0	38.2	115.30	연결로	북측경계	산15	
기정	소로	3	연 16	2.0	10.5	21.26	연결로	광장9	산16	
기정	소로	3	연 17	3.0	37.3	113.33	연결로	북측경계	산16	
기정	소로	3	연 18	3.0	50.6	151.12	연결로	북측경계	산18	
기정	소로	3	산 9	2.0	70.6	158.06	산책로	광장8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10	2.0	168.9	452.45	산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11	2.0	21.0	48.81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9	
기정	소로	3	산 12	3.0	182.0	546.06	산책로	대로	중로	
변경	소로	3	산 12	3.0	182.0	546.06	산책로	북측경계	중로1-565-2	
기정	소로	3	산 13	3.0	171.7	515.35	산책로	중로	대로	
변경	소로	3	산 13	3.0	171.7	515.35	산책로	중로1-565-2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14	3.0	181.5	558.29	산책로	대로	중로	
변경	소로	3	산 14	3.0	181.5	558.29	산책로	북측경계	중로1-565-2	
기정	소로	3	산 15	3.0	296.4	889.58	산책로	중로	중로	
변경	소로	3	산 15	3.0	296.4	889.58	산책로	중로1-565-2	중로1-565-2	
기정	소로	3	산 16	3.0	15.0	450.40	산책로	대로	중로	
변경	소로	3	산 16	3.0	15.0	450.40	산책로	북측경계	중로1-565-2	
기정	소로	3	산 17	3.0	222.6	667.89	산책로	중로	대로	
변경	소로	3	산 17	3.0	222.6	667.89	산책로	중로1-565-2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18	3.0	143.0	429.75	산책로	대로	중로	
변경	소로	3	산 18	3.0	143.0	429.75	산책로	북측경계	중로1-565-2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3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81-9,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호수공원 (제35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81-9, 공	55,128.20	55,128.2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5,128.20	55,128.20	18,903.57	17,942.52	1	1	110.42	48.00	110.42	48.00	96	96	시설면적 감) 961.05㎡	
도로 및 광장	소계	11,593.27	11,314.44	11,593.27	11,314.44	-	-	-	-	-	-	-	-	시설면적 감) 278.83㎡
	도로	7,017.65	6,628.40	7,017.65	6,628.40	-	-	-	-	-	-	-	-	시설면적 감) 389.25㎡
	광장	4,575.62	4,686.04	4,575.62	4,686.04	-	-	-	-	-	-	-	-	시설면적 증) 110.42㎡
조경시설	5,458.08	5,458.08	5,458.08	5,458.08	-	-	-	-	-	-	6	6	-	
휴양시설	-	-	-	-	-	-	-	-	-	-	70	68	공작물 감) 2개소	
운동시설	1,036.00	1,036.00	1,036.00	1,036.00	-	-	-	-	-	-	14	14	-	
관리시설	816.22	134.00	816.22	134.00	1	1	110.42	48.00	110.42	48.00	6	8	시설면적 감) 682.22㎡ 공작물 증) 2개소	
녹지및기타	36,224.63	37,185.68	-	-	-	-	-	-	-	-	-	-	-	녹지면적 증) 961.05㎡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55,128.20	55,128.20	18,903.57	17,942.52	지상 1층	48.00	48.00	96	96	시설면적 감) 961.05㎡
도로 및 광장	소 계			11,593.27	11,314.44	11,593.27	11,314.44	-	-	-	-	-	시설면적 감) 278.83㎡
	도로	-	중구 운남동	7,017.65	6,628.40	7,017.65	6,628.40	-	-	-	-	-	시설면적 감) 389.25㎡
	광장	-	"	4,575.62	4,686.04	4,575.62	4,686.04	-	-	-	-	-	시설면적 증) 110.42㎡
	광장1	-	"	67.92	67.92	67.92	67.92	-	-	-	-	-	-
	광장2	-	"	3,580.00	3,580.00	3,580.00	3,580.00	-	-	-	-	-	-
	광장3	-	"	270.00	270.00	270.00	270.00	-	-	-	-	-	-
	광장4	-	"	471.25	471.25	471.25	471.25	-	-	-	-	-	-
	광장5	-	"	104.48	104.48	104.48	104.48	-	-	-	-	-	-
	광장6	-	"	81.97	81.97	81.97	81.97	-	-	-	-	-	-
광장7	-	"	-	110.42	-	110.42	-	-	-	-	-	-	시설면적 증) 110.42㎡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마당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조경 시설	소 계			5,458.08	5,458.08	5,458.08	5,458.08	-	-	-	6	6	-
	실개천	A	중구 운남동	5,183.00	5,183.00	5,183.00	5,183.00	-	-	-	-	-	-
	조형마운딩	B	"	103.08	103.08	103.08	103.08	-	-	-	-	-	-
	목재데크	H	"	172.00	172.00	172.00	172.00	-	-	-	-	-	-
	보행데크A	K	"	-	-	-	-	-	-	-	1	1	-
조경 시설	보행데크B	L	"	-	-	-	-	-	-	-	1	1	-
	바닥분수	I	"	-	-	-	-	-	-	-	1	1	-
	목재계단A	M	"	-	-	-	-	-	-	-	1	1	-
	목재계단	N	"	-	-	-	-	-	-	-	1	1	-
	안전난간	S	"	-	-	-	-	-	-	-	1	1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70	68	공작물 감) 2개소
	앉음벽	V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연결형파고라A	O	"	-	-	-	-	-	-	-	2	2	-
	파고라D	P	"	-	-	-	-	-	-	-	5	5	-
	등의자F	R	"	-	-	-	-	-	-	-	16	16	-
	평의자F	Q	"	-	-	-	-	-	-	-	36	34	공작물 감) 2개소
	통돌의자	W	"	-	-	-	-	-	-	-	1	1	-
	통돌의자A	X	"	-	-	-	-	-	-	-	8	8	-
	전통정자	J	"	-	-	-	-	-	-	-	1	1	-
운동 시설	소 계			1,036.00	1,036.00	1,036.00	1,036.00	-	-	-	14	14	-
	배드민턴장	B	중구 운남동	428.00	428.00	428.00	428.00	-	-	-	-	-	-
	체력단련장1	C	"	356.00	356.00	356.00	356.00	-	-	-	-	-	-
	체력단련장2	D	"	252.00	252.00	252.00	252.00	-	-	-	-	-	-
	공중걸기	a	"	-	-	-	-	-	-	-	1	1	-
	달리기	b	"	-	-	-	-	-	-	-	1	1	-
	등허리지압기	c	"	-	-	-	-	-	-	-	3	3	-
	어깨유연성	d	"	-	-	-	-	-	-	-	2	2	-
	역기내리기	e	"	-	-	-	-	-	-	-	2	2	-
	오금펴기	f	"	-	-	-	-	-	-	-	2	2	-
	허리돌리기	g	"	-	-	-	-	-	-	-	2	2	-
	파도타기	h	"	-	-	-	-	-	-	-	1	1	-
관리 시설	소 계			816.22	134.00	816.22	134.00	지상 1층	110.42	48.00	6	8	시설면적 감) 682.22㎡ 공작물 증) 2개소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F	중구 운남동	110.42	134.00	110.42	134.00	지상 1층	110.42	48.00	-	-	시설면적 증) 23.58㎡
	주차장	G	"	705.80	-	705.80	-	-	-	-	-	-	시설면적 감) 705.80㎡
	자전거보관대B	T	"	-	-	-	-	-	-	-	1	1	-
	자전거보관대C	U	"	-	-	-	-	-	-	-	1	1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마당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관리 시설	공원안내판	Y	"	-	-	-	-	-	-	-	1	1	-
	방향안내판	Z	"	-	-	-	-	-	-	-	3	3	-
	공원명칭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수경시설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36,224.63	37,185.68	-	-	-	-	-	-	-	녹지면적 증) 961.05㎡
	녹지	-	진지역	36,224.63	37,185.68	-	-	-	-	-	-	-	녹지면적 증) 961.05㎡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2,166.30	7,017.65	-	-	-	도로연장 감) 54.24m 도로면적 감) 389.25㎡
변경					2,112.06	6,628.40				
기정	소로	3	진 1	7.5	42.3	317.25	진입로	남측경계	주차장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2	4.0	37.75	151.00	진입로	남측경계	연1	
기정	소로	3	진 3	6.0	12.0	72.00	진입로	관리사무소	연2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4	2.0	31.0	62.00	진입로	서측경계	산2	
기정	소로	3	진 5	6.0	10.18	61.08	진입로	동측경계	산2	
기정	소로	3	진 6	4.0	23.7	94.80	진입로	서측경계	산2	
기정	소로	3	진 7	6.0	6.65	39.90	진입로	동측경계	산2	
기정	소로	3	진 8	6.0	12.55	75.30	진입로	북측경계	체력단련장2	
기정	소로	3	연 1	4.0	50.23	200.92	연결로	진1	연2	
기정	소로	3	연 2	4.0	75.85	303.40	연결로	연1	산2	
기정	소로	3	연 3	3.0	12.66	37.98	연결로	광장2	산2	
기정	소로	3	연 4	2.0	6.52	13.04	연결로	광장1	산1	
기정	소로	3	연 5	2.0	21.42	42.84	연결로	산1	산2	
기정	소로	3	연 6	2.0	4.39	8.78	연결로	광장3	산1	
기정	소로	3	연 7	2.0	3.24	6.48	연결로	남측경계	산2	
기정	소로	3	산 1	2.0	412.72	825.44	산책로	광장1	광장4	
기정	소로	3	산 2	4.0	899.11	3,596.44	산책로	북측경계	광장4	
기정	소로	3	자 1	2.2	504.09	1,109.00	자전거도로	서측경계	광장4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3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22-84공, 1711-59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독방공원 (제37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22-84공, 1711-59공	28,383.80	28,383.8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8,383.80	28,383.80	9,073.43	9,073.43	-	-	-	-	-	-	66	67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7,068.64	7,068.64	7,068.64	7,068.64	-	-	-	-	-	-	-	-	-
	도로	4,280.07	4,280.07	4,280.07	4,280.07	-	-	-	-	-	-	-	-	-
	광장	2,788.57	2,788.57	2,788.57	2,788.57	-	-	-	-	-	-	-	-	-
조경시설	208.90	208.90	208.90	208.90	-	-	-	-	-	-	13	13	-	
휴양시설	-	-	-	-	-	-	-	-	-	-	34	34	-	
유흥시설	426.03	426.03	426.03	426.03	-	-	-	-	-	-	5	5	-	
운동시설	374.00	374.00	374.00	374.00	-	-	-	-	-	-	8	8	-	
교양시설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6	7	공작물 증) 1개소	
편익시설	495.86	495.86	495.86	495.86	-	-	-	-	-	-	-	-	-	
녹지및기타	19,310.37	19,310.37	-	-	-	-	-	-	-	-	-	-	-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운남동	28,383.80	28,383.80	9,073.43	9,073.43	-	500.00	500.00	66	67	공작물 증) 1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7,068.64	7,068.64	7,068.64	7,068.64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4,280.07	4,280.07	4,280.07	4,280.07	-	-	-	-	-	-
	광장	-	"	2,788.57	2,788.57	2,788.57	2,788.57	-	-	-	-	-	-
	광장1	-	"	173.09	173.09	173.09	173.09	-	-	-	-	-	-
	광장2	-	"	51.54	51.54	51.54	51.54	-	-	-	-	-	-
	광장3	-	"	363.02	363.02	363.02	363.02	-	-	-	-	-	-
	광장4	-	"	1,252.35	1,252.35	1,252.35	1,252.35	-	-	-	-	-	-
	광장5	-	"	525.10	525.10	525.10	525.10	-	-	-	-	-	-
광장6	-	"	423.47	423.47	423.47	423.47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조경 시설	소 계			208.90	208.90	208.90	208.90	-	-	-	13	13	-
	목재데크	H	중구 운남동	208.90	208.90	208.90	208.90	-	-	-	-	-	-
	열주A	C	"	-	-	-	-	-	-	-	6	6	-
	열주B	D	"	-	-	-	-	-	-	-	7	7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34	34	-
	파고라N	K	중구 운남동	-	-	-	-	-	-	-	6	6	-
	파고라I	L	"	-	-	-	-	-	-	-	2	2	-
	앉음벽	M	"	-	-	-	-	-	-	-	1	1	-
	통돌의자	N	"	-	-	-	-	-	-	-	1	1	-
	평의자D	P	"	-	-	-	-	-	-	-	24	24	-
유희 시설	소 계			426.03	426.03	426.03	426.03	-	-	-	5	5	-
	어린이놀이터	Q	중구 운남동	426.03	426.03	426.03	426.03	-	-	-	-	-	-
	조합놀이대	R	"	-	-	-	-	-	-	-	1	1	-
	그네	S	"	-	-	-	-	-	-	-	1	1	-
	흔들놀이	T	"	-	-	-	-	-	-	-	3	3	-
운동 시설	소 계			374.00	374.00	374.00	374.00	-	-	-	8	8	-
	운동시설	B	중구 운남동	-	-	-	-	-	-	-	8	8	-
	케이트볼장	V	"	374.00	374.00	374.00	374.00	-	-	-	-	-	-
교양 시설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경로당	W	중구 운남동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6	7	공작물 증) 1개소
	공원안내관	-	중구 운남동	-	-	-	-	-	-	-	-	-	-
	시설이용안내 관	-	"	-	-	-	-	-	-	-	-	-	-
	공원안내관B	A	"	-	-	-	-	-	-	-	3	3	-
	공원명칭안내 관	X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장애인전용안내관	F	"	-	-	-	-	-	-	-	1	1	-
	자전거보관대	G	"	-	-	-	-	-	-	-	2	2	-
편의 시설	소 계			495.86	495.86	495.86	495.86	-	-	-	-	-	-
	주차장	E	"	495.86	495.86	495.86	495.86	-	-	-	-	-	-
녹지및 기타	소 계			19,310.37	19,310.37	-	-	-	-	-	-	-	-
	녹지	-	전지역	19,310.37	19,310.37	-	-	-	-	-	-	-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828.8	4,280.07	-	-	-	
기정	소로	3	진 1	3.00	76.7	228.72	진입로	광장1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진 2	5.10	64.8	331.12	진입로	광장3	산3	
기정	소로	3	진 3	5.20	28.5	139.79	진입로	광장6	광장5	
기정	소로	3	연 1	2.10	15.3	32.58	연결로	산4	진2	
기정	소로	3	연 2	2.10	17.1	35.96	연결로	산4	진2	
기정	소로	3	연 3	2.10	18.9	39.79	연결로	산4	진2	
기정	소로	3	연 4	1.90	79.1	168.13	연결로	목재데크	산3	
기정	소로	3	연 7	2.00	2.9	5.82	연결로	광장4	주차장	
기정	소로	3	연 8	1.90	7.8	14.85	연결로	광장4	주차장	
기정	소로	3	산 1	6.20	32.7	205.93	산책로	서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산 2	7.50	35.4	313.65	산책로	진1	중로	
기정	소로	3	산 3	10.00	252.1	2,110.37	산책로	광장5	중로	
기정	소로	3	산 4	3.60	81.9	293.14	산책로	광장3	산3	
기정	소로	3	산 5	4.00	36.4	147.95	산책로	광장5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6	3.20	48.0	147.51	산책로	광장5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7	2.70	31.2	64.76	산책로	산3	동측경계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50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0-1외 5필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m <sup>2</sup> )	변경(m <sup>2</sup> )	비고
-	씨사이드파크 (제506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0-1외 5필지, 공	1,770,719.2	1,770,719.2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계	1,770,719.20	1,770,719.20	342,955.40	349,281.07	36	39	3,143.06	3,790.24	4,503.91	5,542.75	2,640	2,640	시설면적 증) 6,325.67m <sup>2</sup> 건축물 증) 3동
도로 및 광장	소계	193,153.85	193,153.85	193,153.85	-	-	-	-	-	-	-	-	-
	도로	139,441.33	139,441.33	139,441.33	-	-	-	-	-	-	-	-	-
	광장	53,712.52	53,712.52	53,712.52	-	-	-	-	-	-	-	-	-
조경시설	604.00	604.00	604.00	604.00	-	-	-	-	-	-	375	375	-
휴양시설	7,439.18	7,439.18	7,439.18	7,439.18	-	-	-	-	-	-	665	665	-
유흥시설	5,487.65	5,487.65	5,487.65	5,487.65	-	-	-	-	-	-	35	35	-
운동시설	5,297.18	5,297.18	5,297.18	5,297.18	-	-	-	-	-	-	38	38	-
교양시설	98,362.02	98,362.02	98,362.02	98,362.02	1	1	1,735.99	1,735.99	2,936.12	2,936.12	11	11	-
관리시설	13,578.84	13,578.84	13,578.84	13,578.84	21	21	829.17	829.17	989.89	989.89	1,355	1,355	-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익시설	19,032.68	25,358.35	19,032.68	25,358.35	14	17	577.9	1,225.08	577.9	1,616.74	161	161	시설면적 증) 6,325.67㎡ 건축물 증) 3동
녹지및기타	1,427,763.8	1,421,438.13	-	-	-	-	-	-	-	-	-	-	녹지면적 감) 6,325.67㎡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운남동	1,770,719.20	1,770,719.20	342,955.40	349,281.07	지상 1층 ~ 2층	3,790.24	5,542.75	2,640	2,640	시설면적 증) 6,325.67㎡ 건축물 증) 3동
도로 및 광장	소 계			193,153.85	193,153.85	193,153.85	193,153.85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139,441.33	139,441.33	139,441.33	139,441.33	-	-	-	-	-	-
	광장	-	"	53,712.52	53,712.52	53,712.52	53,712.52	-	-	-	-	-	-
	광장1	-	"	4,441.07	4,441.07	4,441.07	4,441.07	-	-	-	-	-	-
	광장2	-	"	448.60	448.60	448.60	448.60	-	-	-	-	-	-
	광장3	-	"	43.33	43.33	43.33	43.33	-	-	-	-	-	-
	광장4	-	"	1,043.59	1,043.59	1,043.59	1,043.59	-	-	-	-	-	-
	광장5	-	"	149.13	149.13	149.13	149.13	-	-	-	-	-	-
	광장6	-	"	1,853.77	1,853.77	1,853.77	1,853.77	-	-	-	-	-	-
	광장7	-	"	143.42	143.42	143.42	143.42	-	-	-	-	-	-
	광장8	-	"	1,416.64	1,416.64	1,416.64	1,416.64	-	-	-	-	-	-
	광장9	-	"	590.87	590.87	590.87	590.87	-	-	-	-	-	-
	광장10	-	"	220.37	220.37	220.37	220.37	-	-	-	-	-	-
	광장11	-	"	231.68	231.68	231.68	231.68	-	-	-	-	-	-
	광장12	-	"	40.90	40.90	40.90	40.90	-	-	-	-	-	-
	광장13	-	"	2,776.90	2,776.90	2,776.90	2,776.90	-	-	-	-	-	-
	광장14	-	"	167.15	167.15	167.15	167.15	-	-	-	-	-	-
	광장15	-	"	2,072.25	2,072.25	2,072.25	2,072.25	-	-	-	-	-	-
	광장16	-	"	466.65	466.65	466.65	466.65	-	-	-	-	-	-
	광장17	-	"	106.46	106.46	106.46	106.46	-	-	-	-	-	-
	광장18	-	"	105.82	105.82	105.82	105.82	-	-	-	-	-	-
	광장19	-	"	1,395.50	1,395.50	1,395.50	1,395.50	-	-	-	-	-	-
	광장20	-	중구 중산동	634.13	634.13	634.13	634.13	-	-	-	-	-	-
	광장21	-	"	925.91	925.91	925.91	925.91	-	-	-	-	-	-
	광장22	-	"	7,463.11	7,463.11	7,463.11	7,463.11	-	-	-	-	-	-
	광장23	-	"	2,008.10	2,008.10	2,008.10	2,008.10	-	-	-	-	-	-
	광장24	-	"	3,834.48	3,834.48	3,834.48	3,834.48	-	-	-	-	-	-
	광장25	-	"	17,629.66	17,629.66	17,629.66	17,629.66	-	-	-	-	-	-
	광장26	-	"	1,085.73	1,085.73	1,085.73	1,085.73	-	-	-	-	-	-
	광장27	-	"	198.24	198.24	198.24	198.24	-	-	-	-	-	-
	광장28	-	"	118.89	118.89	118.89	118.89	-	-	-	-	-	-
광장29	-	"	706.85	706.85	706.85	706.85	-	-	-	-	-	-	
광장30	-	"	1,108.84	1,108.84	1,108.84	1,108.84	-	-	-	-	-	-	
광장31	-	"	284.48	284.48	284.48	284.48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조경 시설	소 계			604.00	604.00	604.00	604.00	-	-	-	375	375	
	가벽	A-1	중구 운남동	-	-	-	-	-	-	-	5	5	-
	경관폴딩	A-2	"	-	-	-	-	-	-	-	10	10	-
	경관폭포	A-3	"	-	-	-	-	-	-	-	1	1	-
	경관플랜터	A-4	"	-	-	-	-	-	-	-	1	1	-
	성벽	A-5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조경 시설	습지	A-6	중구 운남동	604.00	604.00	604.00	604.00	-	-	-	1	1	-
	앉음벽	A-7	"	-	-	-	-	-	-	-	1	1	-
	암석원	A-8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전망대	A-9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조형물	A-10	"	-	-	-	-	-	-	-	234	234	-
	바닥분수	A-11	"	-	-	-	-	-	-	-	4	4	-
	조형분수	A-12	"	-	-	-	-	-	-	-	1	1	-
	조형열주	A-13	"	-	-	-	-	-	-	-	43	43	-
	조형폴리	A-14	"	-	-	-	-	-	-	-	1	1	-
	플랜터	A-15	"	-	-	-	-	-	-	-	37	37	-
	자연석	A-16	"	-	-	-	-	-	-	-	31	31	-
	조경석	A-17	"	-	-	-	-	-	-	-	1	1	-
성곽석	A-18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휴양 시설	소 계			7,439.18	7,439.18	7,439.18	7,439.18	-	-	-	665	665	-
	경로당	나-1	중구 운남동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
	휴게소1	나-2	"	42.18	42.18	42.18	42.18	-	-	-	-	-	-
	휴게소2	나-3	"	70.00	70.00	70.00	70.00	-	-	-	-	-	-
	휴게소3	나-4	"	70.00	70.00	70.00	70.00	-	-	-	-	-	-
	휴게소4	나-5	"	160.96	160.96	160.96	160.96	-	-	-	-	-	-
	휴게소5	나-6	"	245.64	245.64	245.64	245.64	-	-	-	-	-	-
	휴게소6	나-7	중구 중산동	34.40	34.40	34.40	34.40	-	-	-	-	-	-
	휴게소7	나-8	"	35.36	35.36	35.36	35.36	-	-	-	-	-	-
	휴게소8	나-9	"	50.00	50.00	50.00	50.00	-	-	-	-	-	-
	휴게소9	나-10	"	39.18	39.18	39.18	39.18	-	-	-	-	-	-
	캠핑장	나-11	중구 운남동	4,500.75	4,500.75	4,500.75	4,500.75	-	-	-	-	-	-
	오토캠핑장	나-12	"	1,690.71	1,690.71	1,690.71	1,690.71	-	-	-	-	-	-
	누각	B-1	"	-	-	-	-	-	-	-	1	1	-
	초정	B-2	"	-	-	-	-	-	-	-	2	2	-
	팔각정자	B-3	"	-	-	-	-	-	-	-	2	2	-
	막구조파고라	B-4	"	-	-	-	-	-	-	-	5	5	-
	막구조파고라 (야외부대)	B-5	"	-	-	-	-	-	-	-	3	3	-
	연식파고라	B-6	"	-	-	-	-	-	-	-	3	3	-
	조형파고라	B-7	"	-	-	-	-	-	-	-	13	13	-
파고라	B-8	"	-	-	-	-	-	-	-	56	56	-	
쉼터	B-9	"	-	-	-	-	-	-	-	16	16	-	
등의자	B-10	"	-	-	-	-	-	-	-	242	242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휴양 시설	평의자	B-11	"	-	-	-	-	-	-	-	168	168	-	
	조형의자	B-12	"	-	-	-	-	-	-	-	71	71	-	
	스탠드	B-13	"	-	-	-	-	-	-	-	2	2	-	
	파도스탠드	B-14	"	-	-	-	-	-	-	-	1	1	-	
	썬베드	B-15	"	-	-	-	-	-	-	-	9	9	-	
	야외테이블	B-16	"	-	-	-	-	-	-	-	9	9	-	
	세족장	B-17	"	-	-	-	-	-	-	-	2	2	-	
	족욕장	B-18	"	-	-	-	-	-	-	-	1	1	-	
	평상	B-19	"	-	-	-	-	-	-	-	59	59	-	
유희 시설	소 계			5,487.65	5,487.65	5,487.65	5,487.65	-	-	-	35	35	-	
	어린이놀이터1	다-1	중구 운남동	1,052.90	1,052.90	1,052.90	1,052.90	-	-	-	-	-	-	
	어린이놀이터2	다-2	"	164.12	164.12	164.12	164.12	-	-	-	-	-	-	
	어린이놀이터3	다-3	"	781.38	781.38	781.38	781.38	-	-	-	-	-	-	
	물놀이장	다-4	중구 중산동	1,309.60	1,309.60	1,309.60	1,309.60	-	-	-	-	-	-	
	숲체험장	다-5	"	2,179.65	2,179.65	2,179.65	2,179.65	-	-	-	-	-	-	
	레일마이크	C-1	중구 운남동	-	-	-	-	-	-	-	-	-	-	-
	그네	C-2	"	-	-	-	-	-	-	-	1	1	-	
	새싹네트균형잡기	C-3	"	-	-	-	-	-	-	-	3	3	-	
	수경놀이시설	C-4	"	-	-	-	-	-	-	-	1	1	-	
	숲속놀이시설	C-5	"	-	-	-	-	-	-	-	3	3	-	
	시소	C-6	"	-	-	-	-	-	-	-	10	10	-	
	육각네트	C-7	"	-	-	-	-	-	-	-	2	2	-	
	조합놀이대	C-8	"	-	-	-	-	-	-	-	6	6	-	
	점핑대	C-9	"	-	-	-	-	-	-	-	6	6	-	
트랩폴린	C-10	"	-	-	-	-	-	-	-	2	2	-		
흔들놀이	C-11	"	-	-	-	-	-	-	-	1	1	-		
운동 시설	소 계			5,297.18	5,297.18	5,297.18	5,297.18	-	-	-	38	38	-	
	운동공간1	라-1	중구 운남동	648.24	648.24	648.24	648.24	-	-	-	-	-	-	
	운동공간2	라-2	"	1,780.80	1,780.80	1,780.80	1,780.80	-	-	-	-	-	-	
	운동공간3	라-3	"	1,024.49	1,024.49	1,024.49	1,024.49	-	-	-	-	-	-	
	운동공간4	라-4	"	588.72	588.72	588.72	588.72	-	-	-	-	-	-	
	운동공간5	라-5	"	591.36	591.36	591.36	591.36	-	-	-	-	-	-	
	운동공간6	라-6	"	663.57	663.57	663.57	663.57	-	-	-	-	-	-	
	게이트볼장	D-1	"	-	-	-	-	-	-	-	2	1	공작물 감) 1개소	
	스케이트파크	D-1	"	-	-	-	-	-	-	-	-	1	1	공작물 증) 1개소
	배드민턴장 (족구장겸용)	D-2	"	-	-	-	-	-	-	-	1	1	-	
	테니스장(3면)	D-3	"	-	-	-	-	-	-	-	1	1	-	
	조립식수영장	D-4	"	-	-	-	-	-	-	-	1	1	-	
	풋살장	D-5	"	-	-	-	-	-	-	-	1	1	-	
농구대	D-6	"	-	-	-	-	-	-	-	6	6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운동 시설	족구지주	D-7	"	-	-	-	-	-	-	-	1	1	-
	공중건기	D-8	"	-	-	-	-	-	-	-	6	6	-
	등허리지압기	D-9	"	-	-	-	-	-	-	-	6	6	-
	어깨유연성운동	D-10	"	-	-	-	-	-	-	-	2	2	-
	역기내리기	D-11	"	-	-	-	-	-	-	-	2	2	-
	오금퍼기	D-12	"	-	-	-	-	-	-	-	2	2	-
	파도타기	D-13	"	-	-	-	-	-	-	-	3	3	-
	허리돌리기	D-14	"	-	-	-	-	-	-	-	4	4	-
교양 시설	소 계			98,362.02	98,362.02	98,362.02	98,362.02	지상층	1,735.99	2,936.12	11	11	-
	염전보존지역	마-1	중구 운남동	82,300.75	82,300.75	82,300.75	82,300.75	-	-	-	-	-	-
	세계여행박물관	마-2	중구 중산동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	-	-	-	-
	영종역사문화관	마-3	"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지상층	1,735.99	2,936.12	-	-	-
	청소년수련시설	마-4	중구 운남동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	-	-	-	-
	염전테크	E-1	"	3,179.00	3,179.00	3,179.00	3,179.00	-	-	-	6	6	-
	조류관찰대	E-2	"	-	-	-	-	-	-	-	2	2	-
	야외무대	E-3	"	882.27	882.27	882.27	882.27	-	-	-	3	3	-
관리 시설	소 계			13,578.84	13,578.84	13,578.84	13,578.84	지상 1층 ~ 2층	829.17	989.89	1,355	1,355	-
	관리사무소	사-1	중구 운남동	812.40	812.40	812.40	812.40	-	-	-	-	-	-
	거리안내판	G-1	"	-	-	-	-	-	-	-	43	43	-
	종합안내판	G-2	"	-	-	-	-	-	-	-	12	12	-
	시설안내판	G-3	"	-	-	-	-	-	-	-	117	117	-
	경계웬스 (체육시설)	G-4	"	-	-	-	-	-	-	-	1	1	-
	안전웬스	G-5	"	-	-	-	-	-	-	-	1	1	-
	바이크스테이션	G-6	"	-	-	-	-	-	-	-	2	2	-
	캐노피	G-7	"	-	-	-	-	-	-	-	4	4	-
	턴테이블	G-8	"	-	-	-	-	-	-	-	4	4	-
	자전거보관대	G-9	"	-	-	-	-	-	-	-	5	5	-
	반사경	G-10	"	-	-	-	-	-	-	-	14	14	-
	블라드	G-11	"	-	-	-	-	-	-	-	161	161	-
	스테인리스블라드	G-12	"	-	-	-	-	-	-	-	29	29	-
	솔라블라드	G-13	"	-	-	-	-	-	-	-	11	11	-
	사각수목보호틀	G-14	"	-	-	-	-	-	-	-	33	33	-
	자바라대문	G-15	"	-	-	-	-	-	-	-	3	3	-
	철도건설목	G-16	"	-	-	-	-	-	-	-	13	13	-
	카스토퍼	G-17	"	-	-	-	-	-	-	-	1	1	-
	판독A	G-18	"	-	-	-	-	-	-	-	1	1	-
	판독B	G-19	"	-	-	-	-	-	-	-	891	891	-
	해 주	G-20	"	-	-	-	-	-	-	-	8	8	-
흑칠판	G-21	"	-	-	-	-	-	-	-	1	1	-	
월과벽	G-22	"	12,490.19	12,490.19	12,490.19	12,490.19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관리 시설	염전창고모형1	G-23	"	88.50	88.50	88.50	88.50	지상 1층	88.50	88.50	-	-	-
	염전창고모형2	G-24	"	52.75	52.75	52.75	52.75	"	52.75	52.75	-	-	-
	염전창고모형3	G-25	"	135.00	135.00	135.00	135.00	"	135.00	135.00	-	-	-
	관리사무소	G-26	중구 중산동	-	-	-	-	지상 2층	139.14	299.86	-	-	-
	관리실(염전)	G-27	중구 운남동	-	-	-	-	지상 1층	44.78	44.78	-	-	-
	관리실1	G-28	중구 중산동	-	-	-	-	"	60.00	60.00	-	-	-
	관리실2	G-29	"	-	-	-	-	"	18.00	18.00	-	-	-
관리 시설	관리실(창고)1	G-30	중구 운남동	-	-	-	-	"	84.00	84.00	-	-	4동
	관리실(창고)2	G-31	"	-	-	-	-	"	18.00	18.00	-	-	-
	관리실(대기실)1	G-32	"	-	-	-	-	"	36.00	36.00	-	-	-
	관리실(대기실)2	G-33	중구 중산동	-	-	-	-	"	27.00	27.00	-	-	-
	관리실(테니스장)	G-34	중구 운남동	-	-	-	-	"	21.00	21.00	-	-	-
	관리실(초소)1	G-35	중구 중산동	-	-	-	-	"	9.00	9.00	-	-	-
	관리실(초소)2	G-36	"	-	-	-	-	"	9.00	9.00	-	-	-
	관리실(교육장)1	G-37	"	-	-	-	-	"	18.00	18.00	-	-	-
	관리실(교육장)2	G-38	"	-	-	-	-	"	15.00	15.00	-	-	-
	관리실(레일바이크)	G-39	"	-	-	-	-	"	27.00	27.00	-	-	-
	창고(카라반)	G-40	중구 운남동	-	-	-	-	"	27.00	27.00	-	-	-
편익 시설	소 계			19,032.68	25,358.35	19,032.68	25,358.35	지상 1층 ~ 2층	1,225.08	1,616.74	161	161	시설면적(중) 6,325.67㎡ 건축물(중) 3동
	주차장1	바-1	중구 운남동	1,134.31	1,134.31	1,134.31	1,134.31	-	-	-	-	-	-
	주차장2	바-2	"	3,042.06	3,042.06	3,042.06	3,042.06	-	-	-	-	-	-
	주차장3	바-3	"	1,291.05	1,291.05	1,291.05	1,291.05	-	-	-	-	-	-
	주차장4	바-4	"	731.66	731.66	731.66	731.66	-	-	-	-	-	-
	주차장5	바-5	"	2,265.00	2,265.00	2,265.00	2,265.00	-	-	-	-	-	-
	주차장6	바-6	"	980.75	980.75	980.75	980.75	-	-	-	-	-	-
	주차장7	바-7	"	501.27	501.27	501.27	501.27	-	-	-	-	-	-
	주차장8	바-8	"	359.88	359.88	359.88	359.88	-	-	-	-	-	-
	주차장9	바-9	중구 중산동	4,335.22	4,335.22	4,335.22	4,335.22	-	-	-	-	-	-
	주차장10	바-10	"	622.61	622.61	622.61	622.61	-	-	-	-	-	-
	주차장11	바-11	"	1,385.27	1,385.27	1,385.27	1,385.27	-	-	-	-	-	-
	주차장12	바-12	"	1,752.15	1,752.15	1,752.15	1,752.15	-	-	-	-	-	-
	화장실	-	중구 운남동	374.76	374.76	374.76	374.76	-	-	-	-	-	-
	화장실1	F-6	"	-	-	-	-	지상 1층	18.00	18.00	-	-	-
	화장실2	F-7	"	-	-	-	-	"	12.50	12.50	-	-	-
	화장실3	F-8	"	-	-	-	-	"	65.64	65.64	-	-	-
	화장실4	F-9	"	-	-	-	-	"	120.18	120.18	-	-	-
	화장실5	F-10	"	-	-	-	-	"	22.50	22.50	-	-	-
화장실6	F-11	"	-	-	-	-	"	38.76	38.76	-	-	-	
화장실7	F-12	"	-	-	-	-	"	43.70	43.70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편익 시설	화장실8	F-13	"	-	-	-	-	"	27.40	27.40	-	-	-
	매점	F-1	"	-	-	-	-	"	18.00	18.00	-	-	-
	주차장13	바-14	"	-	3,583.87	-	3,583.87	-	-	-	-	-	시설면적 증) 3,583.87㎡
	주차장14	바-15	"	-	621.51	-	621.51	-	-	-	-	-	시설면적 증) 621.51㎡
	주차장15	바-16	중구 중산동	-	420.00	-	420.00	-	-	-	-	-	시설면적 증) 420.00㎡
	주차장16	바-17	"	-	988.21	-	988.21	-	-	-	-	-	시설면적 증) 988.21㎡
편익 시설	매표소	F-2	중구 운남동	-	-	-	-	지상 1층	30.00	30.00	-	-	-
	매표소 및 매점1	F-3	"	-	-	-	-	"	21.00	21.00	-	-	-
	매표소 및 매점2	F-4	중구 중산동	-	-	-	-	"	28.70	28.70	-	-	-
	카페테리아	F-5	"	-	679.08	-	679.08	지상 2층	570.48	962.14	-	-	시설면적 증) 679.08㎡ 건축물 증) 1동
	화장실9	F-29	중구 중산동	-	33.0	-	33.0	자양층	33.0	33.0	-	-	시설면적 증) 33.00㎡ 건축물 증) 1동
	레일바이크화장실	F-14	"	-	-	-	-	"	39.36	39.36	-	-	-
	레일바이크휴게실	F-15	"	-	-	-	-	"	92.16	92.16	-	-	-
	공동취사장	F-16	중구 운남동	206.84	206.84	206.84	206.84	"	43.70	43.70	-	-	건축물 증) 1동
	목재계단	F-17	"	-	-	-	-	-	-	-	24	24	-
	석재계단	F-18	"	-	-	-	-	-	-	-	1	1	-
	철재계단	F-19	"	-	-	-	-	-	-	-	2	2	-
	목재램프	F-20	"	-	-	-	-	-	-	-	1	1	-
	목재테크	F-21	"	-	-	-	-	-	-	-	6	6	-
	물놀이장테크	F-22	"	-	-	-	-	-	-	-	1	1	-
	스카이테크	F-23	"	-	-	-	-	-	-	-	1	1	-
	레일바이크탑승장	F-24	"	-	-	-	-	-	-	-	1	1	-
전망테크	F-25	"	49.85	49.85	49.85	49.85	-	-	-	9	9	-	
약수터	F-26	"	-	-	-	-	-	-	-	1	1	-	
음수전	F-27	"	-	-	-	-	-	-	-	1	1	-	
디딤돌	F-28	"	-	-	-	-	-	-	-	113	113	-	
녹지및 기타	소 계			1,427,763.8	1,421,438.13	-	-	-	-	-	-	-	녹지면적 감) 6,325.67㎡
	녹지	-	전지역	1,427,763.8	1,421,438.13	-	-	-	-	-	-	-	녹지면적 감) 6,325.67㎡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22,372.26	139,441.33	-	-	-	
기정	소로	3류	진1	2.0	43.94	87.87	진입로	북측경계	연114	
기정	소로	3류	진2	3.8	35.01	133.05	진입로	북측경계	진3	
기정	소로	3류	진3	3.0	40.79	122.37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류	진4	3.0	28.0	84.01	진입로	광장4	연8	
기정	소로	3류	진5	3.0	85.08	255.25	진입로	광장6	연8	
기정	소로	3류	진6	4.5	29.44	132.47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7	
기정	소로	3류	진7	4.0	44.18	176.70	진입로	광장8	연3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진8	3.0	39.95	119.86	진입로	서측경계	연36	
기정	소로	3류	진9	6.5	8.74	56.83	진입로	서측경계	주차장3	
기정	소로	3류	진10	2.0	33.83	67.65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2	
기정	소로	3류	진11	1.5	19.42	29.13	진입로	북측경계	연46	
기정	소로	3류	진12	2.0	45.4	90.80	진입로	북측경계	연48	
기정	소로	3류	진13	1.5	22.37	33.56	진입로	북측경계	연52	
기정	소로	3류	진14	2.0	61.93	123.86	진입로	북측경계	연53	
기정	소로	3류	진15	6.0	140.77	844.60	진입로	북측경계	주차장6	
기정	소로	3류	진16	2.0	41.42	82.83	진입로	북측경계	주차장5	
기정	소로	3류	진17	9.5	100.38	953.59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5	
기정	소로	3류	진18	3.0	190.07	570.22	진입로	연114	연114	
기정	소로	3류	진19	6.0	160.11	960.64	진입로	연114	북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진20	4.0	459.36	1837.42	진입로	주차장10	광장25	
기정	소로	3류	진21	4.0	260.72	1042.88	진입로	동측경계	주차장10	
기정	소로	3류	진22	3.5	11.86	41.52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진23	3.0	6.14	18.43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진24	6.5	110.92	722.88	진입로	서측경계	주차장11	
기정	소로	3류	진25	2.0	107.67	215.34	진입로	북측경계	연96	
기정	소로	3류	진26	4.5	27.98	125.93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진27	5.0	133.4	666.98	진입로	남측경계	연110	
기정	소로	3류	진28	3.0	61.38	184.14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31	
기정	소로	3류	진29	7.36	5.65	41.05	진입로	동측경계	주차장13	
기정	소로	3류	연1	2.0	32.88	65.76	연결로	주차장2	연2	
기정	소로	3류	연2	15.0	9.68	145.13	연결로	북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류	연3	3.0	223.57	670.71	연결로	광장2	광장3	
기정	소로	3류	연4	1.5	77.33	115.99	연결로	연3	연5	
기정	소로	3류	연5	2.0	32.14	64.28	연결로	연14	광장3	
기정	소로	3류	연6	1.5	7.87	11.80	연결로	광장3	연7	
기정	소로	3류	연7	2.0	126.82	253.64	연결로	연13	연13	
기정	소로	3류	연8	3.0	211.38	634.13	연결로	광장3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9	1.5	23.37	35.05	연결로	연7	연8	
기정	소로	3류	연10	2.0	10.5	21.00	연결로	연114	연13	
기정	소로	3류	연11	2.0	15.66	31.31	연결로	연13	연14	
기정	소로	3류	연12	2.0	22.13	44.26	연결로	연14	광장5	
기정	소로	3류	연13	1.5	331.86	497.79	연결로	연5	연21	
기정	소로	3류	연14	1.5	81.5	122.25	연결로	연7	연13	
기정	소로	3류	연15	1.5	215.14	322.71	연결로	연14	연16	
기정	소로	3류	연16	2.0	17.5	35.00	연결로	연17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17	2.0	9.45	18.90	연결로	연114	연13	
기정	소로	3류	연18	1.5	52.25	78.38	연결로	연16	연1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연19	1.2	29.43	35.31	연결로	연18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20	1.5	37.4	56.10	연결로	연13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21	2.0	27.04	54.07	연결로	연114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22	2.0	7.82	15.64	연결로	연114	휴게소1	
기정	소로	3류	연23	5.0	20.97	104.85	연결로	광장7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4	3.0	20.63	61.88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5	4.0	35.32	141.28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6	4.0	32.57	130.26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7	8.0	32.64	261.14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8	4.0	225.14	900.56	연결로	연21	연33	
기정	소로	3류	연29	1.5	6.35	9.52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0	2.0	7.87	15.74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1	2.0	7.61	15.21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2	2.0	7.49	14.97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3	3.0	234.39	703.17	연결로	광장7	연114	
기정	소로	3류	진18	3.0	190.07	570.22	진입로	연114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34	5.0	126.51	632.54	연결로	연33	연37	
기정	소로	3류	연35	1.5	24.81	37.22	연결로	연33	주차장4	
기정	소로	3류	연36	2.0	46.39	92.77	연결로	주차장3	연37	
기정	소로	3류	연37	6.0	101.55	609.29	연결로	주차장3	주차장4	
기정	소로	3류	연38	3.0	82.96	248.88	연결로	연37	광장10	
기정	소로	3류	연39	2.0	47.65	106.83	연결로	주차장14	광장10	
기정	소로	3류	연40	1.5	100.46	150.69	연결로	광장11	광장12	
기정	소로	3류	연41	1.5	104.29	156.44	연결로	연39	연40	
기정	소로	3류	연42	1.5	118.54	177.81	연결로	연39	연43	
기정	소로	3류	연43	2.0	34.96	69.91	연결로	광장12	염전테크	
기정	소로	3류	연44	1.5	140.26	210.39	연결로	연43	진13	
기정	소로	3류	연45	1.5	48.59	72.89	연결로	연46	연44	
기정	소로	3류	연46	1.5	143.19	214.78	연결로	광장12	진13	
기정	소로	3류	연47	1.5	40.17	60.25	연결로	진13	연48	
기정	소로	3류	연48	2.0	47.5	94.99	연결로	염전테크	광장13	
기정	소로	3류	연49	1.5	16.73	25.1	연결로	진13	연48	
기정	소로	3류	연50	1.5	22.87	34.31	연결로	연48	염전테크	
기정	소로	3류	연51	1.5	42.99	64.49	연결로	광장13	연52	
기정	소로	3류	연52	1.5	215.19	322.78	연결로	염전테크	진16	
기정	소로	3류	연53	1.5	123.64	185.46	연결로	연52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54	1.5	39.04	58.56	연결로	진416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55	2.5	37.64	94.11	연결로	광장14	주차장5	
기정	소로	3류	연56	2.0	57.38	114.75	연결로	주차장5	주차장5	
기정	소로	3류	연57	2.0	43.93	87.85	연결로	주차장5	진망테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연58	2.0	20.0	38.83	연결로	주차장14	연57	
기정	소로	3류	연59	2.5	60.57	151.42	연결로	연58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60	3.0	497.3	1491.9	연결로	주차장4	연59	
기정	소로	3류	연61	1.5	91.75	137.63	연결로	연60	연60	
기정	소로	3류	연62	6.0	18.07	108.42	연결로	목계테크	연64	
기정	소로	3류	연63	1.0	21.86	21.86	연결로	연62	진20	
기정	소로	3류	연64	2.0	35.62	71.23	연결로	진20	진20	
기정	소로	3류	연65	2.0	121.51	243.01	연결로	진20	진20	
기정	소로	3류	연66	2.0	118.07	236.13	연결로	연67	공원경계	
기정	소로	3류	연67	6.0	360.03	2160.19	연결로	연114	연72	
기정	소로	3류	연68	1.5	163.32	244.98	연결로	연67	연67	
기정	소로	3류	연69	6.0	9.04	54.25	연결로	연114	연67	
기정	소로	3류	연70	2.0	93.67	187.34	연결로	산7	휴게소3	
기정	소로	3류	연71	2.5	146.12	365.31	연결로	남측경계	북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연72	8.0	12.86	102.89	연결로	연114	도로	
기정	소로	3류	연73	3.0	6.77	20.3	연결로	동측경계	광장21	
기정	소로	3류	연74	2.0	49.49	98.98	연결로	산11	주차장9	
기정	소로	3류	연75	3.5	202.54	708.9	연결로	주차장9	산15	
기정	소로	3류	연76	2.0	13.12	26.24	연결로	광장24	연77	
기정	소로	3류	연77	2.0	176.85	353.7	연결로	진22	연80	
기정	소로	3류	연78	2.0	10.25	20.5	연결로	연77	연82	
기정	소로	3류	연79	2.0	8.3	16.59	연결로	연77	연82	
기정	소로	3류	연80	2.0	38.87	77.74	연결로	진22	연82	
기정	소로	3류	연81	2.0	11.08	22.15	연결로	연82	연84	
기정	소로	3류	연82	3.0	111.60	334.79	연결로	연89	연86	
기정	소로	3류	연83	2.0	28.53	57.05	연결로	연82	연84	
기정	소로	3류	연84	2.0	137.20	274.4	연결로	연89	연82	
기정	소로	3류	연85	2.5	12.44	31.1	연결로	연84	연86	
기정	소로	3류	연86	2.5	337.19	842.97	연결로	광장24	연89	
기정	소로	3류	연87	3.0	33.53	100.59	연결로	연86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88	3.0	58.02	174.06	연결로	연89	연86	
기정	소로	3류	연89	7.5	268.61	2014.61	연결로	진22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90	7.5	214.60	1609.5	연결로	북측경계	광장27	
기정	소로	3류	연91	3.0	272.01	816.02	연결로	진23	연90	
기정	소로	3류	연92	1.5	841.48	1262.22	연결로	광장28	광장27	
기정	소로	3류	연93	2.0	141.89	283.39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연94	3.0	28.36	107.17	연결로	북측경계	주차장15	
기정	소로	3류	연95	5.0	184.02	920.09	연결로	주차장11	야외무대2	
기정	소로	3류	연96	3.5	178.32	624.11	연결로	연95	광장31	
기정	소로	3류	연97	2.0	253.73	507.45	연결로	연95	광장3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연98	2.5	32.18	80.46	연결로	연96	연97	
기정	소로	3류	연99	2.5	28.47	71.18	연결로	연96	연97	
기정	소로	3류	연100	1.5	109.68	164.52	연결로	연97	연104	
기정	소로	3류	연101	1.5	10.39	15.58	연결로	연100	광장30	
기정	소로	3류	연102	1.5	11.20	16.80	연결로	연103	광장30	
기정	소로	3류	연103	1.5	88.91	133.36	연결로	연108	연104	
기정	소로	3류	연104	1.5	44.57	66.86	연결로	광장31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05	1.5	39.88	59.82	연결로	광장31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06	1.5	72.85	109.27	연결로	연104	연105	
기정	소로	3류	연107	1.5	30.71	46.06	연결로	연105	광장32	
기정	소로	3류	연108	3.5	339.32	1187.63	연결로	광장31	연95	
기정	소로	3류	연109	3.5	94.59	331.05	연결로	야외무대2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06	1.5	72.85	109.27	연결로	연104	연105	
기정	소로	3류	연107	1.5	30.71	46.06	연결로	연105	광장32	
기정	소로	3류	연108	3.5	339.32	1187.63	연결로	광장31	연95	
기정	소로	3류	연109	3.5	94.59	331.05	연결로	야외무대2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10	1.5	20.91	31.36	연결로	야외무대2	진29	
기정	소로	3류	연111	1.8	79.11	142.39	연결로	진30	진30	
기정	소로	3류	연112	1.8	58.07	104.52	연결로	진30	진30	
기정	소로	3류	연113	1.5	21.38	32.07	연결로	주차장12	진26	
기정	소로	3류	연114	1.5	8.46	12.69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28	
기정	중로	1류	연115	20.0	4488.33	89766.51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연116	10.0	8.08	80.77	연결로	연115	주차장2	
기정	소로	3류	연117	2.0	47.05	112.35	연결로	엄전테크	주차장14	
기정	소로	3류	산1	2.0	314.45	628.89	산책로	광장16	산2	
기정	소로	3류	산2	1.5	342.22	513.33	산책로	북측경계	광장17	
기정	소로	3류	산3	2.0	821.01	1642.02	산책로	산1	광장17	
기정	소로	3류	산4	2.0	291.98	583.96	산책로	산3	광장19	
기정	소로	3류	산5	2.0	207.49	414.97	산책로	산4	휴게소2	
기정	소로	3류	산6	2.0	507.30	1014.6	산책로	산3	광장18	
기정	소로	3류	산7	2.0	498.69	997.37	산책로	광장18	연70	
기정	소로	3류	산8	2.0	291.28	582.56	산책로	산7	북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산9	2.0	191.55	383.09	산책로	산8	광장21	
기정	소로	3류	산10	2.0	178.81	357.62	산책로	산7	광장21	
기정	소로	3류	산11	2.0	161.13	322.25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22	
기정	소로	3류	산12	2.0	19.52	39.04	산책로	광장22	산14	
기정	소로	3류	산13	2.0	109.87	219.74	산책로	주차장9	산14	
기정	소로	3류	산14	2.0	157.16	314.31	산책로	산11	연75	
기정	소로	3류	산15	2.0	7.68	15.35	산책로	연75	동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산16	2.0	125.0	250.00	산책로	연95	산17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1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26-55,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무지개공원 (제1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26-55, 공	43,500.00	43,441.10	감)58.9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3,500.00	43,441.10	12,497.76	14,002.70	-	1	-	25.00	-	25.00	121	155	부지면적 감) 58.90㎡ 시설면적 증) 1,504.94㎡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34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9,792.80	11,583.18	9,792.80	11,583.18	-	-	-	-	-	-	-	-	시설면적 증) 1,790.38㎡
	도로	6,572.28	8,262.84	6,572.28	8,262.84	-	-	-	-	-	-	-	-	시설면적 증) 1,690.56㎡
	광장	3,220.52	3,320.34	3,220.52	3,320.34	-	-	-	-	-	-	-	-	시설면적 증) 99.82㎡
휴양시설	-	-	-	-	-	-	-	-	-	-	59	63	공작물 증) 4개소	
유희시설	1,526.16	1,530.24	1,526.16	1,530.24	-	-	-	-	-	-	21	21	시설면적 증) 4.08㎡	
운동시설	1,178.80	850.88	1,178.80	850.88	-	-	-	-	-	-	19	20	시설면적 감) 327.92㎡ 공작물 증) 1개소	
관리시설	-	-	-	-	-	-	-	-	-	-	22	51	공작물 증) 29개소	
편익시설	-	38.40	-	38.40	-	1	-	25.00	-	25.00	-	-	시설면적 증) 38.4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기타	31,002.24	29,438.40	-	-	-	-	-	-	-	-	-	-	녹지면적 감) 1,563.84㎡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중산동	43,500.00	43,441.10	12,497.76	14,002.70	지상 1층	25.00	25.00	121	155	부지면적 감) 58.90㎡ 시설면적 증) 1,504.94㎡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34개소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소 계			9,792.80	11,583.18	9,792.80	11,583.18	-	-	-	-	-	시설면적 증) 1,790.38m <sup>2</sup>
	도로	-	중구 중산동	6,572.28	8,262.84	6,572.28	8,262.84	-	-	-	-	-	시설면적 증) 1,690.56m <sup>2</sup>
	광장	-	"	3,220.52	3,320.34	3,220.52	3,320.34	-	-	-	-	-	시설면적 증) 99.82m <sup>2</sup>
도로 및 광장	광장1	-	"	531.71	531.71	531.71	531.71	-	-	-	-	-	-
	광장2	-	"	145.71	148.78	145.71	148.78	-	-	-	-	-	시설면적 증) 3.07m <sup>2</sup>
	광장3	-	"	2,118.99	2,167.32	2,118.99	2,167.32	-	-	-	-	-	시설면적 증) 48.33m <sup>2</sup>
	광장4	-	"	121.01	298.62	121.01	298.62	-	-	-	-	-	시설면적 증) 177.61m <sup>2</sup>
	광장5	-	"	179.30	173.91	179.30	173.91	-	-	-	-	-	시설면적 감) 5.39m <sup>2</sup>
	광장6	-	"	123.80	-	123.80	-	-	-	-	-	-	시설면적 감) 123.80m <sup>2</sup>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59	63	공작물 증) 4개소
	연결형파고라A	A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사각파고라	B	"	-	-	-	-	-	-	-	3	4	공작물 증) 1개소
	등의자	C	"	-	-	-	-	-	-	-	42	41	공작물 감) 1개소
	평의자	D	"	-	-	-	-	-	-	-	12	16	공작물 증) 4개소
	앉음벽	E	"	-	-	-	-	-	-	-	1	1	-
유희 시설	소 계			1,526.16	1,530.24	1,526.16	1,530.24	-	-	-	21	21	시설면적 증) 4.08m <sup>2</sup>
	어린이놀이터1	-	중구 중산동	355.15	564.78	355.15	564.78	-	-	-	-	-	시설면적 증) 209.63m <sup>2</sup>
	어린이놀이터2	-	"	536.92	396.24	536.92	396.24	-	-	-	-	-	시설면적 감) 140.68m <sup>2</sup>
	어린이놀이터3	-	"	634.09	569.22	634.09	569.22	-	-	-	-	-	시설면적 감) 64.87m <sup>2</sup>
	조합놀이대A	F	"	-	-	-	-	-	-	-	1	1	-
	조합놀이대B	G	"	-	-	-	-	-	-	-	1	1	-
	조합놀이대C	H	"	-	-	-	-	-	-	-	1	1	-
	시소	I	"	-	-	-	-	-	-	-	6	6	-
	흔들놀이	J	"	-	-	-	-	-	-	-	8	8	-
	그네	K	"	-	-	-	-	-	-	-	2	2	-
	기타놀이대	L	"	-	-	-	-	-	-	-	1	1	-
오르막놀이대	M	"	-	-	-	-	-	-	-	1	1	-	
운동 시설	소 계			1,178.80	850.88	1,178.80	850.88	-	-	-	19	20	시설면적 감) 327.92m <sup>2</sup> 공작물 증) 1개소
	다목적운동장	-	중구 중산동	265.90	-	265.90	-	-	-	-	-	-	시설면적 감) 265.90m <sup>2</sup>
	배드민턴장	-	"	564.60	415.28	564.60	415.28	-	-	-	-	-	시설면적 감) 149.32m <sup>2</sup>
	체력단련장1	-	"	81.10	135.30	81.10	135.30	-	-	-	-	-	시설면적 증) 54.20m <sup>2</sup>
	체력단련장2	-	"	116.90	150.00	116.90	150.00	-	-	-	-	-	시설면적 증) 33.10m <sup>2</sup>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운동 시설	체력단련장3	-	"	150.30	150.30	150.30	150.30	-	-	-	-	-	-
	단위운동시설	O	"	-	-	-	-	-	-	-	19	20	공작물 증) 1개소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22	51	공작물 증) 29개소
	읍수대	P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블라드	Q	"	-	-	-	-	-	-	-	9	37	공작물 증) 28개소
	자전거보관대	R	"	-	-	-	-	-	-	-	5	5	-
	안내판	S	"	-	-	-	-	-	-	-	7	7	-
	공원명칭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편의 시설	소 계			-	38.40	-	38.40	지상 1층	25.00	25.00	-	-	시설면적 증) 38.40㎡ 건축물 증) 1동
	화장실	-	"	-	38.40	-	38.40	지상 1층	25.00	25.00	-	-	시설면적 증) 38.4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 기타	소 계			31,002.24	29,438.40	-	-	-	-	-	-	-	녹지면적 감) 1,563.84㎡
	녹지	-	전지역	31,002.24	29,438.40	-	-	-	-	-	-	-	녹지면적 감) 1,563.84㎡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	1,916.90	6,572.28	-	-	-	도로연장 감) 39.58m 도로면적 증) 1,600.56㎡
변경					1,877.32	8,262.84				
기정	소로	3	진 1	4.0	193.5	773.92	진입로	광장1	광장2	
변경	소로	3	진 1	4.0	195.3	864.78	진입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	진 2	2.0	7.6	15.3	진입로	동측경계	산1	
변경	소로	3	진 2	5.5	14.8	99.56	진입로	동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진 3	2.0	20.3	40.68	진입로	서측경계	진1	
변경	소로	3	진 3	2.0	18.9	37.87	진입로	서측경계	산1	
기정	소로	3	진 4	2.0	28.1	56.18	진입로	동측경계	진1	
변경	소로	3	진 4	6.0	29.5	176.84	진입로	동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진 5	2.0	36.9	73.79	진입로	서측경계	진1	
변경	소로	3	진 5	2.0	36.3	72.59	진입로	서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진 6	2.0	33.4	66.73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2	
변경	소로	3	진 6	8.0	32.8	263.05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	진 7	2.0	30.6	61.25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	진 8	3.5	31.6	110.70	진입로	북측경계	진9	
변경	소로	3	진 8	8.0	45.3	344.88	진입로	북측경계	진9	
기정	소로	1	진 9	2.0	181.3	1548.16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3	
변경	소로	1	진 9	10.0	200.8	1750.98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3	
기정	소로	3	진 10	2.0	52.6	105.24	진입로	남측경계	진9	
변경	소로	3	진 10	8.0	45.1	350.37	진입로	남측경계	진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진 11	2.0	38.8	77.54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4	
변경	소로	3	진 11	2.0	25.1	50.31	진입로	서측경계	연12	
기정	소로	3	진 12	2.0	20.1	40.28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4	
변경	소로	3	진 12	6.0	37.7	229.09	진입로	남동측경계	연12	
기정	소로	3	진 13	2.0	33.0	68.24	진입로	동측경계	연14	
변경	소로	3	진 13	8.0	33.2	257.75	진입로	동측경계	연16	
기정	소로	3	진 14	4.0	19.4	77.65	진입로	동측경계	연14	
변경	소로	3	진 14	4.5	26.1	149.79	진입로	동측경계	연16	
기정	소로	3	연 1	2.0	7.7	15.59	연결로	산1	진1	
변경	소로	3	연 1	2.0	21.1	42.28	연결로	진1	연1	
기정	소로	3	연 2	2.0	22.0	44.03	연결로	진1	산2	
변경	소로	3	연 2	2.0	19.7	39.47	연결로	진1	산1	
기정	소로	3	연 3	2.0	22.0	44.08	연결로	진1	산2	
변경	소로	3	연 3	4.5	98.3	438.95	연결로	광장2	진9	
기정	소로	3	연 4	4.0	101.2	405.16	연결로	광장2	진9	
변경	소로	3	연 4	2.0	34.2	68.4	연결로	연3	광장3	
기정	소로	3	연 5	2.0	36.5	73.0	연결로	연4	광장3	
변경	소로	3	연 5	2.0	26.2	52.58	연결로	연3	광장3	
기정	소로	3	연 6	2.0	33.7	67.41	연결로	연4	광장3	
변경	소로	3	연 6	2.0	21.3	42.73	연결로	진9	놀이터2	
기정	소로	3	연 7	2.0	59.1	140.25	연결로	진9	진9	
변경	소로	3	연 7	2.0	25.1	50.28	연결로	진9	놀이터2	
기정	소로	3	연 8	2.0	43.8	87.68	연결로	진9	진9	
변경	소로	3	연 8	5.0	54.8	269.23	연결로	북측경계	진9	
기정	소로	3	연 9	4.0	28.1	112.62	연결로	진9	연10	
변경	소로	3	연 9	5.0	36.1	183.19	연결로	남측경계	진9	
기정	소로	3	연 10	2.0	34.4	69.03	연결로	광장3	녹지	
변경	소로	3	연 10	2.0	15.9	31.81	연결로	진9	체력단련장2	
기정	소로	3	연 11	4.0	47.8	191.18	연결로	연10	연12	
변경	소로	3	연 11	2.0	17.86	35.72	연결로	진9	체력단련장2	
기정	소로	3	연 12	2.0	38.8	97.21	연결로	광장4	광장3	
변경	소로	3	연 12	4.5	300.74	1354.7	연결로	진9	광장5	
기정	소로	3	연 13	4.0	20.8	83.54	연결로	연12	진11	
변경	소로	3	연 13	2.0	16.74	33.47	연결로	연12	광장3	
기정	소로	3	연 14	4.0	201.8	716.42	연결로	진11	광장6	
변경	소로	3	연 14	2.0	15.79	31.58	연결로	연12	광장3	
기정	소로	3	연 15	2.0	22.1	33.11	연결로	연14	산6	
변경	소로	3	연 15	2.0	57.3	118.2	연결로	연12	연12	
기정	소로	3	연 16	2.0	39.1	78.20	연결로	연14	연14	
변경	소로	3	연 16	2.0	17.11	34.21	연결로	연15	연12	
기정	소로	3	연 17	2.0	7.3	14.75	연결로	배드민턴장	연14	
변경	소로	3	연 17	2.0	39.18	78.35	연결로	연15	연12	
기정	소로	3	연 18	4.0	23.6	94.46	연결로	광장5	연1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소로	3	연 18	6.0	18.0	108.0	연결로	광장4	연12	
기정	소로	3	산 1	2.0	67.8	138.47	산책로	진1	진1	
변경	소로	3	산 1	2.0	86.2	172.26	산책로	진1	진5	
기정	소로	3	산 2	2.0	86.2	172.48	산책로	진1	진5	
변경	소로	3	산 2	2.0	31.8	63.58	산책로	진5	진7	
기정	소로	3	산 3	2.0	31.8	63.58	산책로	진5	진7	
변경	소로	3	산 3	2.0	47.9	95.75	산책로	진7	광장3	
기정	소로	3	산 4	2.0	49.4	98.88	산책로	진7	광장3	
변경	소로	3	산 4	2.0	40.24	80.48	산책로	광장3	진11	
기정	소로	3	산 5	2.0	38.5	77.15	산책로	광장3	진11	
변경	소로	3	산 5	2.0	64.26	128.51	산책로	진11	연15	
기정	소로	3	산 6	2.0	61.6	123.29	산책로	진11	연16	
변경	소로	3	산 6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 7	2.0	55.6	122.08	산책로	연14	진14	
변경	소로	3	산 7	-	-	-	-	-	-	폐지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2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35-13,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해변공원 (제2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35-13, 공	18,959.00	19,481.50	증)522.5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959.00	19,481.50	7,331.04	7,755.96	-	1	-	25.00	-	25.00	77	67	부지면적 증) 522.50㎡ 시설면적 증) 424.92㎡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0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6,608.14	5,687.39	6,608.14	5,687.39	-	-	-	-	-	-	-	시설면적 감) 920.75㎡
	도로	3,953.01	2,655.25	3,953.01	2,655.25	-	-	-	-	-	-	-	시설면적 감) 1,297.76㎡
	광장	2,655.13	3,032.14	2,655.13	3,032.14	-	-	-	-	-	-	-	시설면적 증) 377.01㎡
휴양시설	-	88.55	-	88.55	-	-	-	-	-	-	43	27	시설면적 증) 88.55㎡ 공작물 감) 16개소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흥시설	652.80	476.30	652.80	476.30	-	-	-	-	-	-	11	2	시설면적 감) 176.50㎡ 공작물 감) 9개소
운동시설	70.10	422.13	70.10	422.13	-	-	-	-	-	-	8	-	시설면적 증) 352.03㎡ 공작물 감) 8개소
관리시설	-	1,046.59	-	1,046.59	-	-	-	-	-	-	15	38	시설면적 증) 1,046.59㎡ 공작물 증) 23개소
편익시설	-	35.00	-	35.00	-	1	-	25.00	-	25.00	-	-	시설면적 증) 35.0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기타	11,627.96	11,725.54	-	-	-	-	-	-	-	-	-	-	녹지면적 증) 97.58㎡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중산동	18,959.00	19,481.50	7,331.04	7,755.96	지상 1층	25.00	25.00	77	67	부지면적 증) 522.50㎡ 시설면적 증) 424.92㎡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0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6,608.14	5,687.39	6,608.14	5,687.39	-	-	-	-	-	시설면적 감) 920.75㎡
	도로	-	중구 중산동	3,953.01	2,655.25	3,953.01	2,655.25	-	-	-	-	-	시설면적 감) 1,297.76㎡
	광장	-	"	2,655.13	3,032.14	2,655.13	3,032.14	-	-	-	-	-	시설면적 증) 377.01㎡
	광장1	-	"	144.00	40.61	144.00	40.61	-	-	-	-	-	시설면적 감) 103.39㎡
	광장2	-	"	155.52	222.65	155.52	222.65	-	-	-	-	-	시설면적 증) 67.13㎡
	광장3	-	"	160.41	153.39	160.41	153.39	-	-	-	-	-	시설면적 감) 7.02㎡
	광장4	-	"	523.64	367.57	523.64	367.57	-	-	-	-	-	시설면적 감) 156.07㎡
	광장5	-	"	1,671.56	447.00	1,671.56	447.00	-	-	-	-	-	시설면적 감) 1,224.56㎡
광장6	-	"	-	1,800.92	-	1,800.92	-	-	-	-	-	시설면적 증) 1,800.92㎡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휴양 시설	소 계			-	88.55	-	88.55	-	-	-	43	27	시설면적 증) 88.55m <sup>2</sup> 공작물 감) 16개소
	쉽터1	-	중구 중산동	-	36.01	-	36.01	-	-	-	-	-	시설면적 증) 36.01m <sup>2</sup>
	쉽터2	-	"	-	52.54	-	52.54	-	-	-	-	-	시설면적 증) 52.54m <sup>2</sup>
	파고라	A-1	"	-	-	-	-	-	-	-	1	2	공작물 증) 1개소
	가제보	A-2	"	-	-	-	-	-	-	-	1	1	-
	연결형파고라	A-3	"	-	-	-	-	-	-	-	2	1	공작물 감) 1개소
	평의자	A-4	"	-	-	-	-	-	-	-	38	8	공작물 감) 30개소
	앉음벽	A-5	"	-	-	-	-	-	-	-	1	1	-
	등의자	-	"	-	-	-	-	-	-	-	-	14	공작물 증) 14개소
유희 시설	소 계			652.80	476.30	652.80	476.30	-	-	-	11	2	시설면적 감) 176.50m <sup>2</sup> 공작물 감) 9개소
	어린이놀이터 1	-	중구 중산동	199.80	192.51	199.80	192.51	-	-	-	-	-	시설면적 감) 7.29m <sup>2</sup>
	어린이놀이터 2	-	"	453.00	283.79	453.00	283.79	-	-	-	-	-	시설면적 감) 169.21m <sup>2</sup>
	조합놀이대A	B-1	"	-	-	-	-	-	-	-	1	1	-
	조합놀이대B	B-2	"	-	-	-	-	-	-	-	1	1	-
	흔들놀이대	B-3	"	-	-	-	-	-	-	-	5	-	공작물 감) 5개소
	시소	B-4	"	-	-	-	-	-	-	-	3	-	공작물 감) 3개소
	그네	B-5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운동 시설	소 계			70.1	422.13	70.1	422.13	-	-	-	8	-	시설면적 증) 352.03m <sup>2</sup> 공작물 감) 8개소
	다목적운동장	-	중구 중산동	-	422.13	-	422.13	-	-	-	-	-	시설면적 증) 422.13m <sup>2</sup>
	체력단련장1	-	"	36.3	-	36.3	-	-	-	-	-	-	시설면적 감) 36.30m <sup>2</sup>
	체력단련장2	-	"	33.8	-	33.8	-	-	-	-	-	-	시설면적 감) 33.80m <sup>2</sup>
	단위운동시설	C-1	"	-	-	-	-	-	-	-	8	-	공작물 감) 8개소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관리 시설	소 계			-	1,046.59	-	1,046.59	-	-	-	15	38	시설면적 증) 1,046.59㎡ 공작물 증) 23개소
	주차장	-	중구 중산동	-	1,046.59	-	1,046.59	-	-	-	-	-	시설면적 증) 1,046.59㎡
	음수대	D-1	"	-	-	-	-	-	-	1	1	-	
	블라드	D-2	"	-	-	-	-	-	-	14	29	공작물 증) 15개소	
	자전거보관대	D-3	"	-	-	-	-	-	-	-	2	2	공작물 증) 2개소
	안내판	D-4	"	-	-	-	-	-	-	-	6	6	공작물 증) 6개소
편익 시설	소 계			-	35.00	-	35.00	지상 1층	25.00	25.00	-	-	시설면적 증) 35.00㎡ 건축물 증) 1동
	화장실	-	중구 중산동	-	35.00	-	35.00	지상 1층	25.00	25.00	-	-	시설면적 증) 35.0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 기타	소 계			11,627.96	11,725.54	-	-	-	-	-	-	-	녹지면적 증) 97.58㎡
	녹지	-	전지역	11,627.96	11,725.54	-	-	-	-	-	-	-	녹지면적 증) 97.58㎡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1,338.73	3,953.01	-	-	-	도로연장 감)516.06m 도로면적 감)1,297.76㎡
변경					822.67	2,655.25				
기정	소로	3	진 1	2.0	24.0	48.00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1	
변경	소로	3	진 1	8.0	33.29	207.70	진입로	서측경계	연1	
기정	소로	3	진 2	4.0	68.0	136.01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	
변경	소로	3	진 2	8.0	36.41	239.00	진입로	북측경계	연1	
기정	소로	3	진 3	2.0	26.7	53.46	진입로	남측경계	연2	
변경	소로	3	진 3	6.0	28.9	173.42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5	
기정	소로	3	진 4	5.0	145.6	728.55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4	
변경	소로	3	진 4	3.0	27.07	81.20	진입로	서측경계	연4	
기정	소로	3	진 5	5.0	92.27	461.56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4	
변경	소로	3	진 5	2.0	20.83	41.68	진입로	서측경계	연4	
기정	소로	3	진 6	2.0	26.70	53.35	진입로	북측경계	진7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7	2.0	30.40	60.80	진입로	서측경계	진5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8	2.0	20.30	40.69	진입로	서측경계	진5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9	2.0	25.75	51.50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10	6.0	14.50	87.83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4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11	2.0	8.70	17.36	진입로	서측경계	연9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12	2.0	34.19	68.37	진입로	서측경계	진4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진 13	2.0	31.52	63.03	진입로	서측경계	진4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연 1	2.5	124.00	310.10	연결로	광장1	광장2	
변경	소로	3	연 1	3.0	154.21	462.61	연결로	광장1	광장3	
기정	소로	3	연 2	3.0	40.50	121.62	연결로	연1	연1	
변경	소로	3	연 2	3.0	96.34	289.08	연결로	광장6	연3	
기정	소로	3	연 3	3.0	15.40	46.15	연결로	연1	연6	
변경	소로	3	연 3	6.0	14.83	85.48	연결로	광장6	광장5	
기정	소로	3	연 4	3.0	30.10	109.50	연결로	연6	연6	
변경	소로	3	연 4	3.0	160.82	482.48	연결로	연3	광장6	
기정	소로	3	연 5	3.0	12.00	44.97	연결로	연6	연1	
변경	소로	3	연 5	2.0	17.22	34.43	연결로	주차장	연7	
기정	소로	3	연 6	4.0	96.50	386.33	연결로	광장1	광장2	
변경	소로	3	연 6	2.0	9.85	19.69	연결로	광장6	연2	
기정	소로	3	연 7	4.0	46.70	186.98	연결로	진4	광장3	
변경	소로	3	연 7	2.0	25.40	50.87	연결로	휴게소2	연2	
기정	소로	3	연 8	2.5	47.40	118.52	연결로	진4	광장3	
변경	소로	3	연 8	2.0	5.04	11.00	연결로	연2	광장5	
기정	소로	3	연 9	2.0	39.30	78.66	연결로	진12	진10	
변경	소로	3	연 9	2.0	22.13	50.10	연결로	연4	광장5	
기정	소로	3	연 10	2.0	15.90	31.91	연결로	진9	진10	
변경	소로	3	연 10	2.0	4.50	9.00	연결로	광장6	늘이터2	
기정	소로	3	연 11	2.0	29.50	58.73	연결로	진8	진9	
변경	소로	3	연 11	2.0	15.44	30.88	연결로	광장6	연4	
기정	소로	3	연 12	2.0	12.00	24.11	연결로	진5	광장5	
변경	소로	3	연 12	4.0	13.76	55.01	연결로	광장6	연4	
기정	소로	3	연 13	2.0	18.90	37.83	연결로	진5	광장5	
변경	소로	3	연 13	4.0	32.72	130.94	연결로	연4	광장4	
기정	소로	3	연 14	6.0	13.50	81.60	연결로	광장4	광장5	
변경	소로	3	연 14	2.5	16.40	41.00	연결로	광장6	연4	
기정	소로	3	연 15	2.0	10.10	20.38	연결로	진4	광장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소로	3	연 15	2.5	28.39	71.00	연결로	연4	광장4	
기정	소로	3	연 16	2.0	3.70	7.38	연결로	진4	광장5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연 17	4.0	3.00	12.10	연결로	진4	광장5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연 18	2.5	3.00	7.60	연결로	진4	광장5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1	1.5	12.20	18.41	산책로	연1	연6	
변경	소로	3	산1	1.5	14.78	22.17	산책로	연15	연13	
기정	소로	3	산2	1.5	16.50	24.80	산책로	연1	연6	
변경	소로	3	산2	1.5	14.78	22.17	산책로	연15	연13	
기정	소로	3	산3	1.5	15.30	22.99	산책로	연1	연6	
변경	소로	3	산3	1.5	14.78	22.17	산책로	연15	연13	
기정	소로	3	산4	1.5	15.63	23.45	산책로	연1	연6	
변경	소로	3	산4	1.5	14.78	22.17	산책로	연15	연13	
기정	소로	3	산5	1.5	14.78	22.17	산책로	연8	연7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6	1.5	14.78	22.17	산책로	연8	연7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7	1.5	14.78	22.17	산책로	연8	연7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8	1.5	14.78	22.17	산책로	연8	연7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9	2.0	40.65	81.31	산책로	연7	진13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10	2.0	35.60	71.12	산책로	진13	진12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11	2.0	33.60	67.27	산책로	진7	진8	
변경	-	-	-	-	-	-	-	-	-	폐지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2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38-39,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m <sup>2</sup> )	변경(m <sup>2</sup> )	비고
-	나루터공원 (제2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38-39, 공	58,236.00	58,403.70	증)167.70㎡

##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8,236.00	58,403.70	21,488.49	22,268.71	-	1	-	165.50	-	165.50	148	126	부지면적 증) 167.70㎡ 시설면적 증) 780.22㎡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22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9,991.53	17,370.45	19,991.53	17,370.45	-	-	-	-	-	-	-	시설면적 감) 2,621.08㎡
	도로	5,886.11	9,795.83	5,886.11	9,795.83	-	-	-	-	-	-	-	시설면적 증) 3,909.72㎡
	광장	14,105.42	7,574.62	14,105.42	7,574.62	-	-	-	-	-	-	-	시설면적 감) 6,530.80㎡
휴양시설	898.71	510.36	898.71	510.36	-	-	-	-	-	-	94	73	시설면적 감) 388.35㎡ 공작물 감) 21개소
유흥시설	417.84	518.91	417.84	518.91	-	-	-	-	-	-	6	6	시설면적 증) 101.07㎡
운동시설	180.41	1,645.61	180.41	1,645.61	-	-	-	-	-	-	6	6	시설면적 증) 1,465.20㎡
관리시설	-	2,223.38	-	2,223.38	-	1	-	165.50	-	165.50	42	41	시설면적 증) 2,223.38㎡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개소
녹지및기타	36,747.51	36,134.99	-	-	-	-	-	-	-	-	-	-	녹지면적 감) 612.52㎡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계	-	-	중구 중산동	58,236.00	58,403.70	21,488.49	22,268.71	지상 1층	165.50	165.50	148	126	부지면적 증) 167.70㎡ 시설면적 증) 780.22㎡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22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9,991.53	17,370.45	19,991.53	17,370.45	-	-	-	-	-	시설면적 감) 2,621.08㎡
	도로	-	중구 중산동	5,886.11	9,795.83	5,886.11	9,795.83	-	-	-	-	-	시설면적 증) 3,909.72㎡
	광장	-	"	14,105.42	7,574.62	14,105.42	7,574.62	-	-	-	-	-	시설면적 감) 6,530.80㎡
	광장1	-	"	826.31	2,249.62	826.31	2,249.62	-	-	-	-	-	시설면적 증) 1,423.3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광장2	-	"	3,675.21	1,135.41	3,675.21	1,135.41	-	-	-	-	-	시설면적 감) 2,539.80㎡	
	광장3	-	"	2,365.02	2,235.83	2,365.02	2,235.83	-	-	-	-	-	시설면적 감) 129.19㎡	
	광장4	-	"	787.60	1,724.33	787.60	1,724.33	-	-	-	-	-	시설면적 증) 936.73㎡	
	광장5	-	"	2,123.35	229.43	2,123.35	229.43	-	-	-	-	-	시설면적 감) 1,893.92㎡	
	광장6	-	"	3,215.00	-	3,215.00	-	-	-	-	-	-	시설면적 감) 3,215.0㎡	
	광장7	-	"	856.31	-	856.31	-	-	-	-	-	-	시설면적 감) 856.31㎡	
	광장8	-	"	23.24	-	23.24	-	-	-	-	-	-	시설면적 감) 23.24㎡	
	광장9	-	"	233.38	-	233.38	-	-	-	-	-	-	시설면적 감) 233.38㎡	
휴양 시설	소 계			898.71	510.36	898.71	510.36	-	-	-	94	73	시설면적 감) 388.35㎡ 공작물 감) 21개소	
	쉼터1	-	중구 중산동	50.97	157.08	50.97	157.08	-	-	-	-	-	시설면적 증) 106.11㎡	
	쉼터2	-	"	70.91	117.76	70.91	117.76	-	-	-	-	-	시설면적 증) 46.85㎡	
	쉼터3	-	"	72.53	117.76	72.53	117.76	-	-	-	-	-	시설면적 증) 45.23㎡	
	쉼터4	-	"	60.03	117.76	60.03	117.76	-	-	-	-	-	시설면적 증) 57.73㎡	
휴양 시설	쉼터5	-	"	60.00	-	60.00	-	-	-	-	-	-	시설면적 감) 60.00㎡	
	쉼터6	-	"	128.82	-	128.82	-	-	-	-	-	-	시설면적 감) 128.82㎡	
	쉼터7	-	"	128.31	-	128.31	-	-	-	-	-	-	시설면적 감) 128.31㎡	
	쉼터8	-	"	92.77	-	92.77	-	-	-	-	-	-	시설면적 감) 92.77㎡	
	쉼터9	-	"	107.16	-	107.16	-	-	-	-	-	-	시설면적 감) 107.16㎡	
	쉼터10	-	"	127.21	-	127.21	-	-	-	-	-	-	시설면적 감) 127.21㎡	
	연결형파고라	A	"	-	-	-	-	-	-	-	2	4	공작물 증) 2개소	
	파고라	B	"	-	-	-	-	-	-	-	6	2	공작물 감) 4개소	
	원형파고라	B'	"	-	-	-	-	-	-	-	-	1	-	공작물 증) 1개소
	등의자	C	"	-	-	-	-	-	-	-	65	38	공작물 감) 27개소	
	평의자	D	"	-	-	-	-	-	-	-	20	27	공작물 증) 7개소	
앉음벽	E	"	-	-	-	-	-	-	-	1	1	-		
유희 시설	소 계			417.84	518.91	417.84	518.91	-	-	-	6	6	시설면적 증) 101.07㎡	
	어린이놀이터	-	중구 중산동	417.84	518.91	417.84	518.91	-	-	-	-	-	시설면적 증) 101.07㎡	
	조합놀이대	F	"	-	-	-	-	-	-	-	1	1	-	
	시소	G	"	-	-	-	-	-	-	-	2	2	-	
	흔들놀이	H	"	-	-	-	-	-	-	-	2	2	-	
	오르막놀이대	I	"	-	-	-	-	-	-	-	1	1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운동시설	소 계			180.41	1,645.61	180.41	1,645.61	-	-	-	6	6	시설면적 증) 1,465.20㎡
	체력단련장	-	중구 중산동	180.41	196.61	180.41	196.61	-	-	-	-	-	시설면적 증) 16.20㎡
	풋살장	-	"	-	1,449.00	-	1,449.00	-	-	-	-	-	시설면적 증) 1,449.00㎡
	생활체육 시설물	J	"	-	-	-	-	-	-	-	6	6	-
관리시설	소 계			-	2,223.38	-	2,223.38	지상 1층	165.50	165.50	42	41	시설면적 증) 2,223.38㎡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개소
	주차장	-	중구 중산동	-	2,057.88	-	2,057.88	-	-	-	-	-	시설면적 증) 2,057.88㎡
	관리사무소	-	"	-	165.50	-	165.50	지상 1층	165.50	165.50	-	-	시설면적 증) 165.50㎡ 건축물 증) 1동
	음수대	K	"	-	-	-	-	-	-	-	1	1	-
	세면대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블라드	L	"	-	-	-	-	-	-	-	41	29	공작물 감) 12개소
관리시설	자전거보관대	-	"	-	-	-	-	-	-	-	-	3	공작물 증) 3개소
	안내판	-	"	-	-	-	-	-	-	-	-	6	공작물 증) 6개소
	공원명칭 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36,747.51	36,134.99	-	-	-	-	-	-	-	녹지면적 감) 612.52㎡
	녹지	-	전지역	36,747.51	36,134.99	-	-	-	-	-	-	-	녹지면적 감) 612.52㎡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1,770.20	5,886.11	-	-	-	도로연장 증) 638.64m 도로면적 증) 3,909.72㎡
변경					2,408.84	9,795.83				
기정	소로	3류	진1	8.0	4.4	35.64	진입로	서측경계	산2	
변경	소로	3류	진1	3.0	124.27	374.75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	
기정	소로	3류	진2	2.0	23.8	50.22	진입로	서측경계	산2	
변경	소로	3류	진2	5.0	30.43	152.04	진입로	북측경계	주차장	
기정	소로	3류	진3	3.0	37.1	111.16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3	
변경	소로	3류	진3	5.0	105.45	530.09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1	
기정	소로	3류	진4	2.0	23.7	47.56	진입로	서측경계	산2	
변경	소로	3류	진4	2.0	10.1	36.58	진입로	서측경계	산1	
기정	소로	3류	진5	2.0	26.7	53.60	진입로	서측경계	산2	
변경	소로	3류	진5	8.0	29.96	199.69	진입로	서측경계	산1	
기정	소로	3류	진6	4.0	52.7	213.95	진입로	남측경계	진7	
변경	소로	3류	진6	8.0	29.89	189.13	진입로	서측경계	산1	
기정	소로	3류	진7	4.0	55.3	221.36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7	
변경	소로	3류	진7	8.0	33.08	195.60	진입로	서측경계	산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규	소로	3류	진8	2.0	28.86	75.02	진입로	서측경계	산1	
신규	소로	3류	진9	10.0	96.58	861.57	진입로	북측경계	연6	
신규	소로	3류	진10	3.0	24.85	100.72	진입로	동측경계	풋살장	
신규	소로	3류	진11	6.0	53.62	319.06	진입로	북측경계	연6	
신규	소로	3류	진12	15.0	33.42	517.66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3	
기정	소로	3류	연1	5.0	111.6	558.16	연결로	광장2	광장2	
변경	소로	3류	연1	4.5	115.13	532.84	연결로	진1	광장1	
기정	소로	3류	연2	2.5	9.5	48.95	연결로	광장1	산1	
변경	소로	3류	연2	5.0	35.85	180.4	연결로	진3	주차장	
기정	소로	3류	연3	2.0	15.5	30.97	연결로	광장2	연1	
변경	소로	3류	연3	2.5	8.0	19.58	연결로	주차장	진1	
기정	소로	3류	연4	5.0	36.8	184.27	연결로	광장1	광장2	
변경	소로	3류	연4	2.5	20.26	50.64	연결로	연1	진1	
기정	소로	3류	연5	2.5	15.6	39.06	연결로	광장1	산2	
변경	소로	3류	연5	2.0	11.86	23.73	연결로	주차장	진1	
기정	소로	3류	연6	2.5	29.8	74.56	연결로	산2	연4	
변경	소로	3류	연6	2.0	35.54	71.07	연결로	진3	شط1	
기정	소로	3류	연7	3.5	13.4	47.0	연결로	산2	광장2	
변경	소로	3류	연7	3.5	5.82	20.37	연결로	광장1	산1	
기정	소로	3류	연8	5.0	439.6	2203.83	연결로	광장2	광장9	
변경	소로	3류	연8	2.0	37.25	74.49	연결로	산1	연10	
기정	소로	3류	연9	5.0	7.2	36.23	연결로	광장3	연8	
변경	소로	3류	연9	5.0	17.00	85.10	연결로	연10	연11	
기정	소로	3류	연10	2.0	32.2	64.5	연결로	산2	شط4	
변경	소로	3류	연10	3.0	435.87	1302.65	연결로	광장1	광장5	
기정	소로	3류	연11	2.0	36.7	73.53	연결로	광장3	연8	
변경	소로	3류	연11	4.5	131.0	604.50	연결로	광장1	광장3	
기정	소로	3류	연12	3.5	78.4	234.94	연결로	산2	연8	
변경	소로	3류	연12	2.0	49.86	99.73	연결로	연10	연11	
기정	소로	3류	연13	3.5	15.8	47.56	연결로	광장4	연8	
변경	소로	3류	연13	3.0	76.3	228.07	연결로	산1	연10	
기정	소로	3류	연14	2.0	39.8	79.7	연결로	산2	연8	
변경	소로	3류	연14	3.0	14.65	43.52	연결로	연10	연23	
기정	소로	3류	연15	2.0	38.0	76.04	연결로	산2	연8	
변경	소로	3류	연15	2.0	31.18	62.32	연결로	산1	연10	
기정	소로	3류	연16	2.0	24.0	48.08	연결로	광장8	연8	
변경	소로	3류	연16	2.0	20.04	40.08	연결로	산1	놀이터	
기정	소로	3류	연17	2.0	9.7	19.46	연결로	연8	광장7	
변경	소로	3류	연17	2.0	10.11	20.22	연결로	진9	연10	
기정	소로	3류	연18	2.0	14.3	28.61	연결로	연8	광장7	
변경	소로	3류	연18	2.0	14.58	29.16	연결로	진9	연10	
기정	소로	3류	연19	3.5	28.4	85.46	연결로	연8	광장7	
변경	소로	3류	연19	2.0	28.5	56.99	연결로	잔9	광장5	
기정	소로	3류	연20	4.0	34.8	141.21	연결로	진7	광장6	
변경	소로	3류	연20	4.0	33.81	138.00	연결로	잔9	광장5	
신규	소로	3류	연21	4.0	79.05	308.76	연결로	동측경계	진9	
신규	소로	3류	연22	6.0	91.3	578.00	연결로	진12	연23	
신규	소로	3류	연23	10.0	104.8	872.92	연결로	광장3	진11	
기정	소로	3류	산1	2.0	84.4	168.84	산책로	연1	광장1	
신규	소로	3류	산1	2.0	400.57	800.78	산책로	شط1	연10	
기정	소로	3류	산2	2.0	431.0	861.66	산책로	광장1	연8	
변경	-	-	-	-	-	-	-	-	-	폐지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3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29-19,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쌈지공원 (제36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29-19, 공	10,199.00	10,172.00	감) 27.0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199.00	10,172.00	2,413.66	2,979.43	-	-	-	-	-	-	42	30	부지면적 감) 27.0㎡ 시설면적 증) 565.75㎡ 공작물 감) 12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893.71	2,204.51	1,893.71	2,204.51	-	-	-	-	-	-	-	-	시설면적 증) 310.80㎡
	도로	1,511.86	1,908.35	1,511.86	1,908.35	-	-	-	-	-	-	-	-	시설면적 증) 396.49㎡
도로 및 광장	광장	381.85	296.16	381.85	296.16	-	-	-	-	-	-	-	-	시설면적 감) 85.69㎡
휴양시설	234.58	219.52	234.58	219.52	-	-	-	-	-	-	28	14	시설면적 감) 15.06㎡ 공작물 감) 14개소	
유희시설	285.37	224.64	285.37	224.64	-	-	-	-	-	-	6	1	시설면적 감) 60.73㎡ 공작물 감) 5개소	
운동시설	-	330.76	-	330.76	-	-	-	-	-	-	-	-	-	시설면적 증) 330.76㎡
관리시설	-	-	-	-	-	-	-	-	-	-	8	15	공작물 증) 7개소	
녹지및기타	7,785.34	7,192.57	-	-	-	-	-	-	-	-	-	-	-	녹지면적 감) 592.77㎡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	중구 중산동	10,199.00	10,172.00	2,413.66	2,979.43	-	-	-	42	30	부지면적 감) 27.0㎡ 시설면적 증) 565.75㎡ 공작물 감) 12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1,893.71	2,204.51	1,893.71	2,204.51	-	-	-	-	-	시설면적 증) 310.80㎡
	도로	-	중구 중산동	1,511.86	1,908.35	1,511.86	1,908.35	-	-	-	-	-	시설면적 증) 396.49㎡
	광장	-	"	381.85	296.16	381.85	296.16	-	-	-	-	-	시설면적 감) 85.69㎡
	광장1	-	"	117.21	95.10	117.21	95.10	-	-	-	-	-	시설면적 감) 22.1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광장2	-	"	201.06	201.06	201.06	201.06	-	-	-	-	-	-
	광장3	-	"	63.58	-	63.58	-	-	-	-	-	-	시설면적 감) 63.58㎡
휴양 시설	소 계			234.58	219.52	234.58	219.52	-	-	-	28	14	시설면적 감) 15.06㎡ 공작물 감) 14개소
	쉼터1	-	중구 중산동	190.22	154.69	190.22	154.69	-	-	-	-	-	시설면적 감) 35.53㎡
	쉼터2	-	"	44.36	64.83	44.36	64.83	-	-	-	-	-	시설면적 증) 20.47㎡
	연결형파고라	A	"	-	-	-	-	-	-	-	1	1	-
	파고라	B	"	-	-	-	-	-	-	-	2	-	공작물 감) 2개소
	등의자	C	"	-	-	-	-	-	-	-	14	8	공작물 감) 6개소
	평의자	D	"	-	-	-	-	-	-	-	10	4	공작물 감) 6개소
	앉음벽	E	"	-	-	-	-	-	-	-	1	1	-
유희 시설	소 계			285.37	224.64	285.37	224.64	-	-	-	6	1	시설면적 감) 60.73㎡ 공작물 감) 5개소
	어린이놀이터	-	중구 중산동	285.37	224.64	285.37	224.64	-	-	-	-	-	시설면적 감) 60.73㎡
	조합놀이대	F	"	-	-	-	-	-	-	-	1	1	-
	흔들놀이대	G	"	-	-	-	-	-	-	-	3	-	공작물 감) 3개소
	시소	H	"	-	-	-	-	-	-	-	2	-	공작물 감) 2개소
운동 시설	소 계			-	330.76	-	330.76	-	-	-	-	-	시설면적 증) 330.76㎡
	다목적운동장	-	중구 중산동	-	330.76	-	330.76	-	-	-	-	-	시설면적 증) 330.76㎡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8	15	공작물 증) 7개소
	블라드	F	중구 중산동	-	-	-	-	-	-	-	8	13	공작물 증) 5개소
	안내판	-	"	-	-	-	-	-	-	-	-	2	공작물 증) 2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7,785.34	7,192.57	-	-	-	-	-	-	-	녹지면적 감) 592.77㎡
	녹지	-	전지역	7,785.34	7,192.57	-	-	-	-	-	-	-	녹지면적 감) 592.77㎡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730.00	1511.86	-	-	-	도로연장 감) 63.34m 도로면적 증) 396.49㎡
					변경	666.66				
기정	소로	3	진 1	4.0	88.1	352.30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2	
변경	소로	3	진 1	30.0	87.86	263.72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	진 2	2.0	45.2	90.36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소로	3	진 2	4.25	45.2	184.14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	진 3	4.0	61.2	244.64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	
변경	소로	3	진 3	5.5	60.8	306.42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	진 4	1.5	82.3	123.52	진입로	북측경계	연8	
변경	소로	3	진 4	1.5	72.4	291.44	진입로	북측경계	شط터2	
기정	소로	3	진 5	2.0	23.5	46.98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3	
변경	소로	3	진 5	8.0	63.2	361.06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	연 1	1.5	70.2	105.34	연결로	광장1	연2	
변경	소로	3	연 1	1.5	64.7	97.03	연결로	광장1	연2	
기정	소로	3	연 2	1.5	39.4	59.04	연결로	진1	연8	
변경	소로	3	연 2	1.5	38.0	56.92	연결로	진1	진2	
기정	소로	3	연 3	1.2	31.5	37.78	연결로	진1	연8	
변경	소로	3	연 3	1.2	31.1	46.61	연결로	진2	진3	
기정	소로	3	연 4	1.5	34.5	51.80	연결로	진2	진1	
변경	소로	3	연 4	1.5	25.2	37.89	연결로	진3	شط터2	
기정	소로	3	연 5	1.5	22.3	33.45	연결로	진2	진1	
변경	소로	3	연 5	1.5	19.5	29.34	연결로	شط터2	진5	
기정	소로	3	연 6	1.5	41.3	61.98	연결로	연8	진3	
변경	소로	3	연 6	1.5	38.0	57.00	연결로	진1	진5	
기정	소로	3	연 7	1.5	30.6	45.90	연결로	진3	진2	
변경	소로	3	연 7	1.5	74.0	111.10	연결로	진1	진5	
기정	소로	3	연 8	2.0	38.0	75.91	연결로	광장3	광장2	
변경	소로	3	연 8	1.0	4.5	4.50	연결로	놀이터	연2	
신규	소로	3	연 9	1.0	4.5	4.50	연결로	놀이터	연2	
기정	소로	3	산 1	1.5	75.5	113.25	산책로	연1	광장3	
변경	소로	3	산 1	1.5	6.1	9.20	산책로	진1	연1	
기정	소로	3	산 2	1.5	10.6	15.84	산책로	진1	연1	
변경	소로	3	산 2	1.5	6.8	10.25	산책로	진1	연1	
기정	소로	3	산 3	1.5	9.6	14.38	산책로	진1	연1	
변경	소로	3	산 3	1.5	7.5	11.32	산책로	진1	연1	
기정	소로	3	산 4	1.5	8.6	12.92	산책로	진1	연1	
변경	소로	3	산 4	1.5	8.3	12.38	산책로	진1	연1	
기정	소로	3	산 5	1.5	7.6	11.45	산책로	진1	연1	
변경	소로	3	산 5	1.5	9.0	13.53	산책로	진1	연1	
기정	소로	3	산 6	1.5	6.2	9.26	산책로	진1	연1	
변경	-	-	-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산 7	1.5	3.8	5.76	산책로	진1	녹지	
변경	-	-	-	-	-	-	-	-	-	폐지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3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9-1,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m <sup>2</sup> )	변경(m <sup>2</sup> )	비고
-	제38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9-1, 공	54,857.00	54,684.50	감)172.50m <sup>2</sup>

##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4,857.00	54,684.50	2,930.00	3,163.56	-	-	-	-	-	-	11	13	부지면적 감) 172.50m <sup>2</sup> 시설면적 증) 233.56m <sup>2</sup> 공작물 증) 2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2,930.00	3,163.56	2,930.00	3,163.56	-	-	-	-	-	-	-	시설면적 증) 233.56m <sup>2</sup>
	도로	2,388.71	2,664.00	2,388.71	2,664.00	-	-	-	-	-	-	-	시설면적 증) 275.29m <sup>2</sup>
	광장	541.29	499.56	541.29	499.56	-	-	-	-	-	-	-	시설면적 감) 41.73m <sup>2</sup>
조경시설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휴양시설	-	-	-	-	-	-	-	-	-	-	8	8	-
관리시설	-	-	-	-	-	-	-	-	-	-	3	4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기타	51,927.00	51,520.94	-	-	-	-	-	-	-	-	-	-	녹지면적 감) 406.06m <sup>2</sup>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54,857.00	54,684.50	2,930.00	3,163.56	-	-	-	11	13	부지면적 감) 172.50m <sup>2</sup> 시설면적 증) 233.56m <sup>2</sup> 공작물 증) 2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2,930.00	3,163.56	2,930.00	3,163.56	-	-	-	-	-	시설면적 증) 233.56m <sup>2</sup>
	도로	-	중구 운남동	2,388.71	2,664.00	2,388.71	2,664.00	-	-	-	-	-	시설면적 증) 275.29m <sup>2</sup>
	광장	-	"	541.29	499.56	541.29	499.56	-	-	-	-	-	시설면적 감) 41.73m <sup>2</sup>
	광장15	-	"	225.56	225.56	225.56	225.56	-	-	-	-	-	-
	광장16	-	"	315.73	274.00	315.73	274.00	-	-	-	-	-	시설면적 감) 41.73m <sup>2</sup>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조경석쌓기	-	중구 운남동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8	8	-
	등의자E	H	중구 운남동	-	-	-	-	-	-	-	2	2	-
	평의자E	I	"	-	-	-	-	-	-	-	6	6	-

구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3	4	공작물 증) 1개소
	방향안내판	L	중구 운남동	-	-	-	-	-	-	-	3	3	-
	종합안내판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51,927.00	51,520.94	-	-	-	-	-	-	-	녹지면적 감) 406.06㎡
	녹지	-	전지역	51,927.00	51,520.94	-	-	-	-	-	-	-	녹지면적 감) 406.06㎡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1,194.44	2,388.71	-	-	-	도로연장 증) 34.10m 도로면적 증) 275.29㎡
변경					1,228.54	2,664.00				
기정	소로	3	산 10	2.0	187.9	375.71	산책로	광장16	산11	
변경	소로	3	산 10	3.0	207.0	621.00	산책로	광장16	산11	
기정	소로	3	산 11	2.0	365.0	729.90	산책로	광장15	북측경계	
기정	소로	3	산 12	2.0	229.1	458.12	산책로	서측경계	산11	
기정	소로	3	산 13	2.0	156.3	312.66	산책로	산11	산10	
기정	소로	3	산 14	2.0	156.1	312.24	산책로	산11	산12	
기정	소로	3	산 16	2.0	100.04	200.08	산책로	광장16	근린공원11호	
신규	소로	3	산 17	2.0	15.0	30.00	산책로	산10	산11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5호 광장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광장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94, 도]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비고
-	오색광장 (제5호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94, 도	27,091.30	27,091.3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091.30	27,091.30	9,019.50	9,067.50	-	1	-	48.00	-	48.00	82	84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2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8,376.00	8,376.00	8,376.00	8,376.00	-	-	-	-	-	-	-	-	-
	도로	-	-	-	-	-	-	-	-	-	-	-	-	-
	광장	8,376.00	8,376.00	8,376.00	8,376.00	-	-	-	-	-	-	-	-	-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조경시설	22.00	22.00	22.00	22.00	-	-	-	-	-	-	34	34	-
휴양시설	621.50	621.50	621.50	621.50	-	-	-	-	-	-	43	43	-
관리시설	-	-	-	-	-	-	-	-	-	-	5	6	공작물 증) 1개소
수경시설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편익시설	-	48.00	-	48.00	-	1	-	48.00	-	48.00	-	-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기타	18,071.80	18,023.80	-	-	-	-	-	-	-	-	-	-	녹지면적 감) 48.00㎡

### 3. 시설별조서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27,091.30	27,091.30	9,019.50	9,067.50	지상 1층	48.00	48.00	82	84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2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8,376.00	8,376.00	8,376.00	8,376.00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	-	-	-	-	-	-	-	-	-
	광장	-	"	8,376.00	8,376.00	8,376.00	8,376.00	-	-	-	-	-	-
조경 시설	소 계			22.00	22.00	22.00	22.00	-	-	-	34	34	-
	잡석포장	-	중구 운남동	22.00	22.00	22.00	22.00	-	-	-	-	-	-
	매대쌓기	A-1	"	-	-	-	-	-	-	-	1	1	-
	장승	A-2	"	-	-	-	-	-	-	-	2	2	-
	숫대	A-3	"	-	-	-	-	-	-	-	15	15	-
	장독대	A-4	"	-	-	-	-	-	-	-	12	12	-
	소원담장	A-5	"	-	-	-	-	-	-	-	1	1	-
조경 시설	조형담장	A-6	"	-	-	-	-	-	-	-	1	1	-
	전통담장	A-7	"	-	-	-	-	-	-	-	1	1	-
휴양 시설	테크	A-8	"	-	-	-	-	-	-	-	1	1	-
	소 계			621.50	621.50	621.50	621.50	-	-	-	43	43	-
	셉터1	-	중구 운남동	168.00	168.00	168.00	168.00	-	-	-	-	-	-
	셉터2	-	"	277.50	277.50	277.50	277.50	-	-	-	-	-	-
	셉터3	-	"	176.00	176.00	176.00	176.00	-	-	-	-	-	-
	정통정자	B-1	"	-	-	-	-	-	-	-	2	2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휴양 시설	파고라K	B-2	"	-	-	-	-	-	-	-	6	6	-
	등의자E	B-3	"	-	-	-	-	-	-	-	13	13	-
	평의자E	B-4	"	-	-	-	-	-	-	-	12	12	-
	앉음벽	B-5	"	-	-	-	-	-	-	-	1	1	-
	통들의자	B-6	"	-	-	-	-	-	-	-	9	9	-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5	6	공작물 증) 1개소
	자전거보관대	C-1	중구 운남동	-	-	-	-	-	-	-	2	2	-
	시설안내사인판	C-2	"	-	-	-	-	-	-	-	3	3	-
	공원명칭안내판	C-3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수경 시설	소 계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수경시설A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편익 시설	소 계			-	48.00	-	48.00	지상 1층	48.00	48.00	-	-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화장실	-	"	-	48.00	-	48.00	지상 1층	48.00	48.00	-	-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증) 1동
녹지및 기타	소 계			18,071.80	18,023.80	-	-	-	-	-	-	-	녹지면적 감) 48.00㎡
	녹지	-	전지역	18,071.80	18,023.80	-	-	-	-	-	-	-	녹지면적 감) 48.00㎡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54호

## 시립체육시설 위탁기관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1. 위탁시설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남동체육관	남동구 소래로 500/540	·부지 67,313.9㎡ ·건축연면적 31,818.93㎡	· 실내체육관, 관람석(8,828석)
도원체육관/ 수영장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중구 샛골로 41번길 22	·부지 23,550㎡ ·건축연면적 14,103.65㎡	· (체육관)실내체육관,관람석(2,615석) · (수영장)50M 8레인, 헬스장 등
송도LNG종합 스포츠타운/ 야구장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90	·부지189,220.5㎡ ·건축연면적 7,287.43㎡	· (스포츠타운) 축구장 2면(주, 보조), 야구장 3명(주, 보조, 마사토), 풋살구장 2면, 실내연습장 등 · (야구장) 마사토구장 6면
가좌테니스장	서구 가좌로 11번길 7	·부지 46,821㎡ ·건축연면적 3,297㎡	· 실내 3면, 실외 13면 · 매점, 사무실 등
수봉공도장/ 양궁장	미추홀구 수봉로 95번길 32	· 부지 9,137㎡ · 건축연면적 804.79㎡	· (공도장) 145M 사대, 대기실,홀 · (양궁장) 95M 사대 6개, 선수숙소
다목적하키장 /정구경기장	미추홀구 소성로 360	· 부지 13,451㎡ · 건축연면적 239.44㎡	· 필드하키장 1면, 정구장 6면 등

## 2. 위탁사무 범위

- 가. 경기장 부지내 경기시설, 편의·부대시설, 토지 등 일체 관리·운영
- 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 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대
-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3. 위탁기간 및 위탁금

- 가. 위탁기간 : 2020. 1. 1.~ 2022.12.31. (3년간, 1회에 한하여 갱신가능)
- 나. 위탁금 : 2019년 예산액 범위내 (일시적 대규모 시설비 제외)

○ 남동체육관	1,253,929,000원
○ 도원체육관/수영장	3,037,581,000원
○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야구장	1,177,477,000원
○ 가좌테니스장	395,315,000원
○ 수봉궁도장/양궁장	215,000,000원
○ 다목적 하키장/정구경기장	220,015,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2020년 지급 예정액임

※ 최종금액은 예산확정액 및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4. 응모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체육관련 법인·단체·개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 ※ 단, 도원체육관/수영장은 수영장업 신고를 받았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영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 5. 입찰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가. 접수일시 : 2019. 10. 14(월) 09:00 ~18:00
-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사무실(담당자 : 민헌기)
-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 (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
- 2) 제출하는 서류 일체(사본 포함)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
- 5)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수탁기관 선정 및 발표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관리위탁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결정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 10. 24(목). 인천시청 장미홀

나. 선정기준

- ① 수탁기관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 ② 수탁기관의 운영계획서, 지역사회 내 공공성 확보 등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수탁사업 제안설명,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 ①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은 사업 책임자(개인, 법인·단체대표 또는 법인·단체 대표가 위임한 자)가 설명
- ② 발표순서는 심사당일 제안서 신청자의 추천으로 정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질의·응답 10분  
 ※ 불참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처리하며, 위임받은 자가 제안설명시 기관대표의 위임장 제시
- ③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정량적 평가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최고 득점한 응모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④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70점 이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보완 없이 그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함
- ⑥ 최고 득점한 응모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투표로 최다 득표한 응모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⑦ 우선순위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상 진행 후 위·수탁 협약 체결
- ⑧ 우선 협상 대상자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후 협약 체결

라. 선정자(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① 일 시 : 2019. 10. 25(금).

② 방 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법인 등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7. 위탁 조건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름)

- 가. 시설운영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나. 사용료·이용료, 임대수익 등은 “인천광역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이용료, 임대수익 등을 우리시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다. 위탁금은 2019년 예산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수탁자의 제안금액으로 하되, 수지율 변동 범위내에서 익년도 위탁금을 가감한다.
- 라.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대규모 수선공사 등 불가피하여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마. 우리시가 지원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자와 같이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바. 시설물 유지관리시 시설 주요 구조부 개·보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이상)는 인천시, 단순 소모성 개·보수(수선)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 사.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등에 응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위탁이 취소될 수 있다.
- 아. 수탁자는 기존 수탁자인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체결되어 있는 대관사항 및 임대 사업자들간 계약사항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 자. 수탁자 변경시 기존 경기장 운영인력은 새로운 수탁자가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차. 시립체육시설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위·수탁 협약을 위반한 때,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타. 기타 이외 사항은 위·수탁협약서로 정함.

##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

나.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
- 2) 제출하는 서류 일체(사본 포함)에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
- 5)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6)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위탁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같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규정을 준용한다

## 11. 위탁 운영자 준수사항 및 행정사항

가. 경기장 권리이전 행위의 금지

- ① 수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된 경기장을 제3자에게 이전·양도, 전매, 전대 등 일체의 권리수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
- ② 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나. 계약해지 사항

- ① 수탁업체로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투자비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인천광역시에 요구할 수 없다.
  - 운영사업자 귀책사유로 의해 인천광역시의 위·수탁계약 해지가 있을 경우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 및 인천광역시 조례 등의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다. 시설물 설치 시 사전 승인

- ①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음
- ② 체육시설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물 설치 시 사전협의 승인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운영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사전예방 조치장구)

**12. 기타사항**

-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18.01.0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관계법규를 적용
-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시에 영구 귀속
- 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바. 관련규정, 현지여건 등은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 등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함
-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담당자 민현기, ☎032-440-4322)로 문의

---

**시립체육시설(10개시설) 관리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제 안 요 청 서**

---

2019. 9.

# 제 안 요 청 서

##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위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위탁시설 : **【붙임 1】** 참조
- 위탁사무 범위 :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등
- 위탁금/위탁조건 : ‘관리위탁 공고문’ 참조

## II 제안 요청 사항

- 제안 참가자격
  - 체육관련 법인·단체·개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 ※ 단, 도원체육관/수영장은 수영장업 신고를 받았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영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내용
    -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위탁시설별 작성

제안참가 신청서류

신청서류	비고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②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및 관리위탁 운영제안서(별지서식 1~9) 각 1부. ③ 확약서 (별지서식 10) 1부. ④ 사용인장계 (별지서식 11) 1부. ⑤ 정성적 평가제안서 (별지서식 12) 10부. *원본1부는 간인날인하여 제출 ⑥ 입찰서 (별지서식 13) 1부. ⑦ 제안서, 제안서 PPT 등 신청서류가 담긴 USB 1개. ⑧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⑨ 신용평가등급 증명서(해당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10. 14(월). 09:00 ~ 18:00까지(방문제출)
-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담당자 민헌기)
- 문의처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032-440-4322)

### Ⅲ 제안서 평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60점), 가격평가(10점) 로구분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2. 1. 시행]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공기관 직원, 대학교수, 기타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붙임 1】

**시립체육시설(위탁시설) 현황****① 남동체육관**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540
2. 대지면적 : 67,313.9m<sup>2</sup>
3. 건축면적 : 13,188.3m<sup>2</sup>
4. 연 면 적 : 31,818.93m<sup>2</sup>
5. 주요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입체트러스 구조
6. 경기장 규모
  - 지하2층 ~ 지상3층
  - 실내체육관, 관람석(8,828석)
7. 시설현황

구 분	면적(m <sup>2</sup> )	주 요 용 도	비 고
지하2층	4,904.78	○ 워업장, 선수락카실, 창고	
지하1층	3,442.23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UPS실 요원실, 창고 등	
지상1층	11,757.64	○ 실내체육관, 경기운영실, 경기지원실, 기사작성실, 회의실, 의무실 등	
지상2층	7,284.89	○ 관람석, 안내사무실, 매점, 창고, 매표소, 공조실 등	
지상3층	4,429.39	○ 관람석, 음향/전광판실, 스카이박스, 정보처리실, 중앙통제실, 창고	

## ② 도원체육관/수영장

### 【도원체육관】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2. 대지면적 : 13,800.2m<sup>2</sup>
3. 건축면적 : 3,773.55m<sup>2</sup>
4. 연 면 적 : 7,768.59m<sup>2</sup>
5.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지붕:철골아연증)
6. 경기장 규모
  - 지상1층 ~ 지상3층
  - 실내체육관, 관람석(2,615석)
7. 시설현황

구 분	면적(m <sup>2</sup> )	주 요 용 도	비 고
지상1층	3,77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 기 장 - 농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경기 등</li> <li>○ 선수시설 - 경기장, 선수대기실·탈의실·샤워실, 트레이닝실 등</li> <li>○ 운영시설 - 귀빈실, 전략분석실, 사무국, 인터뷰실, 기자실, 매표소, 물품보관실 등</li> <li>○ 시설지원시설 - 음향운영실, 통신지원실, 변전실 등</li> </ul>	
지상2층	3,348.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워업장</li> <li>○ 관람시설 - 관람석</li> <li>○ 운영시설 - 이벤트 사무실, 치어리더실, 스텝실 등</li> <li>○ 판매시설 - 매점</li> <li>○ 시설지원시설 - 체육시설관리1본부, 공조실 등</li> <li>○ 기타공용시설 - 로비, 복도, 계단 등</li> </ul>	
지상3층	64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시설 - 관람석</li> <li>○ 기타공용시설 - 복도, 계단 등</li> </ul>	

**【도원수영장】**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22
2. 대지면적 : 9,749.8m<sup>2</sup>
3. 건축면적 : 2,509.28m<sup>2</sup>
4. 연면적 : 6,335.06m<sup>2</sup>
5.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지붕:철골트러스 스톱)
6. 경기장 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 수영장(50m, 8레인), 관람석(1,099석)
7. 시설현황

구분	면적(m <sup>2</sup> )	주요용도	비고
지하1층	1,666.21	○ 시설지원시설 - 기계실, 정압실, 사무실 등	
지상1층	2,509.28	○ 운동시설 - 수영장(50M - 8레인) ○ 운영시설 - 지도자실, 남·녀 선수탈의실, 상담실 응급실, 물품보관실 등	
지상2층	1,284.59	○ 시설지원시설 - 체육시설관리1본부 사무실, 서버실, 전광판 운영실 등 ○ 입주단체 - 배드민턴·볼링협회, 수중협회 등 ○ 관람시설 - 관람석	
지상3층	437.49	○ 운동시설 - 다목적실 ○ 운영시설 - 시간강사 대기실 및 락카	
지상4층	437.49	○ 운동시설 - 헬스장 ○ 운영시설 - 지도자실	
옥탑층	117.59	○ 옥탑	

### ③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야구장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90(송도LNG야구장)
2. 대지면적 : 189,220.5m<sup>2</sup>(98,879.5m<sup>2</sup>/90,341m<sup>2</sup>)
3. 건축면적 : 5,953.79m<sup>2</sup>(5,953.79m<sup>2</sup> / - )
4. 연 면 적 : 7,278.43m<sup>2</sup>(7,278.43m<sup>2</sup> / - )
5. 주요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6. 경기장 면적/규모
  - 종합스포츠타운 : 야구장 3면(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마사토구장)  
축구장 2면(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장 2면  
야구 실내연습장
  - 송도LNG야구장 : 야구장 6면
7. 시설현황

구 분		면적(m <sup>2</sup> )	주 요 용 도	비 고
야구	주	1,54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선수 및 심판 대기실, 중계실 등</li> <li>○ (2층) 관람석(1,376석)</li> <li>○ 인조잔디(12,335m<sup>2</sup>), 조명탑 6, 전광판 1</li> </ul>	
	보조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선수대기실 2</li> <li>○ 인조잔디(12,487m<sup>2</sup>), 마사토구장(10,000m<sup>2</sup>)</li> </ul>	
	실내	4,974.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사무실 1, 식당, 실내야구연습장 등</li> <li>○ (2층)사무실 3, 화장실 등</li> </ul>	
축구장		52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 및 심판 대기실 1, 조명탑 4</li> <li>○ 축구장 2면(주, 보조), 관람석</li> </ul>	
옥외화장실		47.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화장실</li> </ul>	
선수심판 대기실		104.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심판 대기실</li> </ul>	
송도LNG 야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사토구장 6면(58,659.5m<sup>2</sup>), 컨테이너사무실(1동),</li> <li>○ 주차장, 컨테이너 덕아웃(5동), 장비창고(1동)</li> </ul>	

#### ④ 가좌테니스장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11번길 7
2. 대지면적 : 46,821m<sup>2</sup>
3. 건축면적 : 2,832m<sup>2</sup>
4. 연면적 : 3,297m<sup>2</sup>
5.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6. 경기장 면적 : 11,128.83m<sup>2</sup>
  - 케미칼(하드) 코트 : 7면, 클레이 코트 : 6면
  - 실내 케미칼(하드) 코트 : 3면
7. 시설현황

#### [관리동]

구분	면적(m <sup>2</sup> )	주요용도	비고
지하1층	13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설 - 기계실, 전기실 및 창고 등</li> <li>○ 설비지원시설 - 보일러, 변전실 등</li> </ul>	
지상1층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선수대기실</li> <li>○ 운영시설 - 탈의실, 샤워실 장애인 화장실 등</li> <li>○ 설비지원시설 - 매점</li> </ul>	
지상2층	22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선수대기실</li> <li>○ 운영시설 - 관리사무실, 화장실</li> <li>○ 설비지원시설 - 온풍기 및 체력단력실 등</li> </ul>	

#### [실내테니스장]

구분	면적(m <sup>2</sup> )	주요용도	비고
지상1층	2,49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테니스 코트 3면(2,263.13m<sup>2</sup>)</li> <li>○ 강사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li> </ul>	
지상2층	22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중석</li> </ul>	

### ⑤ 수봉궁도장/양궁장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95번길 32
2. 대지면적 : 9,137m<sup>2</sup>
3. 건축면적 : 533.5m<sup>2</sup>(313.1m<sup>2</sup>/ 220.4m<sup>2</sup>)
4. 연 면 적 : 804.79m<sup>2</sup>(434.33m<sup>2</sup>/370.46m<sup>2</sup>)
5. 주요구조 : 한기와 및 철근콘크리트
6. 경기장 면적/규모
  - 궁도장 : 사대 21대(145m)
  - 양궁장 : 사대 6개(95m)
7. 시설현황

#### [궁도장]

구 분	면적(m <sup>2</sup> )	주 요 용 도	비 고
지상1층	29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경기장 사대, 선수대기실 등</li> <li>○ 운영시설 - 휴게실</li> <li>○ 설비지원시설 - 남여화장실</li> </ul>	
지상2층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선수대기실, 베란다 및 사무실</li> <li>○ 운영시설 - 회의실</li> <li>○ 설비지원시설 - 남여화장실</li> </ul>	

#### [양궁장]

구 분	면적(m <sup>2</sup> )	주 요 용 도	비 고
지상1층	2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경기장 사대, 선수대기실 등</li> <li>○ 운영시설 - 휴게실</li> <li>○ 설비지원시설 - 남여화장실</li> </ul>	
지상2층	15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선수대기실, 베란다 및 기숙사</li> <li>○ 운영시설 - 관리사무실</li> <li>○ 설비지원시설 - 남여화장실</li> </ul>	

## ⑥ 다목적하키장/정구장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60번지
2. 대지면적 : 13,451.1m<sup>2</sup>
3. 건축면적 : 239.44m<sup>2</sup>
4. 연 면 적 : 239.44m<sup>2</sup>
5. 주요구조 : 경량철골조
6. 경기장 면적/규모
  - 하키장 : 1면 6,388.20m<sup>2</sup>
  - 정구장 : 6면 3,319.20m<sup>2</sup>
7. 시설현황

구 분	면적(m <sup>2</sup> )	주 요 용 도	비 고
관 리 사무소 (A)	1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선수대기실</li> <li>○ 운영시설 - 관리사무실</li> <li>○ 설비지원시설 - 남여화장실 및 샤워실 등</li> </ul>	
관 리 사무소 (B)	1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시설 - 선수대기실</li> <li>○ 운영시설 - 관리사무실</li> <li>○ 설비지원시설 - 남여화장실 및 샤워실 등</li> </ul>	

## 【붙임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작성내용

##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 □ 정량평가(3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합 계		30	
공익성 및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기간 10년 이상의 비영리 법인, 단체 : 5점</li> <li>- 설립기간 5년 이상의 비영리 법인, 단체 : 3점</li> <li>- 신용평가등급 A이상기업 : 3점 (회사채 A, 기업어음 A2 이상)</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단체 등록증</li> <li>- 위탁기관 발행실적증명서</li> <li>- 민간의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li> <li>- 공고일 기준 최근 6년간 운영실적</li> <li>-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제출하되, 미제출시 "0"점 처리</li> <li>- 신용평가 관련자료는 관련 법에 따른 가장 최근자료</li> </ul> </li> </ul>
운영실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종목(유형) 시설 운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5년 이상 : 10점</li> <li>- 만 3~4년 : 7점</li> <li>- 만 1년 이상 : 5점</li> </ul> </li> <li>* 유사종목(유형) 시설 운영실적은 50% 배점함</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종목(유형) 시설 운영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설 건축연면적 5,000㎡ 이상 : 10점</li> <li>- 운영시설 건축연면적 3,000㎡ 이상 : 7점</li> <li>- 운영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 5점</li> </ul> </li> <li>* 유사종목(유형) 시설 운영규모는 50% 배점함</li> <li>* 운영시설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지 않음</li> </ul>	10	
지역연계성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본점(주된사무소)이 인천광역시에 위치	5	

## □ 정성평가(60점)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합 계		60	60	48	36	18	
시설 운영 계획 타당성 (30)	지역사회내 공공성 제고방안 (시민이용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전문체육인 육성 연계방안 등)	10	10	8	6	4	위원 평가
	시설 수지율 향상 가능성	10	10	8	6	4	
	재정능력 및 수입·지출계획의 타당성	5	5	4	3	1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5	5	4	3	1	
시설 운영 전문성 (20)	정관 등 설립목적과 체육시설 운영과의 적합성	5	5	4	3	1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유기술 및 운영능력	5	5	4	3	1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합성	5	5	4	3	1	
	시설관리분야 및 체육프로그램 분야 개선방안	5	5	4	3	1	
고용안정성 (10)	수탁자 변경시 경기장 운영인력 고용승계	10	10	8	6	4	

## □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이 기준가격(위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기준가격(위탁금)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2. 제안서 작성내용

### □ 시설 운영계획 타당성

- 시설운영, 임대(이용), 홍보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 운영 계획을 구체적 작성
- 시설 수지율 향상을 위한 여건분석, 개선방안 제시
- 지역 체육계 연계방안, 전문체육인 육성, 국제행사 유치 계획 등 제시

### □ 시설 운영 전문성

- 제안 단체의 정관 등에서 나타나는 설립목적과 체육시설 운영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유기술과 운영경험을 작성
- 제안 단체의 인력, 기구, 시설 등 조직현황과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운영전반을 위한 인력배치계획 작성
- 시설관리 분야 및 체육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구체적 작성

### □ 고용안정성

- 고용승계를 위한 구체계획 제시

【붙임 3】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참고사항

###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 종방향으로 작성
- 페이지별 번호를 부여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12-1,2,3 등 부번을 달아 표시하고, 증빙서류는 부록(총 페이지 분량에 미포함)을 첨부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사용용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과 해석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 2. 제안시 준수사항

- 보안 유지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이행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경기도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와 협상 시 추가 제안 자료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짐

**【붙임 4】**

**< 별지서식 >**

- [서식 1]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 [서식 2] 관리위탁 운영 제안서
- [서식 3]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서식 4] 제안자 일반현황
- [서식 5] 법인(단체) 경영상태
- [서식 6] 사업수행 실적 (최근 5년간)
- [서식 7]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8]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8-1] 위탁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구성
- [서식 9] 사업수행 참여인력 인적사항
- [서식 10] 협약서
- [서식 11] 사용인장계
- [서식 12]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서식 13] 입찰서
- [서식 14] 위임장





## 【서식 3】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기평가점수
공익성 및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 법인,단체 및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li> </ul>	5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시설과 동일 또는 유사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기간</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시설과 동일 또는 유사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규모</li> </ul>	10	
지역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li> </ul>	5	
합 계		30	

## ※ 참고사항

- 자기평가서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제안안내서의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평가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거나 무조건 최고 배점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

## 【서식 4】

제안자 일반현황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 연혁 등			

## 【서식 5】

법인(단체) 경영상태

&lt;재무상태&gt; (단위 : 원)

※ 2018년 결산 기준

1. 총 자산 :
2. 자기자본 :
3. 유동부채 :
4. 고정부채 :
5. 유동자산 :
6. 당기순이익 :
7. 매출액 :
8.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
9.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lt;신용평가등급&gt;

1. 평가기준일 :
2. 평가유효기간 :
3. 평가등급 :

※ 참고사항

- 재무상태의 경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상의 재무상태표 첨부
- 신용평가등급 평가의 경우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서식 6】

사업수행 실적(최근 6년간)

체육시설 운영실적/기간					
성명(법인명)	사업명	주요 수탁시설	운영기간	위탁기간(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서 제출한 것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현재 최근 6년간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관련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중에 있거나 운영한 실적만 기재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순 기간이 최근 6년 이내에 포함되는 실적 인정
-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위 주요사업 실적 중 연도순으로 각 원본 1부씩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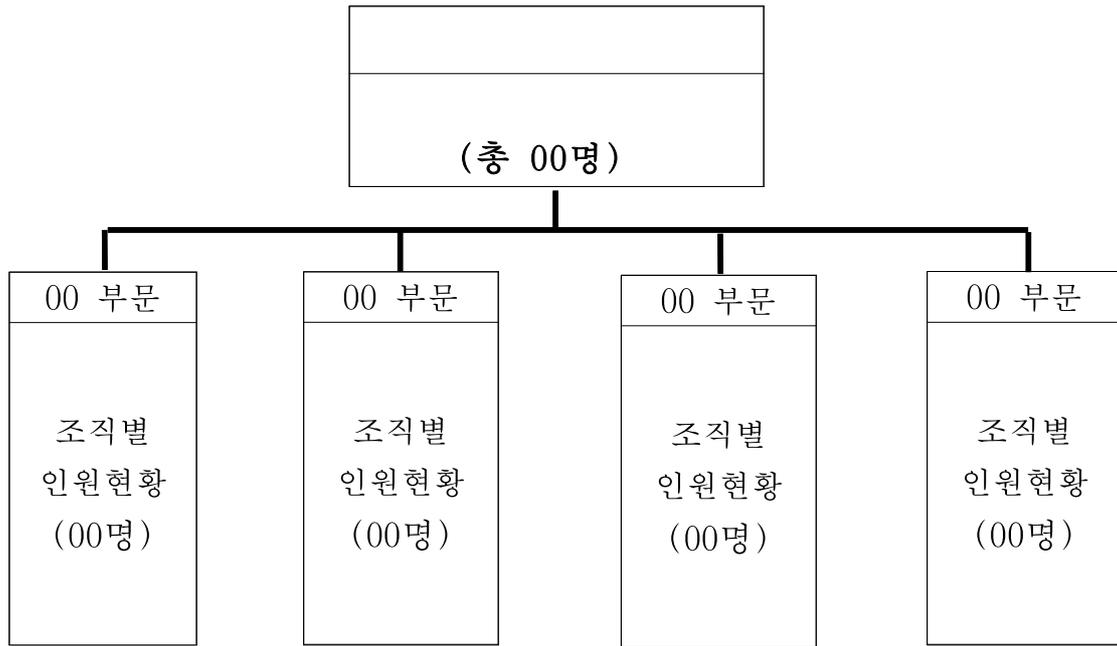
## 【서식 7】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공모 제안용	제출처	인천광역시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위탁기관(발주처)	
	수탁시설		계약기간 (이행기간)	
	사업개요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주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발행 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며,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8】

조직 및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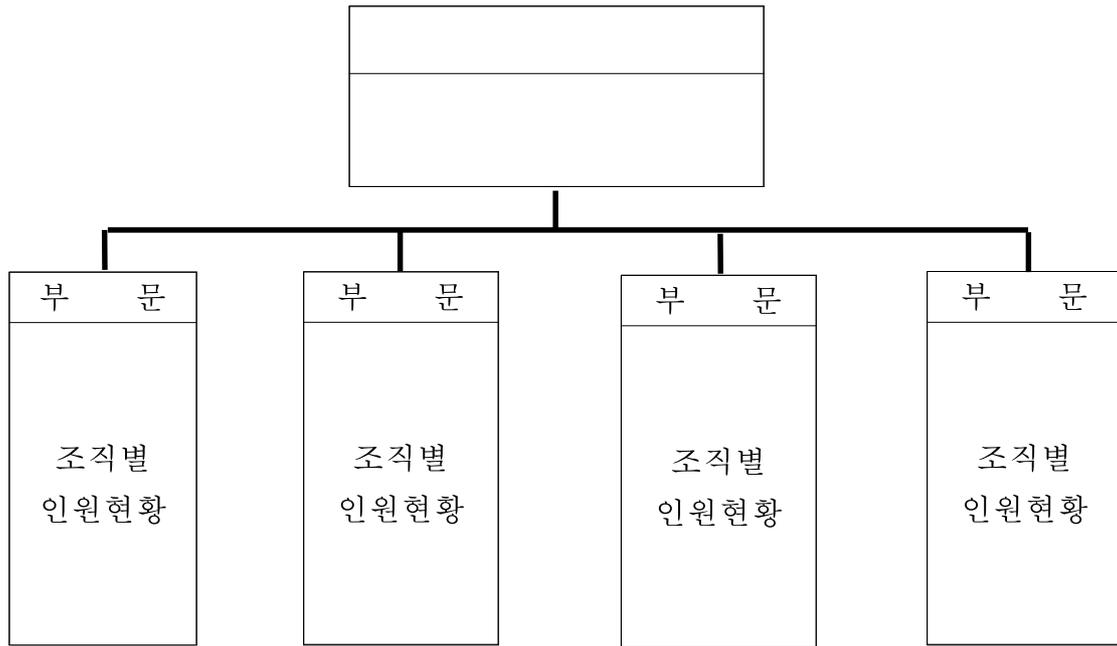


조직별 기능

※ 증빙서류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서식 8-1】

### 위탁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구성



조직별 기능

## 【서식 9】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인적사항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자격증)
사업 참여자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서식 10】

# 확 약 서

- 법인(단체·개인)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생년월일) :
- 소재지 :
- 대표자 :

상기 법인(단체·개인)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 관리위탁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인천광역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 .

법인 (단체, 개인) 명 :

대 표 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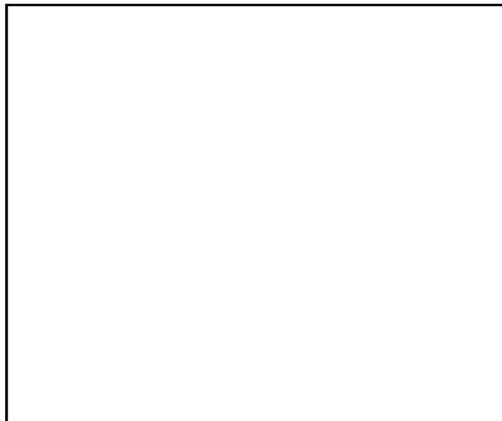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개인은 인감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11】

사용인장계

- 용역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위 인감은 본 입찰참여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운영』의 사업 신청시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인천광역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입찰 참여자가 질 것을 약속하고 이에 사용인장계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자 :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12】

관 리 번 호	
------------------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정성적 평가 제안서  
(시 설 명)

2019.

○○○ (기관명)

## 관리위탁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 사항

1. 계획서의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2. 요약보고서(프레젠테이션용)는 별도 제출
3. 아래의 항목들을 가급적 포함시키되, 기타 내용은 신청 법인(단체)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4. 사업계획서(본보고서) 작성 양식
  - 규 격 : 용지크기 A4, 백색종이로 작성
  - 분 량 : 50페이지 이내
  - 제본방식 : 좌철(좌로 넘기기)
5. 사업계획서 요약보고서는 본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20페이지 내) 하되, 서식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I. 운영 전략 및 비전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영 전략과 비전 제시
  -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전략의 구체성 제시
  - 지역사회내 공공성 제고방안 제시
    -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신설 등
    -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 전문체육인 육성 연계방안
    - 각종 대회유치 및 스포츠복지 거점화 방안

### II.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지율 향상
  - 이용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 방안 제시

- 적정 운영인력 배치 및 비용절감 방안 제시
- 수입·지출 세부계획 제시
  
- 강습(생활체육교실) 운영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계획 제시
  - 전문 강사 확보 방안 및 관리 계획 제시
  
- 임대시설 관리·운영 계획
  - 매점 등 재임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 제시(임대시설 종류, 계약 절차 및 방법, 임대료 산출 방법, 관리 방안 등)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전기, 기계, 가스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제시
  - 시설물 파손, 훼손 방지 및 유지·보수 계획 제시
  
- 시설 안전관리 계획
  - 시설이용자 안전관리 계획 제시
  - 대회, 공연, 행사 시 안전관리 계획 제시
  
- 환경관리 계획
  - 시설 청소, 환경정비, 녹지관리 등 환경관리 계획 제시
  
- 시설물 투자 계획
  - 위탁기간(3년) 내에 신청 법인(단체, 개인)의 시설물 투자 계획 제시

### Ⅲ. 인력운영 계획

#### □ 인력 구성 및 투입계획

- 운영 인력 확보 방안 제시 (신규채용, 고용승계, 보유인력 활용 등)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과 분야별 업무분장 내용 제시
  - ※ 시설관리[전기·건축·고압가스(냉동공조·가스)·설비 등]인원 확보 계획은 필수 기재

#### □ 인력관리 계획

- 신규채용 시 선발기준, 채용절차 제시
- 종사자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
-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성과관리 및 복무 관리 등)

#### □ 전문성 강화 방안

- 체계적인 서비스 및 업무 교육 실시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제시

### Ⅳ.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인천광역시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스포츠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Ⅴ.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 □ 수탁자 변경에 따른 종사자 고용 승계 및 유지 방안

- 종사자 고용 승계 및 유지 방안 제시
- 종사자 경력, 급여, 복무, 퇴직적립금 등 승계 방안 제시

#### □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 근로조건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이직률 최소화,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서식 13]

#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시설명				
	위탁금액	금	원정(₩ )		
입찰자	법인, 단체 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규정 등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운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며, 관리위탁 운영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리위탁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서식 14】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제안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 . .

대표자 : (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을 함께 날인해야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58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동우개발(주)	2019. 9. 23.	인천1800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37-1 동우빌딩 6층	회사사정	

2019년 9월 23일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64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주식회사 새늘종합건설	2019. 9. 25.	인천1700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1, 3층(구월동, 재경빌딩)	회사사정	

2019년 9월 25일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4호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 9. 30.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천광역시		직위	병원장		성명	조승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b>▶ 건물(소계)</b>			<b>561,000</b>	<b>329,000</b>	<b>300,000</b>	<b>590,000</b>	
배우자	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래미안부평 건물 59.92㎡	261,000	19,000	0	280,000	공시지가변동
배우자	아파트(전세 (임차)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로 55 (야탑동, 장미마을) 건물 0.00㎡ (건물 88,499.00㎡ 감소)	300,000	0	300,000 (300,000)	0	계약해지
배우자	아파트(전세 (임차)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삼환아파트 건물 84.00㎡ (건물 84.00㎡ 증가)	-	250,000 (250,000)	0	250,000	이사
장남	아파트(전세 (임차)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래미안부평 건물 59.00㎡ (건물 59.00㎡ 증가)	-	50,000	0	50,000	이사
차남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건물 19.00㎡ (건물 19.00㎡ 증가)	-	10,000	0	10,000	이사
<b>▶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b>			<b>31,890</b>	<b>0</b>	<b>4,090</b>	<b>27,800</b>	
본인	자동차	2010년식 골프 배기량(1,968cc)	9,990	0	1,840	8,15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6년식 골프 배기량(1,968cc)	21,900	0	2,250	19,650	가액변동
<b>▶ 예금(소계)</b>			<b>686,645</b>	<b>175,391</b>	<b>71,357</b>	<b>790,679</b>	
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104(4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5,315(538 증가), 신한은행 330,472(147,062 증가), 오렌지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12,669(71,357 감소), 우리은행 14,397(900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83,342(3,711 증가), 하나금융투자 93,847(1,368 증가)	487,920	153,583	71,357	570,146	저축,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		DB생명보험(주) 8,465(548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6,720(160 증가), 신한은행 7,877(1,779 증가), 키움닷컴증권 628(600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25,968(1,583 증가), 한국투자증권 52,008(5,073 증가)	91,923	9,743	0	101,666	저축, 매매, 가액변동
장남		국민은행 50, 신한은행 12,382(703 증가), 한국투자증권 37,546(2,466 증가), 중소기업은행 577(577 증가)	46,809	3,746	0	50,555	
차남		신한은행 20,181(6,301 증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13,412(712 증가), 한국투자증권 34,705(1,292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4(14 증가)	59,993	8,319	0	68,312	
▶ 유가증권(소계)			63,992	26,553	7,887	82,658	
본인	상장주식	KOSEF 200선물인 100주(100주 증가), KOSEF 200선물레 200주(200주 증가), 삼성전자 580주(30주 증가), 삼성엔지니어링 1,300주(200주 감소)	52,440	5,961	5,860	52,541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	상장주식	한화 ARIRANG 고 1,180주(1,180주 증가), 미래에셋 TIGER 435주(15주 감소), 삼성 KODEX 중국 73주, 삼성KODEX레버리 600주(450주 증가), 삼성 KODEX Japa 70주, 삼성 KODEX Chin 120주, 삼성 KODEX200 100주, kodex레버리지 0주(150주 감소)	11,552	20,592	2,027	30,117	
▶ 채무(소계)			50,000	0	0	5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래미안부평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임대차계약
<b>총 계</b>			1,293,527	530,944	383,334	1,441,137	증감액: 147,610천원 (가액변동: 20,328천원)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 - 68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30.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시의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별표 상징물을 사용함에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각각의 캐릭터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격 등을 부여함으로써 친근하고 생명력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 및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4항 신설)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명칭 변경(심의 → 심의 또는 자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위원회 → 인천광역시브랜드위원회)(안 제6조, 제7조)
- 다.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 구성 인원(15명 → 20명) 확대  
(안 제8조제1항)
- 라. 캐릭터 색상 값 삭제 및 캐릭터 소개 내용 정비(안 별표 3)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시장(참조 : 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 032-440-3085, 팩스 : 032-440-86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인천광역시브랜드위원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p>	<p>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 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 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u></p>
<p>제6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상징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p>	<p>제6조(<u>브랜드위원회</u>의 설치) ----- ----- ----- <u>심의 또는 자문</u> ----- <u>인천광 역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 ----- <u>심의 또는 자문한다.</u> 1.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제8조(구성) ----- ----- <u>20명</u> ----- -----.</p>

## [별표 3]

캐릭터 (제3조제3호 관련)

## 1. 기본형



※ 색상은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2. 캐릭터 의미

- 인천시의 캐릭터는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디자인되었다. 등대는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 팔미도 등대를 모티브로 첨단산업도시 인천의 과거와 미래의 연결을 의미한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백령도의 점박이물범을 모티브로 인천시의 자연 친화의 의미를 담았다.

## 3. 캐릭터 소개

	<p>등대리</p> <p>: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 인천 팔미도 등대의 3세로서 따뜻한 마음씨로 인천의 곳곳을 밝게 비추며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기타연주를 좋아하고 팔미도 할아버지처럼 인천을 대표하는 등대가 되는 것이 꿈이죠.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가슴에 드러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p>
	<p>버미</p> <p>: 백령도를 주름잡다가 인천 본토에 진출해 인천을 지키고자 하는 씩씩한 점박이물범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가꾼 해초로 요리하길 즐기죠! 길치라서 가끔 길을 잃기도 해요. 그때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답니다.</p>
	<p>꼬미</p> <p>: 체구는 제일 작은 꼬마 점박이물범이지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먹보랍니다. 실수연발, 덜렁대는 성격에 울보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만, 최고의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어요.</p>
	<p>애이니</p> <p>: 인천에 사는 호기심 많은 점박이물범입니다. 활발한 성격에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도 잘 찍어요. 꿈은 모자 디자이너, 언제나 모자 안에 또 다른 모자가 숨겨져 있죠.</p>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9호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30.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 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6조)
- 다.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 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해양친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서식 : 실·국별 의견수렴서(별첨)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시장이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완 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17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제1호가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의견 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서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준수)** 지역협의회 위원과 지역협의회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지역협의회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지역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회의록)** 시장은 지역협의회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7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로 구성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0호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7.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도시철도 2호선 출자 및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등 준공으로 자본금 출자가 예상되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며
- 「인천광역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12.10.)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의 이사 정수를 증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 제4조 ①항 자본금

- 2조6천5백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증액

##### 나. 안 제7조 ①항 임원

- 이사의 정수를 11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수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교통정책과, 전화: 032-440-3853, 팩스: 032-440-8699, 이메일: dada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실국별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자본금) 제①항 중 공사의 수권자본금 2조6천5백억원을 5조6천억원으로 한다.

제7조(임원) 제①항 중 이사의 정수를 11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6천5백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p>	<p>제4조(자본금)① ----- - 5조6천억원으로 하고----- ----- --.</p>
<p>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p>	<p>제7조(임원) ① ----- ----- ----- ----- 13명 이내로 한다.</p>

「붙임1」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input type="radio"/> 제4조 자본금 <input type="radio"/> 제7조 임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특이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1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실제 사용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등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도매시장 명칭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수의계약 방법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실제 사용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안 제12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 축산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15/1000에서 20/1000로 개정
-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
- 보고 및 명령 대상자에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추가
- 행정처분 대상자에 경매사 추가

다. 부속업소 지정방법 및 권한의 위임 개정(안 제16조, 제25조)

- 부속업소를 시설별로 구분하고, 지정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개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 (참조: 농축산유통과, 전화: 032-440-4372, 팩스: 032-440-8663, 이메일: kdr6536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수의계약의 방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 별표2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등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 별표2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등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은행”을 “편의시설(은행, 식당, 휴게시설, 편의점, 약국 등)”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매점”을 “직판시설(농축수산물·식재료·생필품 직판시설 등)”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음식점”을 “물류시설(선별·포장·가공·집배송 시설 등)”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로 정하고,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산지유통인이”를 “산지유통인·경매사가”로 한다.

제25조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과 제25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도매시장 명칭·위치 및 면적(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 적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대지 170,061m <sup>2</sup> 건물 136,155.57m <sup>2</sup>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	대지 107,912m <sup>2</sup> 건물 59,155.25m <sup>2</sup>
인천광역시 가좌 축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96번길 17(가좌동)	대지 8,758.1m <sup>2</sup> 건물 5,816.4m <sup>2</s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2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p> <p>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u>1천분의 15</u>이내</p> <p>제15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p>	<p><u>제11조의2(수의계약의 방법) ①</u> 시장은 <u>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 별표2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u></p> <p><u>②</u> 시장은 <u>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 별표2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u></p> <p>제12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p> <p>① ----- <u>제39조제4항</u>-----</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1천분의 20</u>-----</p> <p>제15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p> <p>-----</p> <p>-----</p>

현행	개정안
<p>별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b>제16조(부속업소의 지정 등)</b></p> <p>① (생략)</p> <p>1. 은행</p> <p>2. 매점</p> <p>3. 음식점</p> <p>4. 약국</p> <p>5. 농수산물 관련 판매시설</p> <p>6.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영업자의 지정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p> <p><b>제22조(보고 및 명령) ①</b>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u>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u>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p> <p>----- <u>둘</u></p> <p><u>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6조(부속업소의 지정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1. 편의시설(은행, 식당, 휴게시설, 편의점, 약국 등)</p> <p>2. 직판시설(농축수산물·식재료·생필품 직판시설 등)</p> <p>3. 물류시설(선별·포장·가공·집배송 시설 등)</p> <p>4. &lt;삭제&gt;</p> <p>5. &lt;삭제&gt;</p> <p>6. (현행과 같음)</p> <p>② -----</p> <p>----- <u>따로 정하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p> <p>-----</p> <p><b>제22조(보고 및 명령) ①</b> -----</p> <p>----- <u>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u>-----</p> <p>-----</p> <p>-----</p>

현행	개정안
<p>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u>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u>,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 ----- ----- <u>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u>, ----- ----- ----- ----- -----.</p>
<p>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u>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u>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법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 ----- ----- <u>산지유통인·경매사가</u> ----- ----- ----- ----- -----</p>
<p>제2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u>제6조 및 제7조</u>를 제외한 규정은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p>	<p>제25조(권한의 위임) ----- ----- <u>제7조</u> ----- ----- <u>남</u> ----- ----- <u>춘</u> ----- ----- -----.</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8조의2제1항, 제79조, 제81조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5조제2항, 제39조제4항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제3항제23호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 ○ 별표 1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9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 6. (생략)

⑤ ~ ⑧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⑤ (생략)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이내

**제15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거래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16조(부속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관계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속영업자의 입주를 지정할 수 있다.

1. 은행
2. 매점
3. 음식점
4. 약국
5. 농수산물 관련 판매시설
6.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영업자의 지정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2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 법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외한 규정은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2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도매시장 명칭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정하고,
-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오기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매시장 명칭 개정(안 제4조, 제20조, 제70조)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
-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오기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46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 경매사 임면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규정

- 중도매업 재허가를 중도매업 갱신허가로 변경
-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을 갱신허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매월 마지막 마감일에 보증금 및 담보 제공액을 초과하여 3회 이상 미수금이 발생한 자로 규정
-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기한을 30일 전까지로 규정
- 도매시장법인이 대금 결제 시 표준정산서도 발급하도록 규정
- 보증금 납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
- 도매업무 대행자에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추가
- 평가결과, 거래규모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면적 조정·사용료 등에 차등지원 조치 대상자를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으로 규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장 (참조: 농축산유통과, 전화: 032-440-4372, 팩스: 032-440-8663, 이메일: kdr6536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시행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구월”을 “남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구월”을 “남촌”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갱신허가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매월 마지막 마감일에 보증금 및 담보 제공액을 초과하여 3회 이상 미수금이 발생한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장사용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중 “보증금을 납부하거나”를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4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 중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법인이나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로 한다.

제70조 중 “구월”을 “남촌”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상한 수,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인 상한 수,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와 제7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은 제4조·제21조에 따라 지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8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법인)				처리기간
				7 일
신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	상 호 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	
	참가도매 시 장 명		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명	
인	거래품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및 사진 3매(가로 3cm×세로 4cm)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2) 주주명부 3. 갱신허가의 경우 (1) 허가증 원본 (2)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상한 수) ① ~ ③ (생 략)</p> <p>1. 인천광역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4개</p> <p>2. ~ 3. (생 략)</p> <p>④ (생 략)</p> <p>제18조(경매사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매사 임면신고서를 임면한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별표 2의 거래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0조(중도매인 상한 수)</p> <p>① (생 략)</p> <p>1. 인천광역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 360명 이내</p> <p>② (생 략)</p> <p>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p> <p>① (생 략)</p> <p>1. (생 략)</p>	<p>제4조(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상한 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1. ----- <u>남촌</u>----- 장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경매사 관리) ----- ----- ----- ----- ----- <u>30일</u> ----- ----- ----- ----- ----- ----- ----- ----- -----</p> <p>제20조(중도매인 상한 수)</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남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조례 제10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u>다른</u> 허가취소 된 자이거나 <u>재허가일</u>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p> <p>3. <u>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u></p> <p>&lt;신 설&gt;</p>	<p>2. ----- -----제56조에 <u>따라</u> 허가취소 된 자이거나 <u>갱신허가</u>----- -----</p> <p>3. <u>갱신허가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매월 마지막 마감일에 보증금 및 담보 제공액을 초과하여 3회 이상 미수금이 발생한 자</u></p> <p>4. <u>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장사용료등 체납이 있는 경우</u></p>
<p>제22조(허가절차)</p> <p>① ~ ④ (생략)</p> <p>&lt;신 설&gt;</p>	<p>제22조(허가절차)</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6조(보증금 납부)</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u>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u></p>	<p>제26조(보증금 납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납부하지 아니하거나</u> ----- ----- -----.</p>
<p>제46조(대금결제)</p> <p>① ~ ⑤ (생략)</p>	<p>제46조(대금결제)</p> <p>① ~ ⑤ (생략)</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63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u>도매시장법인</u>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p> <p>제64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 중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완전규격출하품(「<u>농산물 품질관리법</u>」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으로 포장해 파레트에 적재하여 반입되는 규격출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와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완전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p>	<p>⑥ <u>도매시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p> <p>제63조(도매업무의 대행) ----- ----- ----- ----- ----- ----- <u>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u> ----- -----</p> <p>제64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 ----- -----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제65조(평가의 실시 등)</p>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평가결과와 거래규모 및 시설여건 등을 <u>고려하여</u> 시설 사용면적 조정·사용료 등에 차등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65조(평가의 실시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고려하여 도매 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u>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41조, 제66조, 제77조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5조, 제19조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 제26조제3항, 제63조, 제65조제3항 ○ 별표 3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 ⑦ (생략)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 ② (생략)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고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중도매인 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 360명 이내

2. ~ 3. (생략)

② (생략)

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조례 제10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 취소된 자 이거나 재허가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② (생략)

제22조(허가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다른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6조(보증금 납부)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생략)

**제46조(대금결제) 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같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 ⑤ (생략)

**제63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65조(평가의 실시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장은 평가결과와 거래규모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면적 조정·사용료 등에 차등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략)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3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 나.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다. 그 밖에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정비

###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2조의5)
  -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부여

-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과 시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 구상을 위해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동물등록동물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 동물보호법상 조례로 위임된, “등록대상동물의 출입 제한장소”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비
- 맹견이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하고 보호조치할 장소와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 규정
- 우리 시 관내의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을 옹진군으로 현행화

다.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유실·유기동물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6조, 제10조, 별표)

- 유실·유기동물 분양·기증 시 동물등록 의무화,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사항 정비
-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소요경비 산출기준(별표)의 문구 일부 수정

라. 군·구 위임 사항 정비(안 제14조)

-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 등 조례개정 내용을 군·구 위임토록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장 (참조: 농축산유통과, 전화: 032-440-4379, 팩스: 032-440-8663, 이메일: gkdlr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2조3(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의4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2조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동물보호·복지 업무소관 실·국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수의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이거나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2조의5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2조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등록대상동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장소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용진군을 말한다.

제6조 제6항 중 “보호·관리 조치를 위탁할 때에는”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를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 중 “등록을 하여”를 “분양·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동물등록한 이후에”로 한다.

제14조에 제1호부터 제6호를 제2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제목을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소요경비 산출기준”으로 하고 서식 전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일부 수정)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2조 관련)**

## 1. 일반 관리 기준

## 가.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보호동물의 종(種) 및 습성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의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금액 등은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포획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정지약물):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동물장묘업장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여 발생한 비용에 따른다.

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한 사항</u></p> <p><u>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u></p> <p><u>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u></p> <p><u>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u></p> <p><u>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u>제2조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p> <p><u>1. 당연직 위원 : 동물보호·복지 업무소관 실·국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u></p> <p><u>2. 위촉직 위원 : 의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이거나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u></p> <p><u>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u></p> <p><u>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⑦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u></p> <p><u>제2조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u>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팀장으로 한다.</u></p> <p><u>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3조의2(등록대상동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u></p> <p><u>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u></p> <p><u>2. 그 밖에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장소</u></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u>시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강화군 및 옹진군을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u></p> <p>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⑤ (생략)</p> <p>⑥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u>보호·관</u></p>	<p>제3조의3(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동물보호센터</u></p> <p>2. <u>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u></p> <p>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장소</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p> <p>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p> <p>3. 그 밖에 <u>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u></p> <p>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u>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옹진군을 말한다.</u></p> <p>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동물보호</u></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동물보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li> <li>○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li> <li>○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li> <li>○ 제13조의2(맹견의 관리)</li> <li>○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li> <li>○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li> <li>○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li> <li>○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li> </ul>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li> <li>○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li> <li>○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li> <li>○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li> <li>○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등)</li> </ul>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해당사항 없음”</p>

## 관계법령 발췌사항

### 6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  
(일부 생략)
-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생략)

-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

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4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춰 정비·보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 일정 면적·금액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기준 삭제(안 제5조)
- 토석 등의 매각대금 산출기준(안 제30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31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임의적용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제31조)

나. 대부료의 요율 명확화 및 재정지원 국제기구의 적용요율 하향 조정(안 제28조)

- 대부료 요율을 확정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 시와 재정지원 약정체결 국제기구에 대한 대부료 요율 하향 조정(재산 평정가격의 2.5% → 1%)

다. 근거법령 명시, 공유재산관리상황 반영 등(안 제6조, 제7조, 제26조, 제2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산관리담당관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672, 팩스 : 032-440-87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정 제정안(항목별)	찬·반 여부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기술</li> <li>-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li> </ul>

###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제31조제5항에 따라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을 결정하려는 경우”로 하며,

제5조제2항제4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을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을 삭제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외국인투자기업 등에)”를 “(외국인투자기업등에)”로 하고, 본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

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설시 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1천분의 50 이상으로"를 "1천분의 50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분의 40 이상으로"를 "1천분의 40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천분의 35 이상으로"를 "1천분의 3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25 이상으로"를 "1천분의 25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1천분의 10이상으로"를 "1천분의 10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5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천분의 10 이상으로"를 "1천분의 10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토석채취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원석시가(채광물가격)를"을 "제1항에 따른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를 "대부료를 산출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text{건물 공용면적} =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text{부지 공용면적} =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li> <li>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li> <li>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li> <li>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신규로 감면하려는 경우</li> <li>6. <u>(신 설)</u></li> </ol> <p>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 략)</li> <li>4. <u>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용</u></li> </ol>	<p>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현행과 같음)</li> </ol> <p>6. <u>제31조제5항에 따라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을 결정하려는 경우</u></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u></li> </ol>

도변경, 용도폐지, 회계 간 이관 및 대부(사용)료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제4호로 이동>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따  
라 -----  
-----

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

-----  
-----,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  
-----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

산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

1.~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  
-----  
----- 1천분의 50으로 -----  
-----  
-----  
-----  
-----  
-----  
-----  
-----.

② -----  
-----  
----- 1천분의 40으로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 1천분의 35로 ----.

1. ~ 2. (현행과 같음)

④ -----  
-----  
----- 1천분의 25로 ----.

1. ~ 2. (현행과 같음)

3. -----

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9. (생략)

10. (신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  
----- 1

천분의 10으로 -----

4. <제5항 제10호로 이동>

⑤ -----  
-----  
---- 1천분의 10으로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의 -----  
-----

3. ~ 9. (현행과 같음)

10.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 -----  
-----  
-----  
----- 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가라 함은 생 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 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 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채광물가 격)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 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 해당 자산의 평가액은 건 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 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토석 등의 매 각대금 등을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를 산출할 때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  
-----  
-----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 법령	<p><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li> <li>○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li> <li>○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li> <li>○ 제32조(대부료)</li> <li>○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li> <li>○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li> <li>○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li> </ul>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li> </ul>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li> <li>○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li> </ul>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주요 관련법령 발췌문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다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6. 21.>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3. 3. 23.>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 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 (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0호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건립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 심의대상에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3호 신설)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법인”을 “공공기관, 법인”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회)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조(기부채납)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조(기부채납)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없음”</p>
관련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없음”</p>

##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에 따른 심의안건 횟수 증가 및 심의수당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평균 매월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안건에 대한 심의수당 지출 가능

4. 작성자

주택복지국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1호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 인천광역시회의장

#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3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재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21조(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94조(재정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계획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발생요인 :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관련조문 : 제4조제2항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예산 소요 추정('20년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총계		<b>305,000천 원</b>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비	- 최근 고령자의 차량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 사업비 : 4,500천 원 ☞ 20,000원×225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 최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함에 운수종사자 실습교육 필요성 대두	- 사업비 : 48,000천 원 ☞ 96,000원×500명
차량운행정보 실시간전송 통신비	-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차량관리 및 운전자 안전관리	- 사업비 : 181,800천 원 ☞ 2,020대×15천원×12월×50%
차량운행기록장치 교체비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활용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교체비 지원으로 실시간 차량관리 및 운전자 안전 관리	- 사업비 : 70,700천 원 ☞ 2,020대×50%×70천원

※ 소요예산은 사업의 추가 또는 감소 및 사업추진 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0년~2024년) : 1,312,900천원(년 약2.6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세출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비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차량운행정보 실시간전송 통신비	181,800	181,800	181,800	181,800	181,800	909,000
	차량운행기록 장치 교체비	70,700	70,700	-	-	-	141,400
	소계	305,000	305,000	234,300	234,300	234,300	1,312,900
재원 조달	-	-	-	-	-	-	-
국 비	-	-	-	-	-	-	-
시비	소 계	305,000	305,000	234,300	234,300	234,300	1,312,900
	일반회계	305,000	305,000	234,300	234,300	234,300	1,312,9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
민 간	-	-	-	-	-	-	-
기 타	-	-	-	-	-	-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62호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골목단위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골목길 및 골목길재생지역, 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골목길재생 기본방침 수립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5조)
-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  
(안 제4조 및 제6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 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 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 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 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

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nput type="checkbox"/>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

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파.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

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한 용역비 및 사업비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 작성 시기 미도래
  - 현재 “골목길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용역을 진행하면서(2020. 5. 준공 예정) 인천시 골목길재생의 대상지, 가이드라인 등 결과 도출 후 사업비 추계 가능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3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과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lka1027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복지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li> <li>○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li> <li>○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li> </ul>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정의)</li> <li>○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특이 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